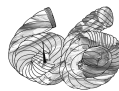


# 「가정폭력의 다면적 심층 분석과 대응 및 정책」



## 일시

2016년 3월 25일(금) 오후 2시

## 장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강당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1956년 창립 이래  
가족구성원간의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의식개선 교육, 가정폭력특별법 제·개정,  
가정폭력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구조 등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해왔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여전히 가족구성원간의  
갈등요인이 되고 있으며 현대 가족의 변화 속에서  
그 양상은 더욱 다양해지고 정도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상담소에서는 창립 60주년을 맞아  
“가정폭력의 다면적 심층 분석과 대응 및 정책”이라는  
주제로 담론의 장을 마련하여  
우리 사회 가정폭력의 양상을 재진단하고, 향후  
가정폭력과 관련한 적절한 대응방안 및  
정책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2016. 3.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곽 배 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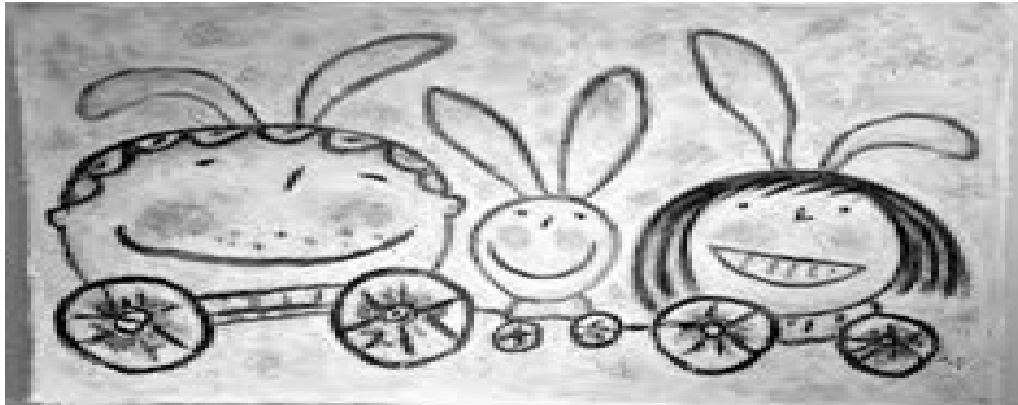
## 목 차

|                                      |     |
|--------------------------------------|-----|
| <b>가정보호재판의 현황과 문제점</b> .....         | 7   |
| 권양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     |
| <b>법무·검찰의 가정폭력 관련 정책 현황</b> .....    | 19  |
| - 아동학대 중심으로 -                        |     |
| 고경순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                     |     |
| <b>가정폭력 남성가해자에 대한 관점과 개입방안</b> ..... | 49  |
| 이서원 한국분노관리연구소 소장                     |     |
| <b>방어와 생존을 위해 행위자가 된 피해여성들</b> ..... | 71  |
| 장희숙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
| <b>음주문제, 공동의존 그리고 성인아이</b> .....     | 89  |
| 김혜선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
| <b>부모폭력에 대한 관점과 개입 방안</b> .....      | 101 |
| - 자녀가 통제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              |     |
| 정윤경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객원교수               |     |
| <b>가정폭력행위자 수탁사건 상담통계</b> .....       | 115 |
|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

# 가정보호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권 양 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 가정보호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권양희(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2016. 3. 25.



### 목차

- I 들어가며
- II 가정보호절차
- III 피해자보호명령절차
- IV 실무상의 문제점
- V 결론



## I. 들어가며

### 01

#### 특례법 입법 경위

- 과거 가정폭력 방지나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부존재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방과 방지의무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가정폭력에 대한 형사처벌절차의 특례 규정
  - 2011. 7. 25. 피해자보호명령 절차가 추가됨
  -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통한 가정의 평화와 안정 회복
  -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 보호

## 02

## 특례법의 적용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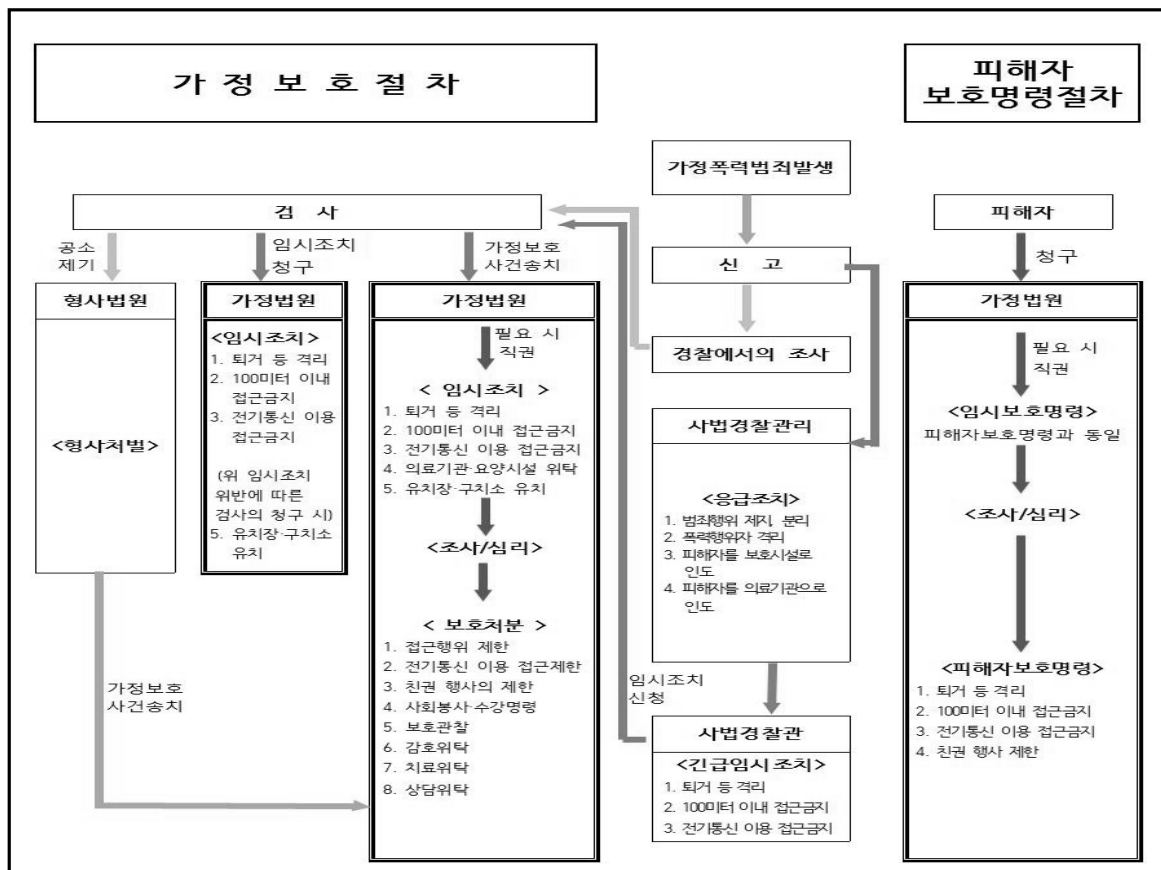
● **가정폭력** :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가정구성원** :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계부모와 자녀,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동거하는 친족

● **가정폭력범죄** : 특례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죄

●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



## Ⅱ.가정보호절차

### 01

### 임시조치 (법 29조)

| 처분 |                       | 기간                        | 불이행             |
|----|-----------------------|---------------------------|-----------------|
| 1호 | 퇴거 등 격리               | 2개월<br>(2회 연장 /<br>총 6개월) | 500만원 이하<br>과태료 |
| 2호 | 100m 접근금지             |                           |                 |
| 3호 |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                           |                 |
| 4호 |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 1개월<br>(1회 연장<br>/총 2개월)  |                 |
| 5호 |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                 |

- 검사는 1호-3호 청구 가능 : 임시조치위반, 재발우려의 경우 5호 청구 가능
- 가정폭력행위자, 법정대리인, 보조인- 임시조치 취소, 변경 신청 가능
- 판사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임시조치 취소, 변경 가능
- 긴급임시조치(1-3호) 위반의 경우 과태료 300만원



## 02

### 보호처분(법 40조)

| 처분 |                       | 기간                | 불이행                                 |
|----|-----------------------|-------------------|-------------------------------------|
| 1호 | 접근행위 제한               | 6월(+6월)           | 2년 이하의 징역,<br>2천 만원 이하의<br>벌금 또는 구류 |
| 2호 | 전기통신이용 접근행위 제한        | 6월(+6월)           |                                     |
| 3호 |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 6월(+6월)           |                                     |
| 4호 | 사회봉사, 수강명령            | 200시간<br>(+200시간) | 500만 원 이하의<br>과태료                   |
| 5호 | 보호관찰                  | 6월(+6월)           |                                     |
| 6호 | 가정폭력방지법이 정한 보호시설 감호위탁 | 6월(+6월)           |                                     |
| 7호 | 의료기관에 치료위탁            | 6월(+6월)           |                                     |
| 8호 | 상담소 등에 상담위탁           | 6월(+6월)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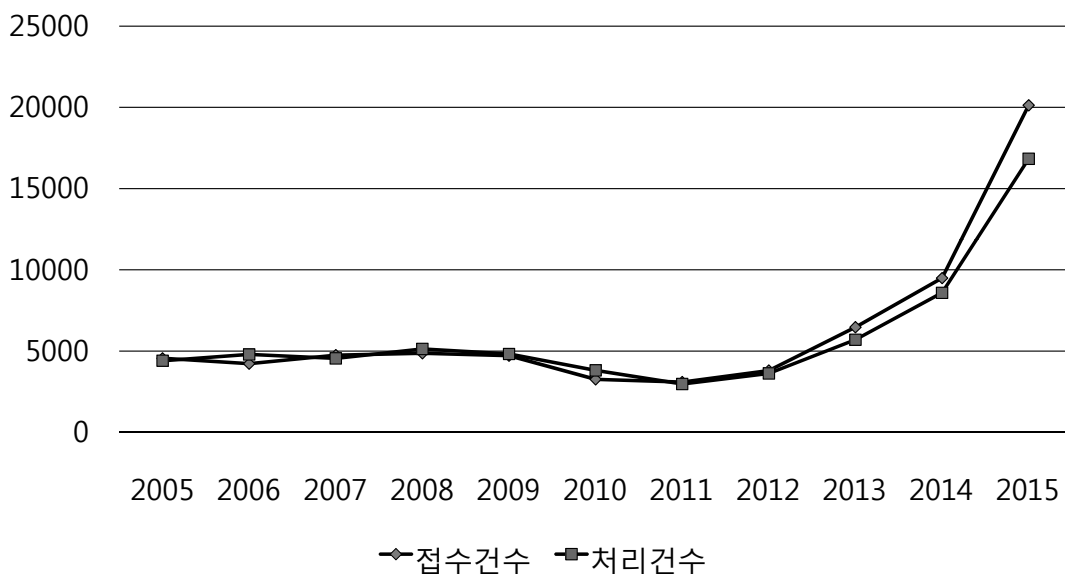
- 처분 병과 가능, 1회에 한하여 보호처분의 종류, 기간 변경 가능
- 4호-8호 의견서 보고서 제출



서울가정법원

##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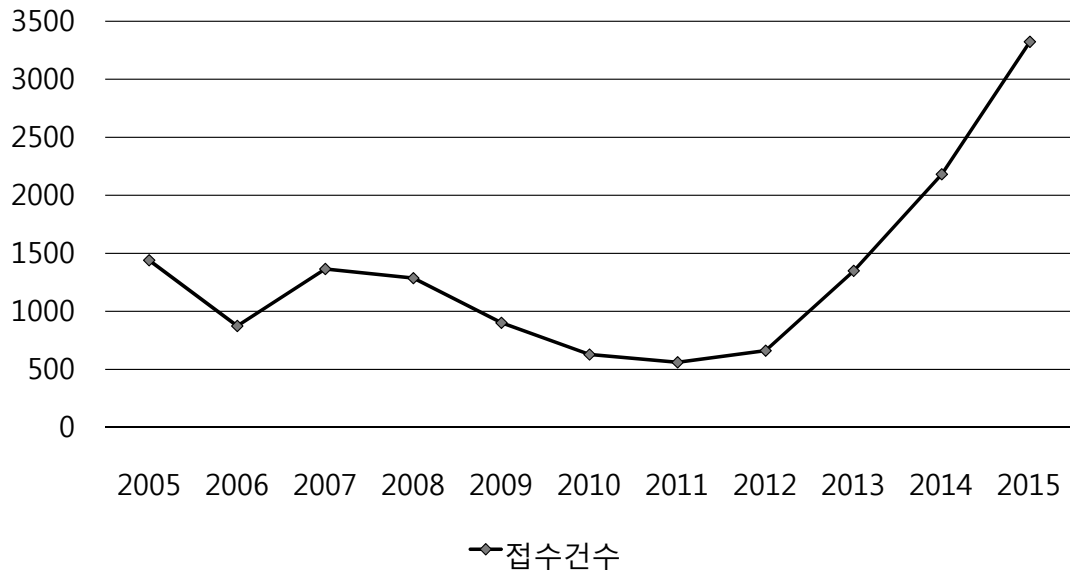
### 가정보호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서울가정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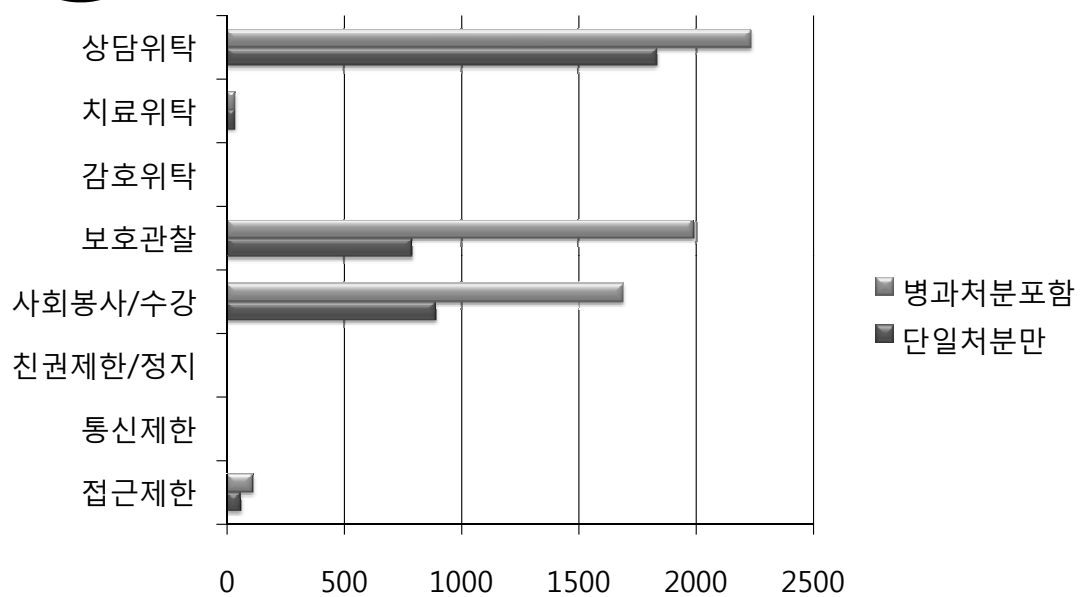
# 04

## 서울가정법원 가정보호사건 접수 현황



# 05

## 보호처분 현황(2014)



### Ⅲ. 피해자보호명령절차

#### 01

#### 피해자보호명령(법 55조의 2)

| 보호명령 |                                         | 기간                               | 불이행                            |
|------|-----------------------------------------|----------------------------------|--------------------------------|
| 1호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 6월<br>(2개월 단위로 연장/<br>총 2년 초과 x) | 2년 이하의 징역,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 2호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                                |
| 3호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                                |
| 4호   |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                                  |                                |

- 임시보호명령 가능 :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 이행실태조사

## IV. 실무상의 문제점

### 01

#### 가정보호사건의 실무상 문제점

- 심리 및 처분상의 어려움
  - 행위자 불출석 : 동행영장 집행의 문제
  - 행위자의 저항, 인식의 부족
  - 유치명령 및 치료위탁 집행의 어려움
  - 피해자의 각성 부족, 비협조적 태도
  - 성행개선보다 생업을 우선시 하는 문제
- 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대처의 어려움
- 감호위탁시설의 부재
- 보호처분 위반,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의 어려움
- 이혼소송의 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례 급증



서울가정법원

## 02

## 집행조사의 필요성

### ● 상담 수탁기관 프로그램의 편차

- 상담의 내용, 목표 등이 행위자의 성행개선에 적합하지 않은 사례
- 피해자의 상담 참여 독려의 어려움
- 지속적인 상담수탁기관 관리 필요

### ● 상담과 치료를 통한 행위자의 성행개선 여부를 판단할 정보 수집

- 보고서 제출 의무 외 조사관 조사를 통한 확인 필요
- 위탁기간 연장 또는 처분 변경, 처분 종료의 근거 자료

## V 결론

감사합니다



서울가정법원



# 법무 · 검찰의 가정폭력 관련 정책 현황

## - 아동학대 중심으로 -

고 경 순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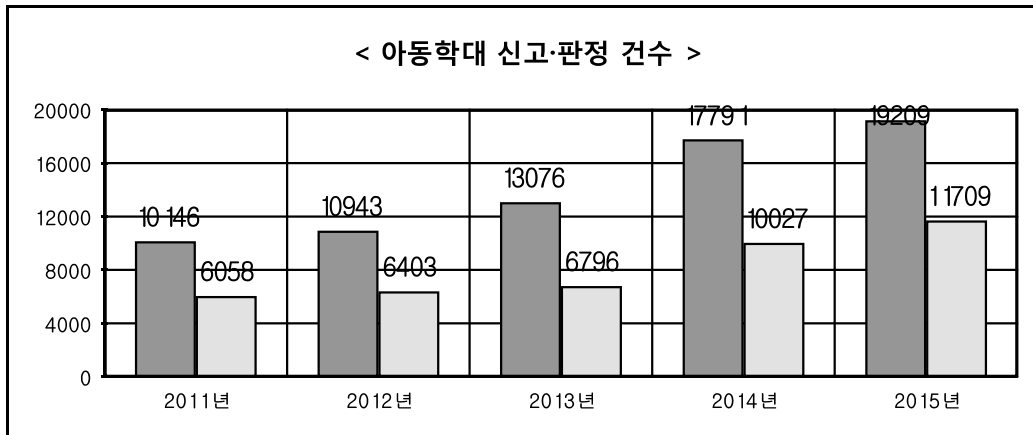
### I.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 1. 아동학대 발생의 심각성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부모의 자식에 대한 폭력인 아동학대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핵가족화, 가족해체, 경제위기 등으로 가족과 지역사회의 아동보호 기능이 급속도로 약화되면서 아동학대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특히 2015년 12월 11세 소녀 맨발 탈출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장기결석 초등생 전수조사과정에서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사건, 부천 목사부부 아동학대사건, 고성 초등생 사망·암매장 사건 등 아동학대 강력사건이 잇달아 발견되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로 아동학대 신고건수와 판단건수는 계속 증가 추세다. 2011년 10,000여건에 불과했던 신고건수가 2015년에 19,200건을 넘어섰고,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도 2015년 11,709건으로 2011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약칭함)이 시행된 2014년을 기점으로 사건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암장되어 있던 아동학대 사건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제고 및 신고 의무자들의 신고 등으로 발견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피해아동 발견율은 여전히 저조한 수치다. 아동 1천명당 피해아동 발견율은 2015년 기준으로 약 1.3명에 불과한데, 이는 미국의 약 9.1명 수준(2013년 기준)과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사회가 아직까지도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인식이 팽배하고 훈육이라는 명분하에 자녀를 체벌하는 행위가 허용되는 분위기 속에서 체벌을 포함한 아동학대가 범죄라는 인식이 미약하고, 부모의 학대를 ‘남의 가정사’로 생각하는 사회분위기가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

(단위: 명, 건, ‰)

| 구분     |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한<br>국 | 아동인구 추계             | 9,688,376  | 9,578,186  | 9,331,894  | 9,099,339 | 8,885,533 |
|        | 아동학대 사례             | 6,058      | 6,403      | 6,796      | 10,027    | 11,709    |
|        | 피해아동 발견율<br>(1천명 당) | 0.63       | 0.67       | 0.73       | 1.10      | 1.31      |
| 미<br>국 | 아동인구 추계             | 73,909,031 | 74,549,919 | 74,399,940 | —         | —         |
|        | 아동학대 사례             | 676,505    | 680,200    | 678,932    | —         | —         |
|        | 피해아동 발견율<br>(1천명 당) | 9.15       | 9.12       | 9.13       | —         | —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년은 속보치)

## 2. 가정폭력의 일환으로서 아동학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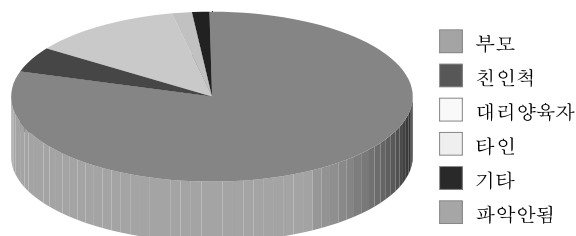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폭력의 일환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참혹한 아동학대 강력사건은 모두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이는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집계된 11,709건의 아동학대 사건 중 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부모에 해당하는 사건은 9,347건으로 무려 전체 사건의 79.8%에 해당한다. 특히 친부·친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도 전체 사건의 75.5%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2015년 한해만의 문제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해마다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15년) 〉

(단위: 건, %)



| 관계 |     | 건수(비율)      |
|----|-----|-------------|
| 부모 | 친부모 | 8,841(75.5) |
|    | 계부모 | 474(4.0)    |
|    | 양부모 | 32(0.3)     |
| 계  |     | 9,347(79.8) |

〈 연도별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비중 〉

(단위: %)

|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아동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 | 83.2 | 85.3 | 80.3 | 81.8 | 79.8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년은 속보치)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가 발생한 장소도 전체 사건의 80%인 9,378건이 피해아동의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 아동학대 발생 장소(‘15) 〉

(단위: 건)

|      | 피해아동<br>가정 | 학대행위자<br>가정 | 보육·보호<br>시설 등 | 기타  | 파악안됨 | 총계     |
|------|------------|-------------|---------------|-----|------|--------|
| 사건 수 | 9,378      | 260         | 1,374         | 680 | 17   | 11,709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년은 속보치)

이제는 가정 내에서 생명·신체에 위협을 받고 있는 피해아동들을 찾아내 적극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구상과 이행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3. 아동학대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 및 제도

아동학대처벌법은 일반적인 가정폭력과 달리 가정 내 아동에 대한 범죄를 ‘아동학대’라고 표현하고 있다. ‘아동학대’에 성인에게 있어서 미성숙하고 약하여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인 아동을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우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괄하고 있다. 즉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행위 뿐만 아니라 방임이나 유기도 모두 아동학대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아동의 입장에서는 아동학대 현장인 가정에서 탈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가정폭력의 당사자인 부 또는 모가 가정 유지를 위해 아동의 고통을 묵과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여유아를 포함한 피해아동이 적극적으로 신고한다는 것도 상정하기 어렵다. 결국 아동학대 피해자들은 지속적으로 가정폭력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한편, 어린 피해자와 달리 아동학대 피해 후유증은 크고 오래 지속되며, 2차 피해에도 극히

취약하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특수성이다.

결국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아동의 발견율을 높이고, 학대행위자로부터 신속하게 분리하여 지속적으로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 및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다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함) 외에 아동학대범죄를 가중처벌하고 그 절차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4년 9월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2016년 2월 아동학대 조기 발견율을 높이고 종전의 아동학대방지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아동학대 방지 강화대책을 마련하였다.

이하에서는 아동학대 관련 주요 법제, 정부에서 마련한 아동학대방지 강화대책, 법무검찰의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자보호대책,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과제 순서로 논의 하겠다.

## Ⅱ. 아동학대 관련 법제 소개

### 1.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범죄의 개념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sup>1)</sup>.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sup>2)</sup>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

1) ‘아동학대의 세부유형’에 대하여 글 말미에 첨부 표로 정리함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범죄'들을 의미한다(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제4호).

####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범죄〉

##### 제2조(정의)4.

-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후략)
-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후략)
-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후략)
-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후략)
- 마.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후략)
- 바.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후략)
- 사.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후략)
- 아.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후략)
- 자.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후략)
- 차.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후략)
- 카.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 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하.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위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발생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이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특유의 절차를 따르게 된다<sup>3)</sup>.

## 2. 아동학대 사건 처리 절차

### (1) 신고 접수 및 현장 출동

아동학대를 발견한 사람은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대표 신고번호는 112로 통합되어 있지만 양쪽 어느 쪽에 신고하더라도 절차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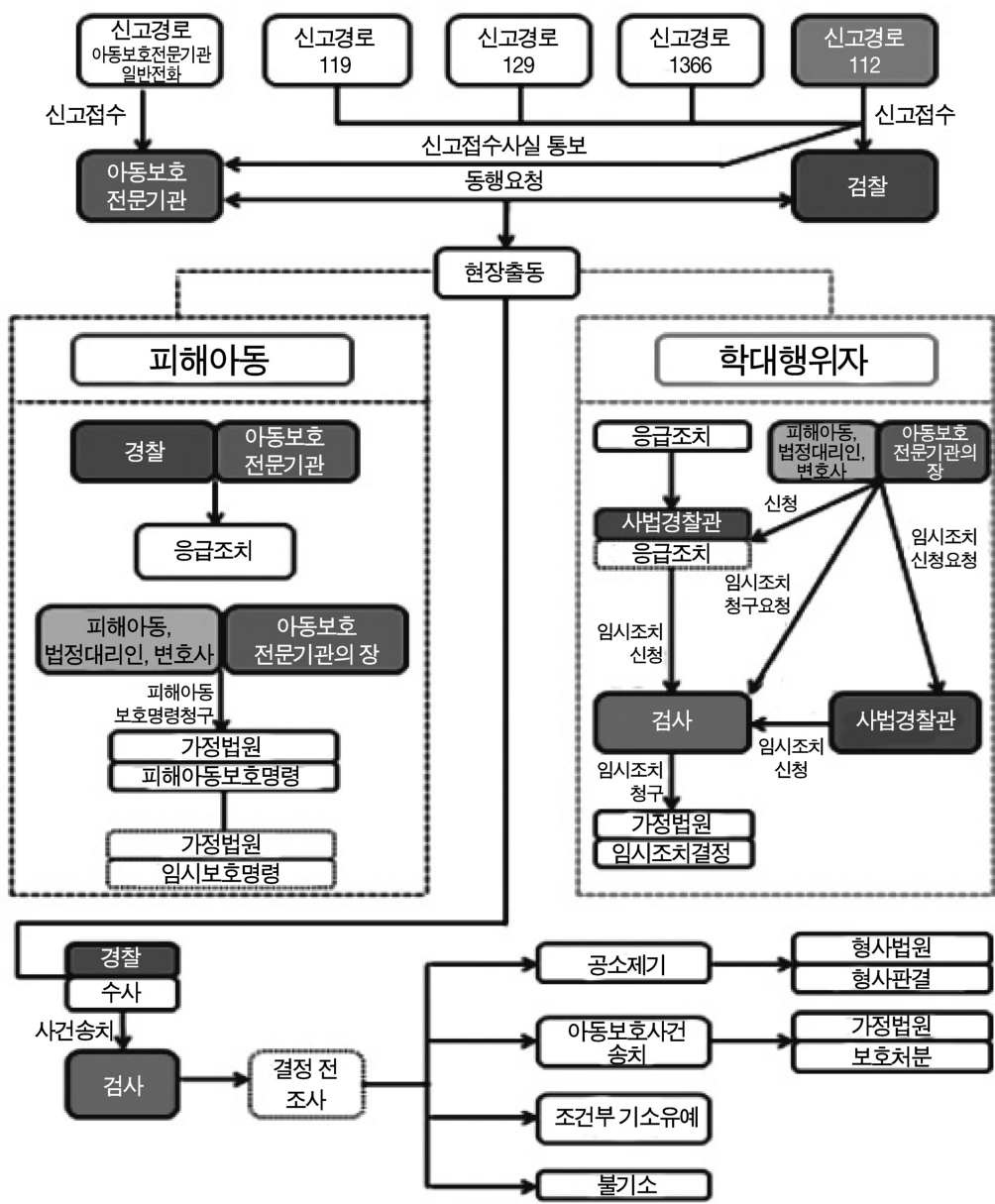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

- 3) **아동학대처벌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진행된다.

경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고를 접수한 경우 상호 동행요청을 하여 함께 현장 출동을 한다. 이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주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아동학대 사건 절차흐름도 >



## (2)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

현장출동을 통해 피해아동을 발견한 경우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응급조치의 내용에는 학대행위자의 격리, 피해아동의 보호시설 또는 의료시설 인도 등이 포함된다.

학대행위자에 대해서는 재범방지 등을 위해 사건 처분 전까지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임시조치는 검사가 청구하면 가정법원에서 결정하는데 주요 내용은 피해아동에 대한 접근 금지, 친권 제한·정지, 상담·교육 위탁 등이 있다.

## (3) 검사의 처분

검사는 수사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 공소제기를 한다. 이때 학대행위자의 성행교정을 위해 수강·이수명령의 병과를 청구할 수 있다.

검사는 학대행위자의 범행동기, 죄의 경중, 성행, 재범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담·교육·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아동보호사건 송치 등을 할 수 있다.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경우 가정법원에서 판단하여 학대행위자에게 형벌이 아닌 접근 금지, 친권 제한·정지, 상담·교육 위탁, 사회 봉사·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종국적으로 내릴 수 있다.

학대행위자 엄벌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한편으로 학대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한 다양한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4) 피해아동보호명령

한편, 피해아동은 자신의 보호를 위해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가정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판사가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고 피해아동이 직접 청구하거나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청구할 수도 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통해 피해아동은 학대행위자로부터 더 장기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보호명령의 내용에는 격리, 접근금지, 친권제한·정지 외에도 피해아동의 보호 위탁, 가정 위탁, 친권자를 갈음하는 의사 결정 등이 가능하다.

### 3. 아동학대처벌법의 특징

#### (1) 신고의무 강화

음지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 사건의 발견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동학대 신고의무 제도를 강화했다. 신고의무자들은 아동학대범죄의 의심만 있어도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 신고의무 제도 비교 〉

|          | 가정폭력처벌법     | 아동학대처벌법                    |
|----------|-------------|----------------------------|
| 신고 요건    | 범죄를 알게 된 경우 | 범죄를 알게 된 경우<br>그 의심이 있는 경우 |
| 신고의무자 직군 | 8개 직군       | 24개 직군                     |
| 과태료      | 3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

#### (2) 초기대응 강화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사법기관의 초기 대입을 통해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꾀했다. 신고접수시 원칙적으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출동하며, 아동학대를 발견한 경우 즉시 응급조치를 해야한다. 검사는 응급조치 이후 72시간 이내에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해야 한다. 임시조치를 통해 학대행위자는 사건의 종국적인 처분 전까지 피해아동에 대한 접근이나 친권행사 등이 제한되고, 필요한 경우 상담·교육 등을 받을 수도 있다.



### (3) 친권 제한 등 청구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의 비중이 높은 만큼 재범 위험성이 있으면 피해아동을 부모로부터 분리하고 임시적으로 친권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을 통해 학대행위자의 친권을 제한·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친권자가 아동학대중상해를 저지르거나 아동학대 상습범인 경우 검사가 원칙적으로 친권상실신고 등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 < 친권 상실 및 제한 관련 조문 정리 >

| 유형                          | 근거                        | 청구권자                       | 내용                                                                                           |
|-----------------------------|---------------------------|----------------------------|----------------------------------------------------------------------------------------------|
| 친권<br>상실                    | 아동학대처벌법<br>제9조제1항         | 검사                         | 아동학대행위자가 상습범이거나 아동학대중상해의 범죄를 저지른 때(기속)                                                       |
|                             | 아청법<br>제23조제1항            | 검사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기속)                                                                |
|                             | 아동복지법<br>제18조제1항          | 검사,<br>지자체의 장              |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기속)  |
|                             | 민법<br>제924조제1항            | 자녀,자녀의<br>친족,검사,<br>지자체의 장 |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 친권<br>행사의<br>제한<br>또는<br>정지 | 아동학대처벌법<br>제19조<br>제1항제4호 | 검사,<br>판사(직권)              | 1.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br>2.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임시조치)<br>기간 : 최대 2월, 1회 연장              |
|                             | 아동학대처벌법<br>제36조<br>제1항제3호 | 검사(보호<br>사건송치)             | 1.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br>2.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보호처분)<br>기간 : 최대 1년, 1회 연장               |
|                             | 아동학대처벌법<br>제52조제1항        | 판사                         | 1.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경우<br>2.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임시보호명령)<br>기간 :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시까지 |

|                                  |                                                       |                                                                                                                                 |
|----------------------------------|-------------------------------------------------------|---------------------------------------------------------------------------------------------------------------------------------|
| <b>아동학대처벌법</b><br>제47조<br>제1항제7호 | 판사(직권),<br>피해아동,<br>법정대리인,<br>변호사,<br>아동보호전문기<br>관의 장 | 1.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경우<br>2. <b>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피해아동보호명령)</b><br><b>기간 : 최대 1년, 4년까지 연장</b>                                         |
| <b>아동복지법</b><br>제18조제1항          | <b>검사,</b><br>지자체의 장                                  | 1.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기속)<br>2. <b>친권 행사의 제한</b>           |
| <b>민법</b><br>제924조제1항            | 자녀,자녀의<br>친족, <b>검사,</b><br>지자체의 장                    | 1.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br>2. <b>친권 일시 정지</b><br><b>기간 : 최대 2년, 1회 연장</b>                                     |
| <b>민법</b><br>제924조의2             | 자녀,자녀의<br>친족, <b>검사,</b><br>지자체의 장                    | 1. 거소의 지정이나 징계,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br>2. <b>친권 일부 제한</b> |

※친권자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도 가능함(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제1항제9호, 제52조제1항)

#### (4) 성행 교정에 중점을 둔 다양한 처분

학대행위자는 가정에 복귀할 경우 재범 가능성이 높으므로 학대행위자의 성행을 교정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처분이 결부될 필요성이 있다.

검사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기소여부 판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 기소유예, 아동보호사건 송치 등 학대행위자의 교화를 위한 다양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검사는 사건관리회의<sup>4)</sup>를 개최하여 사건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최적의 처분을 할 수 있다.

4) 검사가 아동학대범죄 사건 처분 시 의사,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등 관련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도록 주최하는 회의(아동학대처벌법 시행령 제4조)

〈 임시조치·보호처분·피해아동보호명령 〉

| 임시조치(법 제19조)                                                                                                                                                                                                                                                                                                                                                  | 보호처분(법 제36조)                                                                                                                                                                                                                                                                                                                                                                                                                  | 피해아동<br>보호명령(법 제47조)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li> <li>2.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li> <li>3.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li> <li>4.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li> <li>5.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li> <li>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li> <li>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li> </ol>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li> <li>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li> <li>3.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li> <li>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 명령</li> <li>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li> <li>6.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li> <li>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li> <li>8.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li> </ol>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li> <li>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li> <li>3.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li> <li>4.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li> <li>5.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li> <li>6.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li> <li>7.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li> <li>8.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li> <li>9.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 표시를 갈음하는 결정</li> </ol> |

(5) 피해자 국선변호사 · 진술조력인 지원

2차 피해에 취약하고 방어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아동을 형사절차에서 조력하기 위해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진술조력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검사가 선정하며, 수사절차에서부터 재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전

반적인 과정에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고 피해아동을 법률적으로 조력한다. 진술조력인은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아동의 진술을 중개·보조하여 실제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는 전문 인력을 의미한다.

#### **4.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동향**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시행된 것은 2014년 9월 29일로 채 2년이 지나지 않았다. 아직은 제정법이 충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 경과를 지켜볼 시기이다. 다행히 법시행의 효과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 아동학대 발견율이 증가하고, 학대피해자를 위한 응급조치 등 효율적인 초동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피해자 보호지원제도가 시행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미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도 계속 발의되고 있다.

2015년 8월 법무부, 복지부 등 5개 부처가 약 5개월간의 논의 끝에 아동학대 조기발견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고의무자 직군을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 국회 아동학대근절 특별위원회 의장인 안홍준 국회의원을 통해 발의한 바 있다. 그 외에도 7건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 그 내용이 대부분 형량 강화나 신고의무 강화이다. 현재 법안개정은 아동학대 사건의 조기발견율 제고, 아동학대사건의 엄정처벌에 맞춰져 있다.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는 소관법령인 아동학대처벌법의 시행성과 및 미흡한 점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절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국회 계류 중인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현황 〉

| 순번 | 대표발의<br>의원명 | 발의일자       | 의안번호    | 주요내용                                                   |
|----|-------------|------------|---------|--------------------------------------------------------|
| 1  | 염동열         | '14.3.27.  | 1909897 | - 피해아동 분리조사<br>- 전담조사제<br>- 신고포상금                      |
| 2  | 문대성         | '14.3.31.  | 1909935 | - 형량강화                                                 |
| 3  | 이명수         | '14.4.28.  | 1910337 | - 형량강화                                                 |
| 4  | 신경민         | '15.1.16.  | 1913704 | - 비밀엄수의무의 예외인정                                         |
| 5  | 홍지만         | '15.2.16.  | 1914020 | - 형량강화                                                 |
| 6  | 안홍준         | '15.8.10.  | 1916355 | - 신고 기한 명확화<br>- 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위반<br>자에 대한 형사처벌 |
| 7  | 윤후덕         | '15.10.22. | 1917319 | - 형량강화<br>- 피해아동보호명령기간 연장                              |
| 8  | 박인숙         | '16.1.12.  | 1918470 | - 형량강화                                                 |

### Ⅲ. 법무·검찰의 아동학대 대응 정책

#### 1. 범정부 아동학대 대응 강화 대책

정부는 2016년 2월 아동학대 대응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추진방향 및 주요 추진 과제

#####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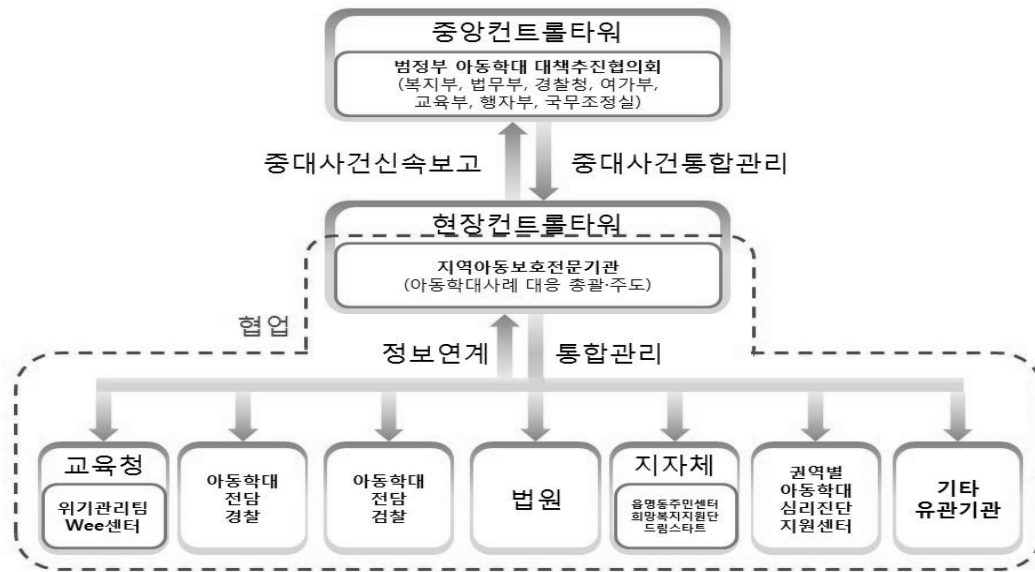
- ◆ 미취학 및 장기결석 아동 등 아동학대 사각지대 중심 조기발견 강화
- ◆ 범정부 컨트롤타워 설치 및 유관기관별 역할 분담 명확화로 아동학대 발생 초기 신속대응 강화
- ◆ 분리보호, 상담·교육 및 의료심리지원 등 재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 건전성장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
- ◆ 아동 및 부모 대상 교육, 대국민 홍보 등 아동학대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추진 방향                   | 주요 추진 과제                                                                                                                                                                                                                 |
|-------------------------|--------------------------------------------------------------------------------------------------------------------------------------------------------------------------------------------------------------------------|
| 아동보호 사각지대 중심<br>조기발견 강화 | <input type="checkbox"/> 미취학 및 장기결석 아동 중 학대 피해 우려아동에 대한 일제점검<br><input type="checkbox"/> 조기발견을 위한 교사권한 및 역할강화 추진<br><input type="checkbox"/>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활성화<br><input type="checkbox"/>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대 피해아동 발견체계 구축 |
| 아동학대 발생초기<br>신속대응 강화    | <input type="checkbox"/> 복지부에 범정부 아동학대 대응 컨트롤타워 설치<br><input type="checkbox"/> 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한 신속대응<br><input type="checkbox"/> 지역별 아동학대 대응체계 점검 및 직원 전문성 강화                                                               |
| 재학대 방지 위한<br>사후관리 강화    | <input type="checkbox"/> 피해아동 분리보호 및 의료·심리지원 강화<br><input type="checkbox"/>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친권 제한·정지 및 상실제도 적극 활용<br><input type="checkbox"/>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활성화                                                      |
| 인식개선을 위한<br>교육 및 홍보 강화  | <input type="checkbox"/> 아동 및 부모에 대한 아동권리 및 양육교육 강화<br><input type="checkbox"/> 아동학대 인식개선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

## (2)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수립하고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지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아동학대대책 추진협의회’를 중앙컨트롤타워로 구성하였다. 복지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이 이에 참여하여 아동학대 방지대책 추진상황을 이행, 점검하고, 매월 사회관계장관회의의 보고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 컨트롤타워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아동학대사례 대응을 총괄·주도하게 할 예정이다.

## 〈법정부 아동학대대책추진협의회 추진체계〉



## 2. 법무·검찰의 아동학대방지 종합대책

### (1) 개요

법무·검찰의 아동학대방지 종합대책도 ①아동학대 조기발견 강화 ②아동학대사건의 신속엄정대응 ③피해아동 보호·지원 강화 ④아동학대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의 4가지 추진방향으로 마련되었다.

최근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해 교육부에서는 장기결석 학생 관리대책, 복지부에서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영유아 양육상황 점검제도를 마련하여 점검중이다. 법무부는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활성화가 아동학대 조기발견에 가장 긴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 사건의 엄정대응을 위해 전국 111명의 전담검사가 지정되어 전문적인 수사지휘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중한 아동학대사건은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로 지

정되어 보다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 곧 사건유형별 세부적인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하고 구형기준을 강화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피해아동 보호·지원을 위해 향후 친권제한·정지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지원 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전국 검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건관리회의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의료적 지원과 적절한 처분을 도출하여 피해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

마지막으로 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방지를 위해 교도소에 수형중이거나 보호관찰 중인 아동학대 범죄자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고, 아동학대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2) 종합대책의 세부내용

법무·검찰의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아동학대 조기발견 강화

#### □ 신고활성화를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추진

- 신고의무자 직군확대 및 신고자 보호조치를 강화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이 현재 국회 법사위 제1소위에 계류 중
-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 (현행) 가정·보육, 교육, 의료·응급, 피해지원 등 분야 24개 직군
  - (신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입양기관 등 3개 기관을 추가



| 분야    | 직군                                                                                                                                                                                                                                              |
|-------|-------------------------------------------------------------------------------------------------------------------------------------------------------------------------------------------------------------------------------------------------|
| 가정·보육 |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육교직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청소년시설·청소년단체 종사자, 청소년보호센터·청소년재활센터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아이돌보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수행인력, <u>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추가)</u> , <u>입양기관 종사자(추가)</u> |
| 교육    |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초·중등 교직원, 전문상담교사·산학겸임교사, 학원·교습소 종사자                                                                                                                                                                                               |
| 의료·응급 | 구급대 대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의료인,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
| 피해 지원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성매매피해 상담소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u>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종사자(추가)</u>                                                                                                                                  |

#### ○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신고의무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점차 강화되고 있으나, 신고에 따른 신고자 신변 보호는 미흡
- (개선방안)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수사과정에서 가명
  - ↳ 해고, 차별 등 불이익조치 시 형사처벌
- 조서 활용, 신변 위험 시 신변안전보호조치 등 신고자 보호 강화
  - ↳ 보복 우려 시 경찰관 동행, 신변경호,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등

## 2 아동학대 신속·엄정 대응

### □ 아동학대 수사 역량 강화

#### ○ 전담검사 책임수사제

- 서울중앙지검 및 '16년 신설되는 대구·광주지검 여성·아동조사부에 우수검사를 배치하고, 전국 58개 검찰청에 **전담검사** 지정
- 경찰 수사 단계부터 철저히 지휘하고, 영장청구·형사처분·피해자 지원 등 **전과정**

## 책임수사를 통한 전문적 아동학대 수사체제 구축

### ○ 전문가 감정의뢰 적극 활용

-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암장을 막기 위해 검사의 **직접검시** 및 부검을 강화하고, 검시 초동단계부터 법의학 자문위원 **감정의뢰**를 적극 활용

### ○ 사건관리회의 적극 실시

-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를 적극 실시하여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의료기관 등 **현장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피해 아동을 고려한 각종 처분 등이 신속·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임

\* 수사과정에서 검사가 의사, 사회복지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 등 관련 전문가에게 사건처분 및 피해자 지원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

### ○ 부장검사 주임검사제

- **부장검사 주임검사제** 대상 범죄에 아동 대상 범죄를 포함하여  
↳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로써 주요사건 직접 수사에 임하여 수사 **소**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제도

중요 아동학대 사건은 부장검사가 직접 수사 가능

- 주임검사인 부장검사는 1인 이상의 소속검사를 주무검사로 지정, 수사팀 구성이 가능하여 수사의 전문성·신속성 제고

- 수사에 참여한 검사는 **수사실명제**를 실시하여 수사의 책임성 강화  
↳ 수사서류에 주임검사뿐만 아니라 수사참여 검사 모두의 성명을 기명

※ 부친 초등생 사망 사건의 경우, 부장검사를 주축으로 5명의 검사가 수사팀을 구성하여 사건에 대한 업무분장을 통해 신속한 수사체제 구축

## □ 아동학대범죄 엄정대응

### ○ 세부적 사건처리기준 마련

- 아동학대 범죄의 구형 및 선고현황을 분석하여 범죄유형별로 구속여부·보호처분·구형에 대한 세부적 **사건처리기준**을 마련

○ 적극적인 구속 수사

- 피해정도, 행위태양, 범행동기 등을 고려하여 죄질 불량한 경우 1회 범행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구속 수사

○ 원칙적 구공판

- 아동학대범죄 행위자에 대한 약식명령 청구를 지양하고, 원칙적으로 구공판을 통하여 엄벌

**3**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강화**

□ 사건 초기 신속한 보호조치

-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사건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통해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격리하고, 보호·의료시설 인도
-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가해자 접근금지, 격리, 퇴거 등 임시조치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아동의 조기 분리를 통해 재학대 예방

□ 친권 제한·정지·상실 제도 적극 활용

○ 신속한 친권 제한·정지 청구

- 아동학대 전담검사를 통하여 아동학대사건 초동단계부터 경찰이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친권 제한·정지 신청을 하도록 적극 지휘

〈 친권 제한·정지가 필요한 경우 〉

- 학대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의 복리에 반하는 의사결정의 위험, 피해아동 분리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경우
- 학대행위자가 구속수사 등으로 피해아동의 법적 결정에 공백이 있는 등 임시후견인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등
- ※ 예) 피해 아동에게 수술이 필요하여 이에 대한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나 구속 등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인 친권 상실 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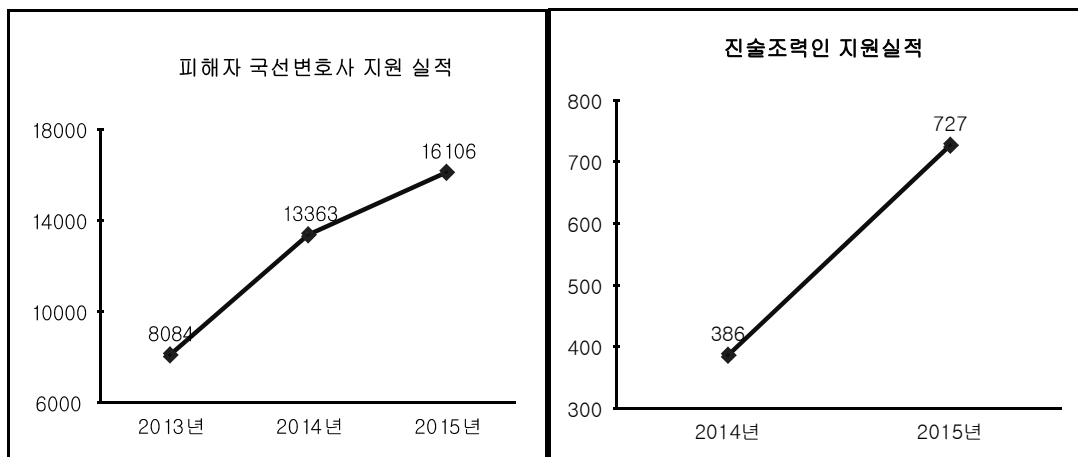
- 전담검사는 중대한 아동학대사건 처리 前,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를 실시, 전문가 의견 청취하여 신중하게 친권상실여부 결정
- 친권상실은 영구적인 처분이므로 재학대방지 등 피해자보호를 위한 친권상실조치 필요성 및 걱정 후견인 대상자 등을 다각도로 적극 검토하여 피해아동을 위한 최적의 의사결정이 되도록 도모

## □ 형사절차에서의 피해 아동 보호 강화

### ○ 피해 아동 지원방안

- 아동학대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아동에 대한 **진술조력인**, **피해자 국선변호사** 적극 선정을 통해 의사소통·법률지원

|           | 피해자 국선변호사                                                                                                           | 진술조력인                                                                                                        |
|-----------|---------------------------------------------------------------------------------------------------------------------|--------------------------------------------------------------------------------------------------------------|
| <b>의의</b> | 성폭력·아동학대범죄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b>법률조력</b> 을 받을 수 있도록 검사가 선정해주는 변호사                                                         | 성폭력·아동학대범죄 피해자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수사·재판 과정에서 <b>의사소통</b> 을 중개·보조하는 전문인력                                       |
| <b>현황</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국선변호사 명부 <b>621명</b> 관리</li> <li>- 피해자 <b>국선전담변호사 17명</b> 배치</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술조력인 <b>70명</b> 양성</li> <li>- 상근 진술조력인 <b>10명</b> 전국 배치</li> </ul> |



○ 피해 아동 보호방안

- 조사 시 피해아동의 건강·심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신뢰관계자의 동석 및 출장조사** 실시 확대
  - 조사 전과정에 대한 **영상녹화 실시**하여 추후 증거로 활용함으로써 재조사·증언으로 인한 2차 피해 방지
  - 피해아동 조사와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신문은 원칙적 분리**
- ※ 예외적 대질신문 시, 대질방법 등에 대해 피해아동과 법정대리인, 아동심리 전문가 의견 등을 최대한 반영

□ 피해 아동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

- 피해아동에 대하여 치료비, 심리치료비, 간병비, 치료 부대비용 지원, 심리상담 기획 제공 등을 통한 **치료지원** 강화

〈피해 아동 지원 제도〉

|           |                                  |
|-----------|----------------------------------|
| 경제적 지원    | 피해구조금, 치료비·생계비, 임시주거             |
| 심리적 지원    | 심리치료비, 스마일센터(심리치유)               |
| 법률·보호 서비스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법정동행, 스마트워치 지급 |

### 〈치료 지원 내용〉

|         |                                                                          |                                                        |
|---------|--------------------------------------------------------------------------|--------------------------------------------------------|
| (신체)치료비 | 학대 피해로 5주 이상 진단 시 학대 피해로 인한 5년 이내 지출된 치료비 지원(실비)                         |                                                        |
| 심리치료비   | 정신과 치료비                                                                  | 범죄피해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출된 치료비 지원(실비)                      |
|         | 심리상담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심리상담사에게 심리치료 상담 서비스를 받은 경우(전문가 등급 등 기준에 따름) |
| 간병비     | 요양병원 입원 치료를 받거나, 피해자의 입원 기간 동안 간병할 가족이 없는 등 간병인에 의한 간병이 필요할 경우 지급        |                                                        |
| 치료 부대비용 | 피해자가 의료보조기구를 구입하거나 원거리 의료시설 내방을 위한 교통비·숙박비·식비 등 기타 치료 부대비용을 지출할 경우 실비 지원 |                                                        |

## 4

###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 아동학대 재발 고위험군에 대한 교육 강화

- 아동학대 재발 위험이 높은 교정시설 수용 및 보호관찰 중인 아동학대사범을 대상으로 치료프로그램 교육을 통한 재학대 예방
- 교정시설의 치료프로그램은 아동학대 재범예방을 위한 사항, 보호자로서의 기본 소양 증진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

#### ▶ '15. 12.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개발 완료(여성아동인권과 연구용역)

- 교육시간 : 100시간
- 프로그램 : 의사소통, 스트레스 관리, 분노조절, 가족관계문제, 양육기술, 대인관계회복, 미술치유, 음악치유 등(이수명령 100시간 이상 대상자는 개별상담 등 추가 반복 교육실시)

- 보호관찰소는 각 보호관찰소 교육담당자들의 연구 및 의견교환을 통하여 자체개발한 아동학대 행위자 치료프로그램을 '16년부터 운영

▶ **아동학대 사범 수강명령 회기별 프로그램**

- **모듈 1** : 개관(법령의 이해 등 8주제)
- **모듈 2** : 아동학대 진단 및 상담(가족관계 역동성 이해하기 등 6주제)
- **모듈 3** : 건강한 보호자의 역할 알아보기(아동발달의 이해 등 6주제)
- **모듈 4** : 재발방지 계획 세우기(폭력주기 및 일시적 중단법 등 6주제)

○ **법교육 프로그램에 아동학대 관련 교육 강화**

- 초중등교사 법교육 직무연수 교육과정에 아동학대 이해 및 신고의무에 대한 콘텐츠를 포함하여 실시
- 유아 법교육 프로그램에 학대 피해 시 아동이 직접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 신고교육 콘텐츠 포함 실시

○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경미한 체벌, 정서적 학대, 교육적 방임 등이 모두 학대에 해당된다는 점을 사회 공론화
- ※ 법무부는 '15년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영상(라바)** 제작하여 서울시 지하철 및 경기버스를 통해 상영하였고, '16.2.17. SBS 프로그램 **‘좋은아침’**을 통해 **‘방임도 아동학대범죄’**라는 취지의 홍보

## IV.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과제

### 1. 아동학대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제

최근 장기결석 학생 전수조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에는 미처 발견되지 않은 아동학대 사건들이 다수 존재한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우리는 가정 내의 아동학대범죄를 최대한 조기 발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굴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 제도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시스템이다. 법무부는 이 제도가 더욱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하는 한편,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고 신고자들이 안심하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 규정을 마련한 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개선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 모두가 아동학대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아동학대 신고자가 되는 것이 아동학대 근절에 가장 필요한 첫걸음이다.

우리 사회에서 다수의 아동학대 사건들이 음지에 숨어있을 수 있는 것은 자식에 대한 체벌을 관대하게 생각하고 타인 가정의 일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국민들의 의식 수준 때문이다. 특히 유교사상의 영향을 받은 기성세대들은 아동에 대한 체벌을 심각하지 않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부모들의 체벌이 자식의 사망으로까지 이어진 최근의 아동학대 사건들을 보면서 이제 ‘체벌은 범죄’라는 명확한 인식이 공유되어야 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국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 훈육과 체벌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고, 올바른 양육방법에 대한 다양한 교육 기회 등이 국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는 실무자를 위한 교육, 신고자를 위한 교육, 학대행위자를 위한 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개발 중이며, 검사,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등에 대해서는 이미 교육 진행 중이다.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아동인권 조형물, ‘라바’를 주인공으로 한 애니메이션 공익광고 등)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 ‘방임도 아동학대’라는 내용으로 홍보활동도 새롭게 진행할 예정이다.

## 2. 일선 상담소의 업무협조

가정폭력상담소의 장 및 종사자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sup>5)</sup>.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상담하는 중에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sup>6)</sup>.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반드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미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가정폭력 사례를 상담하는 경우에도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가 그 내용의 차이가 있는 만큼 특성에 맞는 상담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이다. 특히 피해아동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등 전문가 조력제도와 다양한 경제적인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친권상실·제한제도 등도 활용 가능하므로 함께 안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인적사항 등 아동학대 사건 관련해서 알게 된 사실이 외부에 유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성장기에 있는 아동이 입게 되는 2차 피해는 성인에 비해 매우 심각하므로 더욱 신경써야한다.

---

5)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글 맨 뒤에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에 수록된 ‘아동학대 징후’ 첨부

참고로 아동학대처벌법은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직원이 아동학대 사건 관련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신고인의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62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① 제35조제1항에 따른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보조인, 진술조력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그 기관장, 상담소 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제10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보조인인 변호사에 대하여는 「형법」 제317조제1항을 적용한다.

②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소 결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여성아동범죄 대응 관련 전문성을 제고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하여 올해 3. 17.부터 3. 18.까지 합동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전국 여성아동전담 검사와 피해자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가정폭력 및 성폭력상담소 전문가 100여명이 모여서 최근 수사사례, 각 기관의 역할과 성과, 향후 정책방향 등을 나누는 귀한 자리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아동학대 방지를 요구하는 다양한 목소리에 깊이 귀 기울여 의견을 정책 및 법 개정애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유관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사건관리회의 등의 활성화를 통해 현실에 기반한 선진적인 아동학대 근절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 새롭게 수립된 아동학대 대응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여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직 미성숙한 아동은 가정 내에서 누구보다도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다. 아동은 가정 구성원의 관심과 애정을 먹고 성장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대받으며 성장한 아동이 자신의 자식들에게 학대를 대물림한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는 보는 이들의 마

음을 더욱 아프게 한다.

법무부는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고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

## 〈아동학대 유형〉

### ○ 신체학대

-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예시)

- ①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손, 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
- ②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도구로 때림,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름 등)
- ③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화상을 입힘 등)
- ④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강하게 흔들, 신체부위 묶음, 벽에 밀어붙임, 떠밀고 움켜잡음, 아동 던짐, 몸을 거꾸로 매달, 물에 빠뜨림 등)

### ○ 정서학대

-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 정서적 학대행위(복지법 제71조제1항제2호 중 제17조5호 부분)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합헌결정(명확성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2014헌바266 결정)

(예시)

- ① 언어 폭력행위(소리치름, 무시 또는 모욕, 원망적·거부적·적대적·경멸적 언어 폭력, 아동에게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 등)
- ② 정서적 위협(공포분위기 조성, 좁은 공간에 혼자 가둬둠, 집밖으로 쫓아냄, 강제로 머리를 자르는 행위, 가정폭력에 노출시킴, 잠을 재우지 않거나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 ③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강요하는 행위(돈을 벌여오라며 위협, 아동 나이에 적절하지 않은 과도한 과업이나 행동 요구 등)
- ④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차별·편애·왕따 시키는 행위 등

○ 성적 학대

-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

(예시)

- ㉠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옷을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는 등의 관음적 행위, 성관계 장면을 노출, 나체 및 성기 노출, 자위행위 노출 및 강요, 음란물을 노출하는 행위 등)
- ㉡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구강행위, 성기추행, 항문추행 기타 신체부위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등)
- ㉢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 ㉣ 성교를 하는 행위(성기삽입, 구강성교, 항문성교)
- ㉤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 유기·방임

-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

(예시)

- ㉠ 물리적 방임(기본적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음, 위험과 상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음, 불결한 환경 및 위험상황에 아동 방치)
- ㉡ 교육방임(의무교육을 제공하지 않음, 무단결석을 허용하거나 지도하지 않는 등 아동의 교육 욕구 및 의무에 대한 방치행위 등)
- ㉢ 의료 방임(필요한 의료적 처치 거부 등)
- ㉣ 유기(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림,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짐, 시설근처에 버리고 감,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친족 거주지 근처에 아동을 두고 사라지는 등의 행위)

〈대검 교육자료 참고〉

# 가정폭력 남성가해자에 대한 관점과 개입방안

이 서 원

한국분노관리연구소 소장

## I. 가정폭력 남성가해자 개입의 필요성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은 일반폭력과 달리 반복성과 지속성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이로 인해 가정폭력은 한 번 발생하면 장기간 지속되는 속성을 지닌다. 장기간 지속되는 가정폭력의 피해는 폭력 피해 배우자 및 자녀가 오랫동안 감당해야 할 버거운 짐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폭력 피해 배우자 및 자녀는 다양한 신체 및 정신 건강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나아가 대인관계에 있어 비행, 공격적 행동, 폭력 등 여러 문제행동을 나타내게 된다. 사회는 이를 치유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따라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1차, 2차 피해를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가정폭력 가해자의 폭력행동을 중단하도록 하는 사회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재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절 보호처분 제40조 8호에 규정된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은 가정폭력 가해자의 폭력행동을 중단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회적 방안의 가장 핵심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다.

1997년 12월 13일에 제정되어 이듬해인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동 법은 2016

년 현재 시행된 지 18년을 경과하고 있다. 18년 동안 법원에서 상담위탁을 받은 국내 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 가정폭력가해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가해자 상담을 수행하고 있다. 상담의 핵심 목적은 가정폭력 행위의 중단이다. 그런데 18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상담위탁기관인 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가정폭력 가해자의 가정폭력 행위를 중단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실증적인 연구가 드물다. 향후 보다 상담위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상담위탁 처분이 가정폭력 가해자의 가정폭력 행위 감소 및 중단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가정폭력상담소에게는 사회에 대한 책임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이 되고, 사회의 측면에서는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는 정당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수행된 상담위탁 처분의 효과성에 관한 국내 조사연구의 성과를 살펴본 후, 상담위탁 기관에서 실제 발생하고 있는 현장의 상황 및 함의점을 가정폭력 남성가해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로 대변되는 남성가해자 관점과 개입방안으로 나누어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하는 가정폭력 가해자는 남성가해자이다. 이는 현재까지 대부분의 가정폭력 가해자가 남편이라는 경험적 근거를 토대로 한 것이다. 본 연구는 향후 가정폭력 남성가해자의 효과적인 상담위탁 진행을 위한 기초 근거자료를 제공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 II. 국내외 가정폭력 남성가해자 개입 효과의 선행연구 검토

현재까지 국내외 연구들에서는 가정폭력 남성가해자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이 가정폭력 행위 남편의 폭력을 감소시키는 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Babcock & Steiner, 1999; Gondolf, 1999; Murphy, Musser & Marton, 1998; Shepard, Falk & Elliot, 2002; 김재엽, 2011; 이서원, 2003). 이 가운데 국외 연구로서 Babcock과 Steiner(1999)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중도탈락을 하더라도 행위자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정폭력 남성가해자들은 재폭력률이 23%에 그친 반면, 단순히 형사처벌만을 받은 가해자들은 재폭력률이 거의 3배에 달하는 62%에 달하고 있었다. 이러한 재폭력률의 차이는 남성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말해주고 있다. 동시

에 가정폭력은 관계상에서 발생하는 역기능적인 문제행동이므로 가해자의 관계에서 본질적인 태도 및 기술 변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폭력행동이 개선되지 않음을 말해주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가정폭력 남성가해자들의 재폭력률은 장기적인 기간의 추적조사에서도 대체로 20% 내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바, Hendricks와 동료들(2006)이 1986년부터 1999년까지 13년간 가정폭력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1,800명에 대한 종단분석을 실시한 결과 재폭력률이 20%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의 종단적 연구까지 수행된 국외 연구에 비해 국내 연구는 그동안 20명 내외의 소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실험설계 혹은 유사실험설계 등을 통해 단기적인 효과성을 분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강은희, 이현림, 2008; 김미애, 2006; 여은경, 박부진, 2011; 이서원, 2003; 이은주, 2004). 효과성 분석결과, 공통적으로 남성가해자의 공격행동이나 폭력행동은 치료 프로그램이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규모 단기 연구가 최초로 국내에서 대규모 장기 연구로 전환하게 된 것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 하에 수행된 김재엽(2011)의 ‘가정폭력 행위자 치료 프로그램의 장기효과 분석’에 이르러서이다. 동 연구는 전국 65개 가정폭력상담기관에서 가정폭력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남성의 아내 150명 가운데 참여의사를 밝힌 123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이 조사는 가정폭력 남성가해자들이 상담위탁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이후 9개월(1차 조사), 14개월(2차 조사) 그리고 19개월 이후(3차 조사) 총 3회에 걸쳐 5개월 간격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모든 유형의 신체적 폭력이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치료 프로그램 이후 남성가해자의 가정폭력 가해실태<sup>7)</sup>

|                           |                 |                |                | 빈도(%)     |
|---------------------------|-----------------|----------------|----------------|-----------|
| 구분                        | 1차조사<br>(n=116) | 2차조사<br>(n=76) | 3차조사<br>(n=56) | F         |
| <b>경미한 폭력</b>             | 50(43.1)        | 14(18.4)       | 2(3.6)         | 12.760*** |
| 1. 나에게 물건을 집어던졌다          | 44(37.9)        | 11(14.5)       | 1(1.8)         | 41.563*** |
| 2. 세게 밀쳤다                 | 45(38.8)        | 8(10.5)        | 1(1.8)         | 63.543*** |
| 3. 손바닥으로 뺨이나 신체를 때렸다      | 40(34.5)        | 7(9.2)         | 2(3.6)         | 63.264*** |
| <b>심각한 폭력</b>             | 31(43.1)        | 5(6.6)         | —              | 6.736**   |
| 4.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 30(25.9)        | 4(5.3)         | —              | 71.504*** |
| 5. 물건(책대, 방망이 등)으로 때렸다    | 11(9.5)         | —              | —              | 86.748*** |
| 6.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 12(10.3)        | 1(1.3)         | —              | 75.735*** |
| 7. 칼이나 흉기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였다. | 8(6.9)          | —              | —              | 96.246*** |

\*\* :  $p < .01$ , \*\*\* :  $p < .001$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미한 폭력과 심각한 폭력 두 유형에서 모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신체적 폭력이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있었다. 이는 가정폭력 남성가해자 상담위탁 치료 프로그램이 폭력 감소에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 Ⅲ. 가정폭력 남성가해자에 대한 관점

가정폭력 남성가해자에 대한 관점은 개입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남성가해자를 범죄자로 바라볼 경우 개입은 강경하고 징벌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반해 남성가해자를 우리 가족의 남편과 동일한 일반가정 남편의 한 사람으로 바

7) 김재엽, 최권호, 장용언 (2011), 가정폭력가해자 치료프로그램 이수 이후 가해 남편의 재폭력과 피해 여성의 정신건강실태, 피해자학연구 제19권 제2호, p.15 〈표 2〉 재인용.

라볼 경우 개입은 부드럽고 상담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에 따라 그를 어떻게 대할지가 결정되고, 이는 그의 폭력행동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래에서는 지난 18년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본 연구자가 상담한 가정폭력 남성가해자의 의식을 빈번하게 이야기되는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크게 다섯 가지로 살펴보고, 이에 근거하여 남성가해자에 대한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가정폭력 남성가해자의 폭력에 대한 시각 : 이것도 폭력인가

지금까지 상담현장에서 만난 대부분의 남성가해자들은 공통적으로 ‘나는 폭력을 하지 않았는데 여기 왔다’는 말을 한다. 이때 남성가해자들은 폭력을 흥기를 들고 아내에게 휘둘러 상해를 입히거나 최소한 주먹이나 발로 마구 때려 멍이 들 정도로 본다. 그러므로 그 이하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 자신이 대체 무슨 잘못을 했느냐고 항변한다. 가해자들의 의식 속에서 정서적 폭력, 언어적 폭력, 경미한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은 폭력이 아니다. 어느 부부 사이에서나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상사일 뿐이다. 그래서 보호관찰이나 상담위탁을 받은 것이 기가 막히고 억울하다고 이야기하게 된다. 어디 제대로 한 번 때리고 여기 왔으면 덜 억울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일상적인 부부 사이의 다툼마저 경찰이 나서면 결국 우리나라 모든 남자들이 전과자가 될 것이라고 걱정한다. 결국 남성가해자들은 폭력이란 뼈가 부러지거나 최소한 멍이 들 정도로 상처를 입히는 행위라고 보고 있다. 남성가해자들의 폭력관이 이러하다보니 상담에 대한 거부감 및 분노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는 남성가해자들의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경우 그들이 폭력이라 생각하는 심각한 수준의 폭력을 어머니나 할머니에게 지속적으로 가하고도 아무런 제재나 처벌을 받지 않았던 어린 시절 삶의 경험과도 맥락이 닿아있다. 거기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닌 행위를 한 내가 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인식이 억울함이라는 감정을 나타나게 한다.

그 결과 상담위탁을 받아 상담소에 처음 오는 가정폭력 남성가해자는 거의 예외 없이 분노한다. ‘내가 무엇을 그렇게 죽을죄를 졌다고 법원의 명령을 받아 상담소에 와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 그것이 화가 나는 것이다. 법원에서 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오긴 왔지만 이렇게 강제로 가정 내 부부문제를 상담 받으러 온 사실이 창피하고 너무 화가 나는 것이다. 살다 살다 별 꼴을 다 본다는 말로 이들은 화난 심정을

대변한다. 어떤 남성가해자는 첫 집단상담 시간에 ‘수류탄이 있으면 여기서 그냥 확 터트려버리고 싶다’며 극단적인 분노를 표현하기도 한다. 자신이 한 폭력행위가 법원의 명령까지 받아 상담을 받으러 올 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분노이다. 자신이 한 행동에 비해 지나치게 과한 처분을 받는다는 생각에서 오는 감정이 억울함과 분통터짐인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은 상담자에게 자주 이런 질문을 한다. “선생님, 만약에 이걸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 마디로 법원의 명령을 받았지만 상담을 받기 싫은 것이다.

특히 현 정부에서 가정폭력이 4대악 가운데 첫 번째 악에 해당하다보니 이전 정부들에 비해 상담위탁으로 오는 남성가해자수가 눈에 띄게 많아졌다. 남성가해자수가 많아졌다는 의미는 보다 다양한 사유로 상담위탁 명령을 받는 가해자 수가 늘어났다는 이야기다. 여기에는 예전이면 상담을 받지 않았을 경미한 폭력도 포함된다는 사실도 내포되어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최근 상담현장은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느냐’는 남성가해자들의 시국 성토장이 되곤 한다. 화장지를 던졌는데 신고해서 왔다는 사연에 서부터 아내 명의의 휴대폰을 파손해서 왔다는 사연에 이르기까지 남성가해자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법원의 명령에 동의할 수 없는 사연들이 서로 공유되면서 법원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어 표현하곤 한다. 집단상담 중에 ‘비행’이란 별칭을 가진 한 남성가해자는 비행의 의미가 여기 온 것이 너무 억울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떠나고 싶어 비행기의 앞 두 글자를 뺐다고 설명했다. 그 말에 너도 나도 참가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현했다.

요약하자면 남성가해자들의 상담에 대한 강한 거부감과 분노, 법원과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결국 근본적으로 ‘이것도 폭력인가’라는 의식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2. 가정폭력 남성가해자의 경찰과 판사에 대한 시각 : 분하다 당했다

가정폭력 남성가해자의 첫 번째 분노대상은 경찰이다. 신고한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도 검찰로 넘기더라는 것이 경찰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이다. 신고만 되면 사정이 무엇이건 경찰은 다 넘긴다는 것이다.

경찰은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4대악의 첫 번째 악으로 현 정권에서

천명한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불관용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 결과 경찰은 이제, 해결되었으니 가시라는 말이 실은 검찰에 넘기도록 해결이 되었으니 귀가하라는 말이었다는 데 분노한다. 설령 폭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폭력을 했다고 신고하면 경찰은 무조건 넘긴다. 여기서부터 남성가해자들의 억울함이 시작된다고 이들은 믿고 있다. 그리고 일단 경찰 단계에서 검찰 단계로 넘어가면 순식간에 법원으로 넘어가고 어느 날 느닷없이 법원에 출두하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고 말한다.

또한 가정폭력 남성가해자들은 사법 절차의 마지막 판결 주체인 판사에 대한 분노가 크다. 가장 큰 불만은 가정법원 판사가 너무 짧은 시간만 할애하여 상담위탁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길어야 1-2분에 걸쳐 행위자가 배우자에게 폭력을 하였는지 사실 여부만을 묻고, 상담위탁명령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도대체 이 판사가 우리 부부 사정을 제대로 알고 있기는 하는가하는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결국 폭력의 원인, 부부 사이의 책임의 소재와 정도는 일체 말하지도 듣지도 않고 폭력 사실만 가지고 처분을 내려 어쩔 수 없이 대답은 했지만 속으로 너무 반감이 들더라고 이야기한다.

남성가해자의 법원 판사에 대한 불만을 한 마디로 말하면 자신을 ‘폭력범’으로 보지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폭력에 이르게 된 관계의 맥락, 폭력을 둘러싼 누적된 갈등의 인과고리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폭력’ 여부만을 보고 일방적으로 보호처분을 내린다고 생각한다. 한 남성가해자는 이러한 처분의 부당함을 항의했다가 보호처분 3가지를 받았으며 이는 분명히 과잉처벌을 적용한 것이라고 분해했다. 남성가해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믿는 죄는 실재 존재하지 않는 과잉처벌이다. 자신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에 상관없이 판사 앞에서 대들면 반드시 과잉처벌에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니 몸을 사려야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서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조사관에게 부당함을 항의하자, “아저씨, 이것도 폭력에 해당하는 거 아니죠?”라고 이야기해 기가 막혔다는 사연도 나왔다.

결국 판사는 폭력 사실 하나만을 볼 뿐, 우리 부부를 보지 않는다, 나를 보지 않는다, 고로 나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른다. 그런데 나만 남자라는 이유로 처벌한다. 이것이 판사에 대한 다수 가정폭력 남성가해자의 생각이다.

### 3. 가정폭력 남성가해자의 아내에 대한 시각 : 죄는 여자가 짓고 벌은 남자가

가정폭력 남성가해자들이 하는 농담 가운데 하나는 ‘지금도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그런데 하늘이 요즘 땅값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모른다.’이다. 모든 게 지금은 여자 위주이고, 모두 여자 말만 들어주는 세상이라고 생각한다. 경찰도 무조건 여자가 피해자, 판사도 무조건 여자가 피해자라고만 생각하고, 사회도 항상 남자는 나쁜 놈이라고 여긴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당하는 것은 여자가 아니라 오히려 남자라고 생각한다. 억울하고 불쌍한 것이 지금 남자신세라고 생각한다.

여성 상위 시대에 남편인 자신은 희생자이자 피해자이며, 자신보다 배우자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죄는 여자가 짓고 벌은 남자가 받는다’는 말이 남성가해자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가장 유명한 말이다. 여기에는 폭력을 행사하게 만드는 원인을 아내가 제공하고 정작 그 결과로 폭력을 행사한 남편에 대해 엄격하게 보호처분을 내리는 현실에 대한 강한 분노가 포함되어 있다. 아내가 바람피우는 현장을 보았는데 어느 남편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말로 폭력의 불가피성을 항변하던 어느 남성가해자는 상담자에게 “선생님은 가만히 있겠어요? 말 좀 해봐요.”하고 이야기를 하더니 이내 “그런데도 법은 바람피운 여자는 아무 잘못도 없고, 때린 나만 죽일 놈으로 만드니 이게 제대로 된 법이에요?”하고 항의한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지, 아내에게 어떻게 당했는지를 앞다투어 말하는 격한 성토장이 되곤 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가정폭력 남성가해자들은 사회가 남성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경험을 상담에 이르는 과정 동안 하고나면, 이제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사법 절차에 연루되지 않고 아내에게 당한 것을 갚아줄 것인가를 고민한다. 그런 고민의 산물이 경제적 제재다. 아내에게 일체 돈을 주지 않는 것이다. 뻔히 아내에게 얼마나 돈이 필요한지를 알면서 용돈은 말할 것도 없고 생활비도 주지 않는다. 물론 가정폭력으로 신고 될 만한 언어적 폭력이나 신체적 폭력은 일체 하지 않는다. 기물을 부수지도 않는다. 그래, ‘이제 어떻게 할 건데. 마음대로 한 번 해봐’ 하는 심정으로 돈줄을 틀어막는 방법을 쓴다. 여기에는 ‘그래 너도 한 번 당해 봐라’는 복수심이 깔려 있다.

#### 4. 가정폭력 남성가해자의 자신에 대한 시각 : 나도 나를 모른다

가정폭력 남성가해자는 폭력 자체를 선호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을 취미로 삼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들도 폭력을 사용하는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 이들도 어느 보통 부부들처럼 노년에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지는 노을을 보면서 공원길을 산책하고 싶은 꿈을 꾸는 소박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부부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그저 막연히 결혼하면 잘 살게 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예비 신랑 신부처럼 어쨌든 살다보면 그렇게 잘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살아간다. 사실 그는 그가 누구인지를 모른다.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며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를 진지하게 자신에게 물어보는 삶을 살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린 시절부터 남들 가는 길로 쉬지 않고 달려온 삶이 대부분이다. 성공하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앞도 뒤도 보지 않고 열심히 달려왔지만 정작 그렇게 달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존재인지를 물어보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자신의 욕구와 선호에 대해 무지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욕구와 선호에 대해 무지할 수밖에 없다. 자신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알 수 있겠는가. 그 결과 자신과 아내에 대해 잘 알고 있어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부부관계는 빼적될 수밖에 없다.

#### 5. 가정폭력 남성가해자의 미래 부부관계에 대한 시각 : 아 몰라

“제가 30년 이상 조그마한 회사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하면 물건을 잘 팔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고민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가만 생각해보니 우리 마누라가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껏 30분도 생각한 적이 없더라고요. 만약 제가 우리 회사 생각하는 백분의 일만, 아니 천분의 일만 우리 아내에 대해 생각했더라면 손자 같은 사람이 있는 이 장소에 와 있었을까 하는 후회가 됩니다.” 환갑이 훨씬 넘은 육십 후반의 어느 가정폭력 남성가해자가 10년 전 쯤 집단상담 중반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상담자는 물론 그 자리에 참석한 가해남편들도 도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

이 말을 한 중소기업 회장의 이야기는 한 개인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비단 가정폭력 남성가해자뿐만 아니라 많은 부부들이 서로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무엇을 싫어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 결과 자신이 생각해서 좋은 것은 배우자도 당연히 좋아할 것이라고 오해한다. 그런 반면 자신이 싫어하는 행동을 상대가 하면 왜 그것도 모르고 잘못을 하는 걸까 분노한다. 자신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대해 상대에게 알리지도 않고, 상대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알려고 하지 않은 채 부부라는 이름으로 자식을 낳고 한 집에서 사는 부부가 우리 사회에 많다.

한 번은 욕을 입에 달고 살던 문화였던 군대에서 오래 장교생활을 한 50대 후반의 가정폭력 남성가해자가 자신이 20년을 헛살아왔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 자기 딸이 둘인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너무 이쁘더라. 그래서 큰 딸이 태어나자 말자 “아이고, 고년 이쁘기도 하다”며 ‘년’자를 붙였다고 한다. 그리고 둘째가 태어났을 때는 요년도 이쁘다며 ‘년’자를 붙였단다. 그 뒤 두 딸은 무엇을 할 때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했다. 별 탈 없이 딸들과 잘 지낸다고 생각했는데, 큰 딸이 스무 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인 자기 앞에 두 딸이 무릎을 꿇고 앉더니 정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아버지, 우리도 이제 어른이에요. 더 이상 저희를 부를 때 욕을 하지 마세요. 그 동안 너무 싫었어요.” 그 순간 뒷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다고 한다. 그래서 “그렇게 싫었으면 진작 이야기를 하지 왜 20년이 지난 지금에야 이야기를 하느냐?”고 했더니 둘째 딸이 냉정하게 한마디 하더라고 한다. “아빠가 언제 한 번 물어나 보셨어요?” 그 말에 할 말을 잃은 아버지는 20년을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고백했다.

30년 회사의 물건을 팔기 위해 고민했지만 정작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는 30분도 고민해본 적이 없다는 사장님이나, 딸들에게 딸들이 들을 때마다 너무 싫은 감정이 드는 것을 20년간 몰랐던 아버지나 공통점은 상대의 마음에 대해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무지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현실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곳이 바로 부부사이이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가정폭력 남성가해자들의 경우 아내의 마음을 모르는 경우가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내가 어떤 심정으로 살아왔는지, 아내가 무엇을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고 관심도 없이 살다보니 자기 뜻대로 안된다고 아내에게 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시키는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따르지 않는 아내가 모든 폭력의 원인이라고 귀인하는 특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

가정폭력 남성가해자는 미래에 대해서도 여전히 어떻게 아내와 지내야 할 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흔히 체득하게 되는 것이 있다면 더 이상 힘든 보호처분을 받지는 말아야겠다는 각오다. 그러나 이 각오가 자동적으로 어떻게 부부관계를 평등하고 상호 원하는 것을 충족하도록 해주지는 못한다. 따라서 막막한 심정으로 다시 원래 갈등관계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 IV. 가정폭력 남성가해자 개입방안

가정폭력 남성가해자에 대한 개입은 가장 중요한 목적이 폭력재발 방지로 집약된다. 그런데 폭력은 부부관계의 원인이라기보다는 결과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다면 폭력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폭력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폭력이 나타나게 된 배경으로 부부관계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잘 하는 점은 지속하도록 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의 폭력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은 폭력에 대한 직접적 책임 묻기와 폭력행위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도록 하는데 관심을 가져왔다면 현재 관심은 폭력의 원인이 되는 부부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폭력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데 모아지고 있다. 아래에서는 본 연구자가 지난 18년간 가정폭력 남성가해자를 상담하면서 변화하게 된 관점과 개입방법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 1. 특수에서 일반으로 : 폭력남성이 아니라 일반남성이다

초기 몇 년간 가정폭력 남성가해자에 대한 상담은 폭력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결과부터 말하자면 상담자에게도 남성가해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남성가해자의 반발과 저항은 점점 더 강해졌으며, 상담자는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왜 폭력남성으로 남성가해자를 대했을 때 상담의 효과가 저조했던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검토 결과 폭력남성으로 대했을 때 효과가 낮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간단하고 명확했다. 그를 미워했던 것이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



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으로 보지 않고 폭력으로 보니까 사람이 보이지 않고 죄만 보였다. 남성가해자를 남성이나 사람으로 보지 않고 폭력으로 보았다. 이는 초보 의사가 환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병으로 보는 것과 같은 원리다. 사람은 사랑할 수 있지만 폭력을 사랑할 수는 없다. 따라서 남성가해자를 사람으로 보면 사랑할 수 있지만 폭력으로 보면 사랑할 수 없다.

상담이 사랑을 전하는 전문적 활동이라고 할 때, 사랑이 빠진 상담은 더 이상 상담이라고 할 수 없다. 상담이라는 이름하에 미움과 처벌만을 하는 것은 폭력을 한 사람에게 상담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폭력을 가하는 것에 불과하다. 평등사회 구현을 주장하던 공산주의가 몰락의 길을 가게 된 이유는 공산주의가 자본가 계급을 지독하게 미워했기 때문이다. 기독교와 불교가 수천년간 지속되는 이유는 사랑과 자비로 누구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특수성에서 일반성으로 전환, 특별성에서 보편성으로의 전환은 폭력남편에 대한 초점을 희석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폭력남편에 대한 진정한 변화를 위한 단단한 기반조성이다. 그들은 폭력남편이기 이전에 남편이다. 또한 남편이기 이전에 사람이다. 기존의 접근은 폭력에 모든 초점을 맞추다보니 그들이 남편이며 사람이라는 사실을 간과하는 우를 범하였다. 사람이 가진 문제를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다보니 그 문제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사람이라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하며 동시에 사랑받고 싶어한다. 폭력남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남편이 존재하는 것이며 이 남편이 폭력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일 뿐이다.

## 2. 행위에서 감정으로 : 폭력은 받아줄 수 없어도 감정은 받아줄 수 있다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슬로건을 내 건 시대가 있었다. 국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가급적 많은 범죄자들을 체포하여 강력하게 처벌하는 정책을 펼 것이 범죄와의 전쟁이다. 가정폭력 남성가해자 상담은 범죄와의 전쟁과 한 가지는 같고 다른 한 가지는 다르다.

같은 점은 가정폭력 남성가해자 상담이 저항과의 전쟁이라는 점이다. 남성가해자는 처음 상담위탁을 받아 상담소에 올 때부터 턱 밑까지 분노가 차 있는 사람이다. 강제로 국가에 의해 상담에 왔으며, 몹시 자존심이 상했고, 제대로 자신의 심정과 처

지를 이해받지 못한 남성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화를 내는 일뿐이다. 이런 남편에게 진정하라는 말은 도움이 되지 못한다. 말을 억지로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먹일 수는 없다는 말이 이러한 상황을 가장 잘 이야기해주는 속담이다. 말을 억지로 물가로 끌고 가는 것이 상담소에 가정폭력 남성가해자를 보내는 상담위탁 보호처분이다. 말에게 물을 먹게 하는 것이 상담이다. 그러다보니 상담은 첫 시작부터 강력한 저항과 부딪친다. 가정폭력 남성가해자 상담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이 저항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다보니 가정폭력 남성가해자를 상담하는 사람들은 가정폭력 남성가해자 상담을 저항과의 전쟁이라 부르곤 한다. 노련한 상담자란 저항을 이용할 줄 아는 상담자이며, 미숙한 상담자란 저항에 무너지는 상담자이다.

다른 점은 가정폭력 남성가해자 상담이 범죄와의 전쟁과는 달리 대상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수용한다는 점이다. 저항을 힘으로 눌러서는 저항을 줄이거나 없앨 수 없다. 저항은 이습우화의 나그네의 외투와 같아서 강력한 힘은 사나운 바람이라 더 외투를 감싸 입게 만든다. 저항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은 따스한 햇살이다. 햇살로 나그네 스스로 외투를 벗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다. 가정폭력 남성가해자 상담에서 저항을 강력하게 누르는 것은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방법이다. 어찌되었건 당신은 폭력을 행사한 사람 아니냐는 것이다. 이렇게 폭력을 한 행동에 초점을 맞추면 폭력자와 한 판 전쟁을 불사하게 된다. 어떤 폭력을 행사한 사람도 폭력을 둘러싼 역사와 관계적 맥락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생략된 채 폭력만을 나누라는 사람을 만난다면 심리적으로 한 판 전쟁을 불사하게 된다. 폭력을 한 남편에게 우세한 권력을 준 상담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상담초기에 서툰 상담자들은 예외 없이 폭력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 충동을 느끼며 실제 초점을 맞추어 번번이 낭패를 보곤 한다. 그러나 낭패를 보는 경험, 저항이라는 커다란 파도에 산산이 자신이 부서지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다보면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며 해결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저항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이고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저항을 내리 누르는 것이 아니라 저항을 감싸 안아주는 것이다. 이를 비유를 들어 표현한다면 저항이라는 파도에 맞서는 대신 파도를 타야 한다. 저항을 가져온 원인에 해당하는 폭력행동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저항에 내재한 감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파도타기의 핵심이다. 폭력행동은 받아줄 수 없지만 속상한 마음은 받아줄 수 있다. 상담자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행동이 아니라

감정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놀라운 효과가 상담자에게 기다리고 있다. 거짓말처럼 가정폭력 남성가해자의 저항이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것이다. 누군가 내 속상한 마음을 알고 있다. 그리고 내 속상한 마음을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않고 받아준다는 느낌은 속상한 마음을 알아달라고 더 이상 울부짖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울부짖는 행위를 우리는 저항이라고 부른다.

‘오늘 같이 좋은 봄날 저녁에 상담소에 앉아 있다는 게 웬 말입니까? 남들 다 꽃구경 한다고 난런데 말이죠.’ 하는 한마디 말은 순식간에 저항의지를 무력화시키는 상담자의 첫 멘트가 된다. 우리 속담에 급해도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상담자의 마음속에 한시라도 빨리 폭력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그럴수록 감정을 받아주면서 천천히 천천히 돌아가야 한다. 그것이 폭력 행동을 다룰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저항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상담의 상자도 꺼낼 수가 없다. 여기에 오게 되어 속상하고 억울하고 황망한 마음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감정이다. 이는 당연히 받아줄 수 있고 받아주어야 한다. 상담자가 이 감정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이 세상 누가 받아줄 것인가. 이런 감정을 받아주기 위해 존재하는 전문가가 상담자이다. 예를 들어 생각해보자. 아내에게 베개를 던져 스쳤을 뿐인데 신고되어 재판판을 받고 오게 된 게 너무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저항하는 남성가해자의 경우, 상담자는 마음속으로 ‘그건 명백한 폭력’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입 밖으로 내어 ‘선생님, 베개를 던지는 건 법적으로도 그렇고, 당하는 아내 입장에서는 명백한 폭력이거든요.’라고 한다면 저항을 힘으로 내려누르는 선택을 상담자가 한 것이다. 그러나 ‘아, 베개에 맞은 것도 아닌데 오신 거라고요? 세상에!’라고 한다면 이는 적극적으로 저항을 감싸 안는 선택을 상담자가 한 것이다. 어떤 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 남성의 저항의 향배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 3. 특별에서 보편으로 : 폭력문제 해결이 아니라 부부문제 해결이다

가정폭력도 결국 부부문제의 원만하지 못한 해결로 요약된다. 부부폭력의 근거이자 배경은 부부문제다. 한강 물고기의 등이 굽었다고 등뼈를 바르게 하는 노력만 해서는 다시 등이 굽게 되어 있다. 한강의 오염된 물을 정화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물고기의 등을 펴게 하는 방법이다. 마찬가지로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성가해자의 폭력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배경이 된 부부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따라서 가정폭력 남성가해자 상담은 폭력상담이 아니라 부부상담이 되어야 한다.

일반 부부상담과 가정폭력 남성가해자의 부부상담의 차이가 있다면 가정폭력 남성가해자 부부상담은 항상 폭력을 염두에 둔 부부상담이라는 점 하나이다. 넓게 본다면 일반 부부상담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부부간에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불화와 갈등의 씨앗을 살펴보는 것은 부부상담을 하는 상담자가 해야 할 첫 번째 임무다. ‘우리 부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은 ‘왜 폭력을 해서 여기 오게 되었습니까?’라는 특별한 영역을 부부 보편의 영역으로 전환하는 질문이다. 부부문제의 해결을 통해 폭력문제의 해결을 모색하는 방법을 상담의 방법으로 선택하게 되면 상담자의 전문적 역량이 필수사항이 된다. 부부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이슈에 대해 다룰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폭력과 관련된 주제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의 거짓말, 종교, 고부갈등, 외도, 도박, 알코올 등의 다양하고 폭넓은 주제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 그 결과 가정폭력 남성가해자 상담의 초점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를 수밖에 없다. 이를 군대용어로 표현하자면 가정폭력 남성가해자 상담은 국민체조가 아니라 각개전투일 수밖에 없다. 각자의 상황과 처지를 살펴보고, 부부문제를 정밀하게 진단한 후 이를 해결할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는 과정이 가정폭력 남성가해자 상담인 것이다.

#### 4. 현재에서 과거로 : 과거가 모여 현재가 된 것이다

대전에서 한 사람이 부산으로 가는 기차를 탔다. 곁에 있던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고 묻자 이 사람은 서울로 간다고 했다. 곁에 있던 사람이 “아니, 이 열차는 남쪽으로 가는 열차인데 서울로 가려면 북쪽으로 가는 걸 타셨어야죠.”하고 말하자 그 사람이 대답했다. “저는 젊으니 부지런히 가면 언젠가 서울에 도착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예화에서 의미하는 것은 아무리 목적이 옳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행하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다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정폭력 남성가해자들은 어느 날 갑자기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이 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남쪽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려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한 사람이다.

가정폭력 남성가해자들을 상담하다보면 남성가해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부

부관계에 대한 무지와 부부관계기술의 부족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상담현장에서 가장 자주 발견하게 되는 원인은 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성장과정에서 비폭력적이고 평화롭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다는 것이다. 폭력의 대물림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재는 그렇지 않다. 폭력을 자신의 아버지도 어머니에게 쓴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지만 상담을 통해 들어보면 3명 가운데 1명 꼴에 그친다. 나머지 두 경우에는 폭력이 전혀 없었다는 대답을 듣게 된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사정이 다르다. 신체적 폭력은 없었지만 정서적 언어적 폭력은 심한 가정에서 자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가정폭력 남성가해자들은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는 건강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결과 자신이 가정을 이룬 뒤에도 어떻게 해야 부부가 화목해지고, 부모자녀가 원만하게 살 수 있는지 원리도 방법도 모르는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하여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아내를 대하고 자녀에게 행동한다. 상대의 반응이 시원찮으면 내 방법이 잘못된 건 아닐까 의심해보아야 하는데 자기 마음을 몰라주고 말을 듣지 않는다고 오히려 상대를 원망하고 질책한다. 그러면 관계는 더 악화되고 갈등이 심화된다. 이 경우 가정폭력 남성가해자들은 상대의 잘못을 부부불화의 주요한 원인으로 돌린다. 관계는 원리이고 기술이다. 직접 좋은 관계를 체험할 때 비로소 친밀한 관계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 그런 면에서 부부 관계를 잘 하는 것은 수영을 배우고 익숙해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서점에 나와 있는 수영교본을 아무리 열심히 본다고 해도 막상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려고 하면 물에 뜨는 것조차 쉽지 않다. 실제로 해보지 않은 머리 속 지식으로는 수영을 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직접 가족관계 속에서 관계 맺는 법을 배우고 익히지 못한 가정남성가해자들은 막상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 머리 속으로는 화목하고 행복한 부부생활을 생각해도 제대로 관계를 맺기는 어렵다. 경험의 세계를 뛰어넘기 때문이다. 가정폭력 남성가해자들과 상담을 하면서 자세히 보면 이들이 아내와 관계를 맺는 방법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는 법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다르게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스스로를 생각해도 존중받지 못한 불쌍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나 형제로부터 너는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부모는 서로 먹고 살기 바쁘고 또 싸

우기 바빠서 이런 이야기를 해줄 여가가 없다. 그래서 별로 소중하지 않은 사람으로 자신을 규정하게 된다. 나이가 들어도 이 느낌은 고스란히 남아 각박한 세상살이에서 자신을 밀어 넣으며 생활하게 된다. 한 마디로 스스로 불쌍한 존재가 되어 가까운 가족마저 불쌍한 가족으로 만들며 살아가는 것이다.

상담현장에서 가정폭력 남성가해자를 상담할 경우 아내의 심정을 읽고 배려하지 못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작업에 앞서 가정폭력 남성가해자 자신의 삶과 심정에 대해 먼저 돌아보게 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이를 통해 남성가해자들은 자신이 소중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중하게 여겨지지 못했고, 자신 또한 자신을 존중하며 살지 못했다는 자각을 하게 된다. 자신을 이전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 결과가 상대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 행동으로 나타난 것을 깨닫게 되면 남성가해자의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큰 변화가 나타나곤 한다. 내가 소중하므로 남이 소중하다는 깨달음, 소중한 나를 소중하게 다루어야 하므로 소중한 배우자와 자녀들도 소중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깨침은 근본적으로 남성가해자의 마음가짐을 성숙시키는 계기로 작용한다. 결국 좋은 사람이 좋은 배우자가 되고 좋은 부모가 되는 원리가 가정폭력 남성가해자 상담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현재의 폭력문제는 과거의 상처문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과거가 모여 현재가 된 것이다. 과거의 상처와 후유증을 잘 치료해주어야 현재의 폭력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리게 된다.

## 5. 과거에서 미래로 : 불행보다 행복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

성공적으로 상담을 마무리하는 가정폭력 남성가해자들이 빠짐없이 이야기하는 두 가지 성공요인이 있다. 그것은 ‘되짚어보기’와 ‘방향잡기’다. 되짚어본다는 것은 현재 우리 부부의 폭력문제를 야기하게 된 과거 부부문제에 대해 하나하나 제대로 살펴보는 것을 말한다. 부부문제를 엉킨 실타래로 비유한다면, 대체 언제 어디서부터 실타래가 얽히기 시작한 것일까를 상담자 및 다른 남성가해자들과 함께 찬찬히 살펴보는 것이 되짚어보기다.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으로 말하자면 내가 어떤 수를 놓고 상대가 어떤 수를 놓았는지를 복기하는 것이 되짚어보는 행위이다. 되짚어보는 것은 관계에 대한 성찰이며, 관계 속 자신의 행위와 그 행위를 일으킨 감정, 생각에 대한 성찰이

다. 어떤 수를 잘 못 놓았는가. 어디서 실수를 했는가를 살펴보게 되면 마침내 결정적 잘못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 이를 해결의 실마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다. 엉킨 실타래의 실마리를 찾는 일을 방향잡기라고 할 수 있다. 방향잡기 후의 행동은 방향을 모를 때보다 훨씬 쉽다. 그 방향으로 움직이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방향을 올바르게 잡았다 해도 이를 실천하고 유지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 않던 짓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담을 하다보면 재수생, 삼수생이라는 별명을 가진 가정폭력 남성가해자들이 있다. 가정폭력으로 신고되어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을 두 번째로 받으면 재수생, 세 번 받으면 삼수생으로 불린다. “이젠 앞으로 상담선생님과 그만 보아야지요.” 하고 이야기 한 지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오는 남성가해자들을 만날 때가 있다. 그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는 “여기서 배운 약발이 몇 달 못가더라.”다. 즉, 상담을 받는 기간에는 자신의 부부의 문제를 고민도 하고 자신의 책임과 잘못에 대해 새롭게 깨닫기도 하며 이를 바탕으로 노력을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의 반응도 예전과 같고 자신도 근본적으로는 갈등 해결방법이 변하지 않아 도돌이표처럼 폭력적 사건이 재발한다는 것이다. 이런 재수생과 삼수생을 보게 되면 드는 생각이 있다. 그것은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던 습관, 하던 행동 패턴은 잠시 깨달았다고 해서 완전히 바뀌기는 어렵다. 습관이 바뀌려면 절실한 마음으로 상당히 긴 시간동안 새로운 습관을 시도하고 익숙해지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그 사이에 예전과 동일한 자극이 오면 자신도 모르게 그동안 익숙해졌던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대응을 하게 된다.

재수생 삼수생이 생기는 경우,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폭력남성가해자들이 완전한 변화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대의 변화에 대한 기대치를 최소로 낮추는 것이 좋다. 상대인 배우자는 상담을 받지도 않았고, 변화할 동기도 크지 않다. 그런 배우자가 서툴고 어색한 변화를 보이는 가정폭력 남성가해자에게 크게 감동하고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기는 쉽지 않다. 이런 경우 가정폭력행위자는 자신은 변화했는데 상대가 전혀 변화하지 않아 우리 부부는 어떻게 해도 안 된다는 절망감을 느낀다. 그러나 자신의 변화가 완전하지 않고 상대 배우자의 눈에 차지 않았다는 것은 잘 생각하지 못한다. 이 또한 자신의 변화의 정도, 속도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면, 보다 성숙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런데 재수생, 삼수생의 경우와는 완전히 다른 이유로 상담소에 다시 오는 가정폭력 남성가해자들이 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계속해서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이다. 6개월 보호처분 기간이 끝났지만 자신의 변화는 끝나지 않았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진정한 변화와 성숙을 위해 지속적으로 자발적으로 상담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희망적인 것은 이런 행위자들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6개월 보호처분 기간이 끝난 뒤 약 1년 가까이 상담에 자발적으로 왔던 한 행위자는 다른 행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아내에게 조그마한 무례를 범해도 잘못을 묻고 사과를 요구해야 할 우리들이 스스로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내를 탓하기 전에 내 부족한 점을 여기서 깨닫고 아내에게 다가서면 아내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저처럼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상담자가 한 어떤 이야기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집단성원들에게 미쳤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하는 진솔한 경험과 체험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상담을 다시 찾아오는 행위자들은 상담초기 남성가해자들의 불만과 분노를 바라보며 자신도 예전에 다르지 않았음을 이해한다. 그리고 그 마음을 그대로 전해줌으로써 처음 상담에 참여하는 남성가해자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게 한다. 또한 스스로 이들의 좋은 롤모델이 되고 희망이 되는 긍정적인 기여를 하게 된다. 상담자도 이런 자발적 지속자들로부터 큰 위안과 힘을 얻게 된다. 이런 가정폭력 남성가해자들은 처음 오는 행위자들에게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동료상담자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되짚어보기와 방향잡기 그리고 지속적인 실천노력은 어두운 과거를 밝은 미래로 바꿀 수 있다. 불행보다 행복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

## V. 가정폭력 남성가해자 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이상에서 국내외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상담현장에서 바라본 가정폭력 남성가해자의 심리특성과 이에 기반한 개입방안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가정폭력 남성가해자에 대한 올바른 상담은 부부관계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폭력의 감소 및 재발방지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 가정폭력 남성가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상담을 하기 위해 전국 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그 효과성이 인정되어 매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예산지원도 받고 있다. 하지만 보다 효과적인 상담이 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어 보인다.

첫째, 상담위탁 처분을 내리는 가정법원의 경우 상담위탁을 받을 상담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행위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6개월 상담위탁이라는 이야기만 듣고 온 남성가해자들은 실제로 그것이 의미하는 바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상담소에서 다시 개인상담, 집단상담, 캠프, 부부교육, 음주교육 등이 있다고 하면 강한 저항을 보인다. 따라서 상담위탁기관의 상담위탁 처분 시행시 실시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지를 A4 한 장에라도 보기 좋게 인쇄하여 가정법원에서 처분을 내리는 시점에서 배부해주고 한 번 읽어보라고만 해도 상담위탁의 효과는 적지 않게 상승할 것이다.

둘째 가정법원에서 상담위탁 처분을 내릴 때 부부를 함께 상담받도록 명령을 내리거나 최소한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부부문제는 부부 각자에게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인 만큼 폭력을 둘러싼 정황, 이유, 맥락 등을 부부를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상담할 때 가장 효과성이 높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상담위탁 처분은 남성가해자 뿐만 아니라 부부가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담의 효과를 높여 부부관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를 할 것이다.

이러한 가정법원과 상담위탁기관의 노력이 병행될 때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가정의 부부문제가 보다 빨리 그리고 보다 많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는 보다 평화롭고 화목한 가정이 많은 행복한 사회로 구체화되고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은희·이현림 (2008).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행위자 교정 집단상담이 가해자의 폭력행동, 공격성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3권 제2호, 85-102.
- 김미애 (2006). '가정폭력 유발요인과 폭력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조절변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5권 제4호, 587-611.
- 김재엽·최지현·송아영 (2011). '아내폭력 재폭력 양상과 부부관계의 관련성 연구: 가정폭력 행위자 치료프로그램 장기효과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6권 제3호, 273-287.
- 김재엽 (2011). '가정폭력 행위자 치료 프로그램의 장기효과 분석', 한국연구재단.
- 김재엽·최권호·장용언 (2011). '가정폭력가해자 치료프로그램 이수 이후 가해 남편의 재폭력과 피해 여성의 정신건강실태', 『피해자학연구』, 제19권 제2호, 5-31.
- 여은경·박부진 (2011). '가정폭력 가해남성을 위한 심상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6권 제1호, 183-210.
- 이서원 (2003). '가정폭력 가해자 집단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이은주 (2004). '가정폭력 행위자의 폭력행동 중단을 위한 한국적 집단 개입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사회복지학』, 제14권, 295 -327.
- Babcock, J. C., & Steiner, R. (1999). The relationship between treatment, incarceration, and recidivism of battering: A program evaluation of Seattle's coordinated community response to domestic violenc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3, 46-59.
- Gondolf, E. W. (1999). A comparison of four batterer intervention systems: Do court referral, program length, and services matter?,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4, 41-61.
- Hendricks, B., Wernet, T., Shipway, L., & Turinetti, G. J. (2006). Recidivism among spousal abuser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1(6), 703-716.
- Murphy, C. M., Musser, P. H., & Marton, K. I. (1998). Coordinated community intervention for domestic abusers: Intervention system involvement and criminal recidivism, *Journal of Family Violence*, 13, 263-284.
- Shepard, M. F., Falk, D. R., & Elliot, B. A. (2002). Enhancing coordinated community responses to reduce recidivism in cases of domestic violenc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7, 551-569.



# 방어와 생존을 위해 행위자가 된 피해여성들

장 희 숙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방어와 생존을 위해 행위자가 된 피해여성들



장희숙 교수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최근 들어 상담명령을 받고 가해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음
- 이는 아내와 남편이 동시에 상대방을 신고,고소하는 사례가 많아졌고, 검찰,법원이 부부에게 같은 처분을 내리거나 상담을 받도록 권유하고 있어서임

- 외국의 경우, 의무체포명령 제도를 실행하면서 체포되거나 구속되는 여성들이 급격하게 증가함
- 이에 폭력을 사용하는 여성들에 대한 이해와 개입 모색이 시급해짐
- 그러나 여전히 이들이 누구인지(행위자 vs. 피해자) 어떤 개입을 해야 하는지 불분명함

- 여성들도 남성들만큼 폭력적인가?  
VS.
- 가해여성들 대다수가 피해자들인가?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vs.  
임상 표본 연구들

## 폭력의 동기

- 남성 – 통제, 억압, 징벌
- 여성 – 방어, 보복, 분노

## 폭력의 영향

-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심한 상해를 입고 있으며, 더 높은 수준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 우울, 분노, 불안, 외상증상을 나타냄

부부폭력으로 검찰법원의 처분을 받거나 가해자프로그램에 참여한 가해여성 79명, 가해남성 145명, 쉼터에 거주하거나 피해자 상담을 받은 피해여성 123명

- 이 연구에 참여한 가해여성들 모두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폭력, 심리정서적 폭력의 피해경험을 갖고 있음
- 외국의 경우(약 9%)와 다르게, 우리나라 여성들 중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례는 없음

## 폭력 피해에 대한 집단비교

-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은 더 빈번하게 심각한 신체적 폭력, 경미한 신체적 폭력, 심리정서적 폭력을 당함
- 훨씬 더 심한 상해를 입음

## 폭력 피해에 대한 집단비교

- 피해여성들보다 가해여성들이 경미한 신체적 폭력과 심리정서적 폭력의 피해가 덜함
- 그러나 심각한 신체적 폭력의 피해와 상해 정도에서는 두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가해남성과의 비교>

- 알코올 의존과 폭력허용도가 매우 낮음
- 트라우마 증상을 더 많이 갖고 있음
- 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음

## 폭력을 사용하는 여성들의 특성

- ### <피해여성과의 비교>

- 두려움 수준이 낮고, 성폭력 피해 경험이 적음
- 가정폭력사건으로 인한 처벌 경험 많음

- 이와 같은 결과들은 또 다른 연구 (장희숙 외, 2015)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남

## 폭력을 행사하는 여성의 유형

<장희숙, 2016년 연구>

### 조사대상자

부부폭력으로 처분을 받거나 가해자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성 67명

## 분석방법

- 가해여성 유형의 대표적 연구들이 시도한 분석방법을 동일하게 실행하여 외국문헌들이 밝힌 유형이 한국여성들에게도 적용되는지 검증
  - 여성의 폭력행위와 남편으로부터의 폭력 피해를 심각한 신체폭력, 경미한 신체폭력, 억압적 통제, 정서적 폭력의 4형태로 구분하여 비교

## 연구결과

- 외국(약 12%)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신체적 폭력과 통제의 두 형태 폭력 모두를 남편보다 더 사용한 사례는 없었음
- 남편이 아내보다 심각한 신체적 폭력과 억압적 통제를 더 많이 행사한 경우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함  
(참조: 국외 34%-59% vs. 국내 78%)

## 연구결과

- 세 유형이 도출됨
  - 피해자형(78%): 남편이 신체적 폭력과 통제를 더 많이 행사
  - 공격-대응형(12%): 부부의 억압적 통제 수치는 비슷하나 아내가 남편보다 신체폭력을 더 많이 행사
  - 통제-대응형(10%): 남편이 신체폭력을 월등하게 많이 행사하고 아내는 억압적 통제를 더 사용

## 연구결과

- 피해자형: 억압적 통제, 정서적 폭력의 피해가 가장 크고, 배우자의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큼
- 공격-대응형: 신체적 폭력의 피해가 가장 적고, 남편에게만 폭력을 행사하며, 어머니의 폭력을 자주 목격함
- 통제-대응형: 신체적 폭력의 피해가 가장 큼

## 생존폭력 여성들의 체험



-절벽 끝 여성들의 맞섬-

- 폭력을 행사한 맥락과 폭력사건에 대한 여성 개인들의 경험은 어떠한가?

## 조사대상자

- 폭력행사로 보호처분을 받고 2015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진행하는 가해자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성 4명
    - 30대 1명, 40대 1명, 50대 1명, 60대 1명
    - 중졸 1명, 고졸 2명, 대학중퇴 1명
- <장희숙 외, 2015>

## 연구방법

- 심층면접 진행
- **Kleining**과 **Witt(2000)**의 질적 발견적 연구를 적용하여 생존폭력 여성의 전체적인 체험패턴을 살펴봄

## 핵심구조와 공동패턴

- 핵심구조는 폭력행위를 중심으로 한 연구 참여자의 생존폭력으로 나타남
- (공동패턴이 함축하는 의미) 생존폭력은 가해자로서의 폭력이 아니라 피해자로서의 저항임

## 배경상황

- 배우자 선택
- 일상화된 부부싸움



### 폭력을 행사한 맥락

- 원가족의 폭력
- 힘들게 하는 남편
- 남편의 폭력
- 생존을 위한 여성의 폭력

### 생존폭력

- 네 가지 유형
  - 분노 발산형
  - 보복형
  - 과거 차단형
  - 생존형

### 폭력행동 이후의 체험

- 경찰신고
- 보호처분
- 정신적 어려움
- 상담
- 이혼선택

### 원가족의 폭력: 불행의 근원-친정

- A는 하루라도 빨리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매일같이 맞고 사는 어머니를 보면서 그렇게 사는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다. 참다 못한 어머니도 아버지의 폭력에 대응하는 모습을 취하기도 했으나 그럴수록 아버지의 폭력은 강도가 세졌다. 어머니는 40대 후반부터 심한 우울증으로 지금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 원가족의 폭력: 불행의 근원-친정

- C는 성인이 될 때까지 이모가 친어머니인 줄 알았다. 친어머니는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어린 딸만 데리고 집을 나왔다. 아버지 밑에 남겨졌던 오빠는 아버지의 알코올 문제로 고모에게 갔다 보육원에 맡겨졌다. C 역시 어머니가 키우지 못하고 이모에게 맡겨졌다. 이후 어머니는 재혼했으나 다시 이혼했고 부는 일찍 사망했다. 성인이 되어 친어머니를 만났으나 낯설기만 하다. 따뜻한 이모 밑에서 성장했음에도, C의 삶은 친부모의 삶과 많은 부분에서 유사하다.

### 원가족의 폭력: 불행의 근원-친정

- D는 아버지가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이었다고 기억한다. 아버지는 밖에서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집에 돌아오면 나쁜 사람이 되었고 유독 어머니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했다. 그런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끝까지 마음의 상처를 주고 떠났다.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이다. D는 자신의 삶에서 아버지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 원가족의 폭력: 폭력의 개연성-시댁

- C의 남편은 이혼가정에서 어렵게 성장했다. 시아버지는 술을 마시고 아내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남편은 어린 시절 그러한 폭력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 부모의 이혼 후 남편은 시아버지 밑에서 동생과 함께 생활했는데, 시아버지는 자식들을 챙기지 않고 밖으로만 돌아다니고 한다. 중학생 때 시어머니가 찾아와 남편을 데려갈 때까지 남편은 열악한 상황에서 어린 동생을 돌보며 힘든 시간을 버텼다. 이후 남편은 시아버지와 연락을 끊고 시어머니 밑에서 살았다. C는 남편의 모습에서 폭력적인 시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안타깝다.

### 원가족의 폭력: 폭력의 개연성-시댁

- D의 시아버지는 평생 아내를 구타했고 그런 시어머니에 대해 남편은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남편 역시 시아버지의 폭력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시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남편도 남들에게는 잘하지만 아내를 집요하게 괴롭혔다. 시어머니는 평생을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왔으면서도 며느리의 입장 보다는 아들을 두둔하는데 급급했다.

### 배우자 선택: 아버지와 다른 사람을 찾음

- A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폭력적이었던 친정아버지와 다른 사람을 찾았다. 같은 직장에서 만난 남편은 자상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A는 남편을 통해 어린 시절 아버지가 채워주지 못한 심리적 결핍을 채울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이제 대학교를 졸업한 어린 나이에 숙고의 시간도 가지지 못한 채 집을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만을 안고 가정을 꾸렸다.

### 배우자 선택: 아버지와 다른 사람을 찾음

- D 역시 폭력적인 친정아버지와 다른 사람을 찾았다. 남편은 친정아버지와 달리 가정을 중요시하고 대화도 잘 되는 사람이었다. 결혼생활 초기에는 힘든 일이 있어도 평생을 폭력에 시달려온 친정어머니 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하며 이겨낼 수 있었다. 남편과 함께 운영한 학원에서 가정 폭력 피해자들 이야기를 들으며 내 남편은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했다.

### 일상화된 부부싸움

- A의 남편은 알코올 중독 상태에 있다. 결혼 1년까지는 술을 좋아하긴 하지만 자상하고 따뜻한 남편이었다. 시간이 갈수록 남편의 알코올 문제는 심각해졌고 일도 그만두고 집에서 술에 취해있는 날들이 늘어갔다. A는 자신이 밖에서 일하고 집안 살림까지 하는 것도 벅찬데 매일 술에 취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남편의 무기력한 모습을 그냥 지나치기 힘들다. A는 남편의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화가 치밀어 지적을 하게 되고 이는 싸움으로 번지게 된다.

### 일상화된 부부싸움

- A의 남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밤에 잠자리를 요구하고 몸과 마음이 다 지친 A는 남편을 받아들이지 않음이다. 아내의 잠자리 거부를 자신에 대한 무시로 받아들인 남편은 아내를 의심하고 공격성을 표출했다.

### 일상화된 부부싸움

- D의 남편은 현재의 가족이 아니라 시댁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한다. 남편은 시댁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가족들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시댁으로 달려간다. 남편은 아내와 한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문제 삼으면 남편은 아내를 이해심이 부족한 사람으로 몰아붙였다.

### 일상화된 부부싸움

- D의 남편도 부부싸움 이후에 잠자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부부싸움을 한 후에 잠자리를 갖는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고, 그래서 잠자리를 거부하면 남편은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다.

### 힘들게 하는 남편

- A의 남편은 부모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데다 중학교 시절부터 부모와 떨어져 생활했다. 결혼 후 아내로부터 자신의 결핍된 사랑을 채우려 했으나, A 역시 그렇게 살가운 사람이 아니었다. 남편은 특히 아내가 잠자리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상처를 많이 받고 아내를 탓하며 술을 마신다. 술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가장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회피하고 아내를 의심하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졌다.

### 힘들게 하는 남편

- B의 남편은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혼자서 한다. 아내와 의논을 하거나 아내의 뜻에 따라 결정하는 일은 거의 없다. 제주도에 산다는 것을 전제로 결혼했으나 얼마 후 남편은 아내와 상의 없이 아이들 문제로 서울에 가야 한다고 입장을 바꾼다. 돈과 관련해서도 최소한의 생활비 외에는 아내에게 주지 않으며, 아내가 조금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그마저도 중단했다. 남편은 아내의 말 한마디에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아내의 잘못을 기억해두었다가 현재 발생한 문제를 언급할 때 회상하며 함께 거론했다.

### 힘들게 하는 남편

- C와 D의 남편은 술을 마시면 이성을 잃고 감정조절을 하지 못한다. 술을 마시면, C의 남편은 시비를 걸고, D의 남편은 평소 억압하고 있는 자신의 왜곡된 내면을 적나라하게 노출시킨다.

### 남편의 폭력

- A의 남편은 술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아내와 갈등이 잦아졌고, 아내가 남편과 함께 잠자리를 갖는 것을 거부하자 폭력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남편이 술을 먹고 교통사고를 낸 것도 부부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었다. 첫 폭력이 있은 후에는 사과를 하고 아내도 없던 일로 했지만, 남편의 폭력은 계속되었다.

## 남편의 폭력

- B의 남편은 자녀문제로 시비가 붙으면 아내를 때렸다. 자신의 친 자식들과 관련해서는 재혼한 아내가 접근할 수 없는 영역으로 삼 정하고 자신이 정한 일종의 선을 아내가 넘어선다고 판단될 때에는 여지없이 폭력을 행사했다.

## 남편의 폭력

- 결혼 1년 후 C의 남편은 결혼 전과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틈만 나면 아내에게 시비(아내의 학창시절 이성과의 만남, 아이를 친 아빠가 키우지 않는 것, 도움이 되지 못하는 친정에 대한 불만)를 걸고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일회적인 것이라 생각했지만 남편의 폭력은 멈추지 않았다. 특히 술만 마시면 남편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아내를 괴롭혔다.

## 남편의 폭력

- D의 남편은 아내가 사회활동을하기로 결정하면서부터 폭력성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남편은 아내가 학원운영에 참여하면서 조절능력을 상실하고 거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아내가 남편보다 학원운영에 탁월한 능력을 보이고 학원 관련 일들로 귀가가 늦어지면 더 무자비한 폭력을 사용했다. 남편의 폭력에는 열등감과 아내에 대한 의심이 함께 섞여 있었다.

## 생존을 위한 여성의 폭력

- 4 유형
  - 분노 발산형
  - 보복형
  - 과거 차단형
  - 생존형

## 분노 발산형

- 남편의 폭력이 지속되고 본인 역시 화가 쌓이면서 A의 억압된 감정이 폭력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자신의 응축된 화가 터져 나오면 남편도 강하게 반응하면서 A와 남편은 이성을 잃고 치고 받았다. 그렇게 한 번씩 몸싸움을 하고 나면 왠지 가슴이 후련했다. A는 소리를 지르고 몸싸움을 해야 오랜 세월 공작은 화가 해소될 것 같았다.

## 보복형

- B는 남편의 폭력에 일방적으로 당하다가 보복의 수단으로 대응폭력을 사용했다. 그러한 응징에는 자신이 당한 억울함과 상대방도 아픔을 느껴보라는 마음이 겹쳐 있다. B의 대응폭력에는 남편이 자신에게 함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방어적 측면과 자신도 더 이상 맞고만 살지 않겠다는 비장한 각오가 내포되어 있다.

## 과거 차단형

- C는 믿고 의지하던 남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폭력으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남편의 폭력은 계속되었고 반복적인 양상을 보였다. 아내의 처음 대응폭력은 방어적 차원에서 시작되었으나 점차 자신이 참고 지냈던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동기가 바뀐다.

## 과거 차단형

- 남편은 자신이 만만한 존재로 보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더 심한 폭력을 사용했다. 아이를 친정에 맡긴 후에 C는 본격적으로 공격성을 표출했고 자신이 점차 폭력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감지한다. C는 폭력으로 자신을 표현하는데 익숙해지면서 참고 견디던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느낀다.

## 생존형

- D는 남편보다 뛰어난 사업수완을 보였고, 사회적 활동도 더 활발했다. 점차 남편은 학원 일을 아내에게 맡기고 시댁 일을 거들거나 심지어 시골로 내려가 농사를 짓기도 했다. 평소에도 아내에 대해 의심이 많았던 남편은 본사 관계자들과 아내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판단하고 아내가 늦게 들어온 날 폭력을 행사했다.

## 생존형

- D는 남편을 이해하려고 했으나 그 정도가 너무 심해 맞대응 할 수밖에 없었다. D의 대응은 거의 생존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 었다. 남편의 폭력을 말리는 아이를 때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내도 격분하여 남편에게 함께 욕을 하고 맞서게 된다. 힘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D는 대응 이후 남편의 심한 폭력을 당한다.

## 경찰신고

- B는 자신이 신고했을 때 경찰로부터 아무 도움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남편의 신고를 접하면서 이제는 경찰소고를 대처방법으로 활용해야겠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폭력 이후 경찰소고를 했으나 진단서가 없어 유야무야 되었다. 이후 남편의 폭력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소고를 포함한 적극적 대응의지를 다지게 되었다.

## 경찰신고

- 급박한 위기상황에서 A가 도움을 청할 곳은 경찰밖에 없었다. 첫 번째는 남편의 폭력이 심한 상황에서 아이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는데, 경찰들이 왔으나 당장의 폭력을 중단시키는 것 외에는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 두 번째는 남편에게 폭력을 당하는 상황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 A가 직접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아내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남편이 진술하여, 쌍방 가해자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 이런 처벌을 받게 된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 경찰신고

- C에게도 유일한 도움요청 수단은 경찰신고이었다. 경찰신고를 해도 별 도움을 받지 못하자 C는 궁리 끝에 경찰신고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생각해냈다. 집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다툼이 있을 때 훨씬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남편이 밖에서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릴 때 신고를 했다. 보호처분을 받은 본사건은 집에서 벌어진 일이라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신고를 했음에도 경찰의 대응이 이전과 사뭇 달라졌다고 한다.

## 보호처분에 대한 양가감정

- B는 처분에 대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언급하고 있다. 긍정적인 면은 앞으로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부정적인 면은 결혼생활에 대한 자괴감이 든 것이다. 처분 이후 남편이 전보다 아내를 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B는 현재의 결혼생활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 계속 의문이 든다.

## 보호처분에 대한 양가감정

- C에게 신고 이후의 결과는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심한 폭력을 당한 후 경찰신고를 했는데 쌍방처분을 받았다. 보호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은 부부 모두에게 놀랄만한 일이었고 남편으로 하여금 폭력을 자제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 억울하지만 도움이 된 보호처분

- B는 정작 상담과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은 남편인데 자신이 받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억울했지만 참고 6개월간 처분을 받았다. 그래도 상담을 통해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 억울하지만 도움이 된 보호처분

- C는 보호처분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폭력으로 처분을 받게 되면 하는 일에도 지장이 있고 상황이 복잡해진다는 것을 부부 모두 알게 된 것이다. 술을 마시면 둘 다 감정이 격해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술을 줄이기 시작했으며, 각자 상담 받은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대화방식이 달라졌다. 이러한 변화는 처분을 받지 않았다면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 아내가 겪은 정신적 어려움

- A는 알코올 중독인 남편을 매일 지켜보면서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가 쌓여갔다. 혼자 일을 해서 네 식구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소득이 불안정할 때는 절벽 끝에 선 것 같은 불안을 겪기도 했다. 아이들이 옆에 있을 때는 그래도 견딜 수 있었지만, 둘째가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고, 큰 아들마저 군 입대로 집을 떠나게 되면서 심한 우울증이 찾아왔다.

## 아내가 겪은 정신적 어려움

-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극심한 자살충동에 사로잡히기도 했고 목을 매고 자살시도를 하기도 했다. A는 우울증 약물치료를 하고 기숙사에 있는 아이를 집에 불러들인 후에야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 아내가 겪은 정신적 어려움

- B는 고소에 대한 충격으로 우울증이 생겼고 그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처음에는 충격이 너무 심해 며칠간 입원도 했었다. B는 중증 정신질환자처럼 허공을 향해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거리를 배회하다 찜질 방에 가서 밤새 울기도 했다. 한동안 약물치료를 의존하다가 현재는 약을 중단하고 산에 다니면서 우울증을 극복하려고 노력 중이다.

## 아내가 겪은 정신적 어려움

- C는 술을 자신의 유일한 위안으로 삼았다. 첫 번째 결혼 실패 후부터 술을 즐겨 마셨고 딱히 마음 둘 데도 없어 술에 많이 의지했다. 평소에는 남편에게 맞서기 어렵지만 술을 마시면 남편의 공격적 언행에 같이 대응할 수 있었다. 자신의 처지가 남에게 드러낼 수 없는 형편이 되자 혼자 술을 마시는 일이 잦아졌고 그렇게 술을 마시고 평평 우는 것으로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려 했다.

## 상 담

- A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상담에 대한 욕구가 없다고 한다.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상담도 고려하겠지만 남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더 이상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다. 오히려 이혼 관련법적 자문이나 도움이 더 절실하다고 언급한다. 지금까지는 힘들 때 친구들에게 일상적인 하소연을 하는 게 전부였고 딱히 상담기관을 찾을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 동안 남편에게 구타를 당한 일은 누구에게도 솔직하게 털어놓기 어려운 문제였다.

## 상 담

- D는 상담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 상담경험을 토대로 현실적인 상담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D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가능하면 같은 연배끼리 자조집단을 구성하거나 집단치료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신과 치료에 대해서는 자신이 환자가 된 느낌 때문에 거부감이 들고 민간 상담기관은 비용부담이 너무 크다고 한다. 상담자의 연령이나 입장도 상담 시 크게 영향을 받는 부분이라고 언급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고려할 때 부분문제를 다루는 무료 상담기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이혼선택

- A가 이혼을 생각하게 된 것은 남편이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술에 취해 아내의 사랑만 갈구하면서 부터 이다. 변화되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 알코올 중독 치료도 포기한 지 오래다. 그저 결혼 생활이 하루빨리 정리되기만을 바란다. A는 이혼 후, 아들들도 장차 떠날 것을 생각해서 새로운 사람과의 행복한 삶을 갈망한다. 자식들 역시 A에게 이혼을 종용하고 있으나 남편은 합의 이혼을 거부한 채 버티고 있다. 그러나 더 이상 남편과 함께 생활할 수 없는 A는 이혼소송을 감행하고자 한다.

## 이혼선택

- D는 혼자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혼자 헤쳐 나가야 할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있지만,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집을 따로 구하고 남편과의 분리를 선택했다.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졸업을 포기했음에도 시댁식구들로부터 학력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학원운영에도 적극적이지 못했던 상황을 떠올리면서 다시 대학공부를 시작했다.

## 이혼선택

- D는 학부모들에게 잊히기 전에 자신의 힘으로 학원을 열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하다. 돈이 없으면 경력이 있고 학원 운영 능력이 뛰어나도 아무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 능력에 맞는 국가차원의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자신이 일궈온 모든 것을 빼앗겼음에도 D는 굴하지 않고 남편 없이도 혼자 힘으로 살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다.

## 요약

- ‘배우자 선택’, ‘일상화된 부부싸움’은 연구 참여자의 배경상황을 가능하게 한다.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연구 참여자들은 가학적이고 가정을 돌보지 않았던 아버지와 다른 유형의 사람을 찾는다.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친정 아버지와 불행한 집을 벗어나기 위해 참여자는 가정적인 배우자를 선택한다.

## 요약

- 그러나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친절함은 온데간데없고 아내에게 시비를 걸거나 과도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갈등이 시작된다. 갈등은 남편이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더 빈번한 양상을 띠게 된다.

## 요약

- ‘일상화된 부부싸움’은 결혼 전후 연구 참여자의 결핍된 욕구를 채워주고 정서적 안정감을 충족시켜주었던 남편이 일정시간이 흐른 뒤, 경제활동을 소홀히 하고 점차 심각한 문제행동을 나타내면서 시작된다.

## 요약

- 남편은 알코올 의존, 가장으로서의 직무유기, 가족방임 등의 문제를 보이면서 오히려 아내를 비난하거나 의심을 한다. 연구 참여자가 심히 고통스러운 것은 부부싸움 이후 남편이 집요하게 성관계를 요구한다는 데 있다. 잠자리를 거부할 경우, 남편의 공격성은 더욱 강화되고 부부의 갈등은 악순환을 거듭한다.



## 요약

- 폭력을 언급하고 있는 ‘원가족의 폭력’, ‘힘들게 하는 남편’, ‘남편의 폭력’, ‘생존을 위한 폭력’은 생존폭력이 어떤 맥락에서 구성되는지 밝혀 주고 있다.

## 요약

- ‘원가족의 폭력’은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과 배우자들의 가정에 폭력이 있었음을 알려준다. 주로 아버지가 행사한 폭력이었고, 이로 인해 가정이 풍비박산 나거나, 폭력을 참고 견딘 어머니가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갖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어린 나이에 친척집에 맡겨져 폭력에 직접 노출되지 않은 사례도 원가족의 폭력과 가정불화로 인한 영향을 일정 부분 받고 있었다.

## 요약

- ‘힘들게 하는 남편’은 성장시절 자신이 경험한 결핍된 사랑을 아내가 채워줘야 한다는 식으로 강요하거나, 아내가 자신 외에 다른 남자를 만날까 불안해하고 의심하는 데에서 나타난다. 또 아내를 자신이 만든 틀에 가두거나, 술을 마신 후 평소 억압하고 있던 자신의 내면을 공격적으로 표출하는 경우이다.

## 요약

- 남편은 자신의 열등감과 자격지심이 클수록 아내를 평가절하하고 아내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중성을 보인다.

## 요약

- ‘남편의 폭력’은 아내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따르지 않거나 아내에 대해 참고 있던 불만이 폭발할 때 발생했다. 아내에 대한 주관적 의심이 사실에 가깝다고 믿겨질 때도 폭언과 폭행을 하였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의 육체적 사랑을 거부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남편은 아내의 거부를 자신의 존재를 무시하고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받아들인다. 나아가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 요약

- 재혼한 아내를 충실한 가정부로 상정하고 남편의 친자식들과 관련해서는 일체의 언급을 제한시키면서 아내가 이를 조금이라도 어길 때에는 폭력으로 통제하려고 한다.
- 참여자 남편들은 아내들의 사소한 실수를 그냥 넘기지 않았고, 술을 마신 후 시비를 걸며 폭력의 빌미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

## 요약

- 생존을 위한 폭력은 절벽 끝까지 몰린 피해자가 남편의 폭력에 맞서 폭력을 사용한 것이다.
- 참여자들이 표현한 생존폭력 유형은 ‘분노 발산형’, ‘보복형’, ‘과거 차단형’, ‘생존형’으로 구분되었다.

## 요약

- 분노 발산형은 남편의 일방적 폭력에 시달리며 쌓였던 화가 일거에 분출되면서 억압된 감정이 폭력으로 전환된 형태다.
- 보복형은 자신이 당한 억울함과 아픔을 똑같이 상대방에게 느끼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응징의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한 경우이다.

## 요약

- 과거 차단형은 반복적인 남편의 폭력을 끝내려는 의지인 동시에 자신이 더 이상 참고 인내하던 과거로 회귀하지 않겠다는 결단이다.
- 생존형은 남편의 폭력에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자위적 차원에서 폭력을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로 보인다.

## 요약

- 안타까운 사실은 생존폭력을 사용했을 때 남편의 폭력강도가 더 강해지고 부부의 폭력양상은 더 치열해진다는 것이다. 그럴수록 더 이상 맞고 살지 않겠다는 참여자의 비장한 각오가 한층 활성화되면서 상호폭력의 순환고리가 형성된다.

## 요약

- 폭력행동 이후 생존폭력 여성들이 겪게 되는 일은 ‘경찰신고·보호처분’, ‘아내가 겪은 정신적 어려움’, ‘상담’, ‘이혼선택’으로 정리되었다.

## 요약

- 위기상황에서 경찰에 신고를 해도 경찰출동 외에 다른 조치가 없었기에 가정폭력 관련 기관들의 연계와 같은 위기개입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위기상황에서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경찰이었다. 다른 지원이 없다 하더라도 절박한 상황에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남편의 폭력을 멈출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경찰신고였기 때문이다.

## 요약

- 그러다 최근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전략이 바뀌면서, 경찰신고가 법적 처벌로 이어지는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졌다. 아이러니하게 그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처벌을 받게 된다.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행위자로 처벌을 받거나 가해자인 남편이 아내도 행위자로 몰아 쌍방 행위자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생겼다. 참여자들은 행위자가 된 상황에 충격을 받고 양가감정을 느끼면서도 보호처분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 요약

- 아내가 겪은 정신적 어려움은 우울증, 단기 정신증적 장애, 알코올 의존 등이다.
- 참여자는 알코올 중독 남편으로 인한 스트레스,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생계, 자녀들의 부재 등이 겹치면서 심각한 우울증이 왔고 자살시도까지 했었다. 병원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고 환경적으로 불안요인이 제거된 후에야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 요약

- 남편의 고소로 연구 참여자만 행위자로 보호처분을 받게 된 경우는 심한 충격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단기 정신증적 장애(환각, 망상, 와해된 언어 중 1가지 이상)가 왔고 짧은 입원치료 후 현재까지 산에 다니며 회복노력 중이다.
- 자신의 처지를 누구에게도 표현할 수 없는 연구 참여자는 술을 위안으로 삼고 혼자 술을 마시는 일이 점점 잦아졌다. 술을 마시고 우는 것으로 해소하려 했으나 한계가 있었다.

## 요약

- 상담은 시기, 방법, 비용이 현실적으로 고려되어야 의미가 있다고 연구 참여자들은 이야기한다.
-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참여자는 자신이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할 때에는 상담할 곳을 찾지 못했고 현재는 오히려 이혼과 관련한 법적 자문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 요약

- 상담방법과 관련해서는 정신과 병원이 아닌 세팅에서 같은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들끼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집단치료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언급한다. 개인상담일 경우에도 상담자가 연구 참여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전문가이기를 원했다. 현재 민간 상담기관의 상담비용이 고가여서 감당하기에 부담이 있다고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부부 문제나 가정폭력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무료상담기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 요약

- 이혼 선택은 독립적 삶이 가능한 연구 참여자들이 현 결혼생활에 대해 내린 마지막 결론이다.
- 경제력이 없거나 이혼 후 다른 대안이 없는 연구 참여자들은 끊임없이 이혼을 생각하면서도 실행할 의사는 없다.

## 요약

- 대안적 삶을 현실화 시킬 능력이 있는 참여자들은 구체적으로 이혼을 준비하고 실행시키고자 한다.
- 이혼 선택을 한 연구 참여자들은 가정폭력 피해경험을 통해 전통적 가부장적 사고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 제언

- 처분결정 이전에 조사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폭력의 동기, 정도, 맥락 등을 밝혀서 실질적으로 누가 피해자이고 행위자인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생존폭력이나 방어적 폭력은 일방적 폭력과 구별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처분의 부과기준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 제언

- 여성 행위자들에게는 그들의 고유한 특성과 상황, 욕구를 반영한 특화된 상담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 제언

- 여성 행위자 상담프로그램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주제는 안전계획과 심리적 외상 치유, 분노조절 및 비폭력 관계 기술이다.

## 제언

- 성장기에 트라우마를 많이 경험한 여성들이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한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이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가정폭력 예방교육프로그램에 건강한 배우자 선택에 관한 주제를 포함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 감사합니다





# 음주문제, 공동의존 그리고 성인아이

김 혜 선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1. 문제음주

술은 인류의 발생과 함께 매우 중요한 음료였다. 추위, 기근, 질병, 분쟁과 같은 힘든 상황에서 자신을 달래주는 물질이었고, 공동체의 종족 생활이나 종교 활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신정호, 2009: 95). 하지만 술은 약물이며 마약이기도 하다(Summers, 2003: 49). 술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마시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간과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남용약물의 하나이다. 음주는 내성과 금단증상의 정도에 따라 남용, 의존의 단계로 진전되며, 이 과정에서 음주자가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사회적, 학업적, 직업적, 법적, 경제적, 영적 기능 및 가족관계와 대인관계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하는 음주상태를 국내연구에서는 알코올중독 등의 낙인성을 고려하여 ‘문제음주’라 부른다(이용표·최희수·박정임, 2000; 최윤정, 2004; 천성수·김미경·윤선미·정현미·유재현·이상숙, 2009). 즉 문제음주는 음주로 초래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지칭하는 것으로, 술을 적당한 정도로 통제하지 못해 초래하는 알코올남용(alcohol abuse)<sup>8)</sup>이나

---

8) 알코올남용(alcohol abuse)은 음주 때문에 학업이나 직업, 가정 내의 책임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매우 위험한 상황에서도 술을 마시고, 음주로 인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며 이것들이 사회적

알코올의존(alcohol dependence) 또는 알코올중독(alcoholism)<sup>9)</sup>과 같은 병리적인 음주뿐만 아니라 법적인 문제 등까지도 포함하고 있다(Pollock, Martin et al, 2000; 신명식, 2002 재인용: 112)

우리나라의 음주문제 현황을 보면 국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에서 전체 정신과 질환 중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질환이 알코올중독이고, 청소년들에게서 담배와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물이 술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성이, 2002: 17-18). 특히 우리나라 대학생은 대학 내 행사에서 음주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음주가 대학생활에서 필수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장승옥, 2006: 89),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대학생 10명 중 9명은 술을 마시고(이원재, 2001), 폭음자<sup>10)</sup>의 경우도 65.7%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천성수·손애리·송창호·이주열·김선경, 2003: 124). 또한 세계보건기구(WHO)는 남자의 알코올 섭취량이 하루 60g, 여성은 40g을 초과한 순수한 알코올 섭취를 고위험 수준으로 정의하고 있으며(WHO, 2000), 이 기준은 알코올의 양이 10-12g인 소주 한 잔으로 계산했을 때 남성은 하루 5잔, 여성은 4잔 이상을 의미한다(한국일보, 2012: 23면). 그런데 우리나라는 남성은 7잔, 여성은 5잔 이상으로 술을 많이 마시는 ‘폭음(暴飲)’인구가 세계평균에 비해 무려 3배에 이르고 있어(국민일보, 2012: 23면) 우리나라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에 따르면 대부분의 음주자들이 위험음주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문제음주는 연령과도 무관하지 않다. 10대들의 문제음주는 심각한 실정이다. 2011년 전국 800개교 중·고등학생 7만 5643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회 평균 음주량

---

으로나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킴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술을 마시는 경우다.

9) 알코올의존(alcohol dependence)은 알코올에 대한 내성(tolerance)이 증가가 있거나 알코올 금단증상(alcohol withdrawal syndrome)이 나타나는 경우다. 알코올 내성은 바라는 음주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알코올 양이 현저히 증가하였거나 전과 같은 음주량으로는 현저히 줄어드는 효과밖에 얻지 못한 경우이며, 알코올 금단증상은 며칠이상 과음한 뒤에 술을 끊거나 주량을 줄일 때 몇 시간 내에 양손, 눈꺼풀이 심하게 떨리며 구역과 구토, 전신무력감이나 피로감, 자율신경계 항진증상(빈맥, 발한, 혈압상승), 불안, 우울한 기분이나 초조, 기립성 저혈압과 같은 증상 중의 한 가지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10) 천성수 외(2003)는 폭음자란 상습폭음자(지난 2주 동안 5잔 이상(여자는 4잔 이상)의 음주를 3회 이상한 자)와 수시폭음자(지난 2주일 동안 5잔 이상(여자는 4잔 이상)의 음주를 1-2한 자)를 합친 것으로 상습폭음자는 33.2%, 수시폭음자는 32.6%로 보고하고 있다.

이 소주 5잔 이상인 남학생과 소주 3잔 이상인 여학생 등 ‘위험음주 학생’ 비율이 48.8%로 2008년 44.6%, 2009년 47.4%, 2010년 47.2%에 비해 점점 느는 추세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그런데 음주가 지속될 경우 연령의 증가에 따라 내성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동반하게 되는데, 술을 오래 마실 때 발생하는 알코올성 정신 질환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남성 환자의 경우 5만 3767명에서 6만3859명으로 연 평균 4.4%, 여성 환자는 1만 2429명에서 1만 4498명으로 3.9%로 늘어났으며(동아일보, 2011: 27면), 10대 환자 수는 2007년 637명에서 지난 해 1076명으로 5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국민일보, 2012: 7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명 당 알코올 정신장애 환자는 전체 연령대에서 남성의 경우 60대, 50대, 70대 순이었고, 여성의 경우 40대, 50대, 30대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문제음주의 결과가 술을 오랫동안 많이 마신 사람에게서 두드러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동아일보, 2011: 27면).

이처럼 음주문제는 나이와 성별, 계층을 넘나들며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사회범죄의 원인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음주문제자들은 위험행동 경험의 상대 위험비가 비음주자에 비해 크게 높아(천성수, 2002),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주폭(酒暴)’이란 새로운 용어까지 등장했다. 만취상태에서 고성방가, 파출소 난동 같은 공공질서 문란 행위서부터 폭행, 강간, 강도, 살인 등 강력범죄까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대검찰청이 2002년~2009년 주취 범죄율을 조사한 결과 평균 18.0%가 음주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 교도소, 보호관찰소 등의 재소자 4419명을 조사한 결과 766명(38.3%)이 알코올 사용장애자였다(국민일보, 2012: 7면).

또한 ‘키친 드링크’라는 용어도 있다. 남성이 공개적으로 술집에서 사업상 또는 사교적인 만남을 통해 알코올중독으로 발전하는 것과는 달리, 여성은 대부분 숨어서 홀짝거리거나 세탁 바구니 또는 주방의 찬장에 술을 숨겨놓고 마신다(Bauer, 1982)고 해서 만들어진 용어로, 음주문제가 남성에게만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 2. 음주문제와 가정폭력

음주와 가정폭력은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사회문제이자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다(장수미, 2007:192). 이는 알코올은 기본적으로 폭력성을 동반하는 것으로 (Yalisove, 2004; 이재경·박명숙, 2014, p5 재인용), 개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부인 하게 하여 폭력에 대한 핑계거리를 제공한다(장수미, 2007:195). 국내외에서도 음주문제와 가정폭력간의 정적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관련 된 연구들<sup>11)</sup>은 다음과 같다.

| 연구자                        | 연구결과                                                                                                   |
|----------------------------|--------------------------------------------------------------------------------------------------------|
| ① Brookoff et al(1997)     | 가정폭력 신고전화에 접수된 가해자의 92%가 폭력 당시 약물을 사용                                                                  |
| ② Fals-Stewart(1998)(2003) | 심각한 약물남용문제로 치료기관에 찾은 남성은 약물을 안 했을 때보다 했을 경우 폭력을 할 확률이 17배나 높음                                          |
|                            | 술을 마시지 않는 날보다 술을 마신 날에 심각한 신체폭력이 11배 높음                                                                |
| ③ Fazzon et al(2000)       | 가정폭력을 한 남성의 1/4-1/2는 약물남용문제를 가짐                                                                        |
| ④ Caetano & Nelson(2004)   | 인종, 학력, 수입, 연령, 성별, 충동성을 통제한 이후에도 알코올소비가 가정폭력을 일으킬 확률이 3.2배 높음                                         |
| ⑤ 가정법률상담소(2006)            | 폭력행동의 원인 중 음주가 30.8%로 가장 높은 순위 차지                                                                      |
| ⑥ 여성가족부(2010)              | 음주량에 따라 아내폭력 발생률과 유형별 폭력 발생률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음주정도에 따라 아내 폭력 발생률은 25.7%에서 40.0%까지 증가하였으며, 모든 폭력유형에서 증가 |
| ⑦ 조운오(2011)                | 아버지의 음주가 아동의 신체적 학대 및 성적 학대, 그리고 방임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 요인                                                     |
| ⑧ 이재경, 박명숙(2014)           | 다문화 가정의 경우, 아내 폭력은 아동학대 및 남편음주와 정적 상관관계(남편의 음주에 의해 폭력을 경험한 결혼이주 여성이 아동학대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11) ①에서 ⑤까지는 장수미(2007)에서 발췌하여 표 작업을 하였다.

또한 음주로 인한 가족폭력에는 부인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편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 권리로 여기는 가부장제의 문화적 맥락이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chwartz & DeKeseredy, 1997; 정현미, 2010).

하지만 우리나라는 음주문제와 가정폭력의 문제가 동시에 발생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에도 음주문제와 가정폭력의 문제를 상이한 시각에서 상이한 개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장수미, 2007). 가정폭력 상담가는 알코올남용을 가정폭력에 대한 변명으로 생각하여 알코올 남용을 이차적인 이슈로 보는 반면, 알코올 상담가는 폭력을 중독의 한 현상 정도로 취급하거나, 가정폭력을 다룰 임상적 훈련이 잘 갖추어져있지 않기 때문에 함께 다루지 않는다(장수미, 2007:193). 즉 가정폭력상담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안전이 최우선의 목표인 반면 알코올치료기관에서는 단주가 개입의 핵심목표이기 때문이다(Frazzon, Holton, Reed, 2000; 장수미, 2007:193 재인용). 그러나 가정폭력과 음주문제는 분리되어 있지만 서로 상호작용하며 서로의 문제를 강화시키며 유사한 부분이 많다. 가정폭력과 음주문제 모두 세대 간 전이되며, 둘 다 부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배우자를 비난하며, 위기가 발생할 때까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공통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장수미, 2003).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가정폭력기관에서는 가해자의 음주문제가 폭력행동을 변화시키려는 개입을 방해하고, 알코올치료기관에서는 폭력행동이 단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실무자 사이에서 이중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는 개입이 매우 어려운 집단으로 알려져 있다(장수미, 2007).

하지만 폭력은 단 한번이라도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다. 폭력의 피해자는 신체적인 상처를 입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정신적인 고통으로 시달리게 된다. 특히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성을 주된 특징으로 하는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 모두에게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김재엽, 이서원, 2007)에서 음주문제와 가정폭력의 관계는 함께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사회의 영역이다.

### 3. 부모의 음주문제의 영향

문제음주는 만성적·진행적·치명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가족 전체에게 심각한 손상을 초래한다. 가족체계론적 입장에서는 가족체계의 모든 부분이 상호의존적이고 역동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 구성원이 알코올중독과 같은 건강하지 않은 요소를 가지고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항상성의 추구하고 유지를 위해 가족 구성원들은 역기능적 역할에 적응하고 이를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알코올중독자 가족은 이혼, 별거, 유기, 가출, 가난, 만성질병, 실직, 사회적 고립 등 상황적 문제와 잦은 좌절, 낮은 자존감, 의존성, 우울, 미성숙, 충동성의 성격적 문제 등 공동문제를 갖는다(양혜진, 2007: 2).

부모의 문제음주는 부모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자녀에게 유전적 결과를 초래한다.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는 알코올중독이 될 가능성이 일반인에 비해 4-5배정도 높다. 이는 쌍둥이 연구와 입양연구에서 밝혀지고 있어서 알코올중독에서 환경적 요인보다 유전적 요인이 보다 중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in & Anthennelli, 2005). 최근 미국 오리건 건강 과학대 심리학 및 행동 뇌신경과학과의 보니 네이절 교수팀도 이 의견을 더하고 있는데, 부모가 알코올중독인 경우 그의 자녀들이 일반인보다 알코올중독에 걸리기 쉽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알코올중독 가족력이 있는 청소년 18명과 일반 청소년 13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알코올중독자 가족력 청소년의 뇌는 이미 일반인과 다른 뇌신경학적 위험인자가 들어 있어서 이러한 인자가 있는 환자들은 따로 관리해 치료법을 다르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동아일보, 2012: 23면).

부모의 문제음주로 고통 받는 자녀들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비일관적인 양육, 이중 구속적 메시지, 숨겨진 감정, 불확실성, 불신을 경험하며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역할 행동을 발달시키면서(Black, 1984; Wegscheider-Cruse, 1981; 박현선, 2003 재인용: 61),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사회적 지지체계, 우울, 불안, 분노, 죄책감 수치심 등의 심리적 정서적 부분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보인다(이창원, 2005: 22). 이렇게 부모의 문제음주에 영향을 받고 성장한 자녀를 알코올중독자 자녀(COA: Children of Alcoholics)라 일컫는데, 이들은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자기비난

과 죄책감뿐만 아니라 폭넓고 파괴적이며 불필요한 결과들을 수용함으로서 대인관계상의 친밀감 형성을 억제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인지하지 못한 채 거짓자아를 가지고 성장한다(Whitfield, 2006).

### 1) 알코올중독자 자녀(COAs)

알코올중독자(COAs)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선택이 아니다. 문제음주자가 부모이기에 벗어날 수도 없는 유전적 유산과 삶의 유산들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 COAs의 운명이다. 일부 연구들에서는 모든 문제음주자 자녀들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문제를 보이는 것은 아니며(Fisher & Kittleson, 2000; Werner & Johnson, 2004; 안재순, 정성진, 서경현, 2012 재인용: 18), COAs의 문제가 부모의 알코올중독 외의 다른 변수들과 강하게 연관되어 있다(Deren, 1986)고 보고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연구들은 그들이 부모의 문제음주로 인해 어려운 현실을 경험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Velleman & Orford, 1999; Prescott & Kendler, 1999; Gifford & Humphreys, 2007). 알코올중독자 가정에서 가족이란 알코올로부터 벗어나는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자원이지만 그 가족 구성원들은 알코올 중독자로 인해 신체적, 정서적으로 피해를 받으며(Beattie, 1996), 특히 자녀들은 알코올 중독자인 부모로 인해 가장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 대상이 되기도 한다(Velleman & Orford, 1999; Prescott & Kendler, 1999; 양승희·이평숙, 2005; Gifford & Humphreys, 2007).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는 부모의 문제음주로부터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받는 무고한 희생자라는 사실에는 아무런 논란의 여지가 없다(장수미, 1992).

COAs는 non-COAs보다 알코올중독의 위험성이 3~4배 더 높으며(김성곤, 2009: 86) 언어적, 신체적 학대 및 근친상간과 같은 가정폭력에 노출되고 있으며 다른 또래 아동보다 학대받기 쉽고 자존감이 낮으며 우울해지고 희망없음 등의 정서적인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Deren, 1986; Woitiz, 1990; Velleman & Orford, 1999; Gifford & Humphreys, 2007). COAs는 부모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부모가 만취한 상태일 때는 폭력과 폭언을, 비알코올중독 부모에게는 이중 메시지를 받으며 늘 긴장과 불안 상태로 집에서 벗어나는 환상을 꿈꾸지만 집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책임과 걱정으로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뒷에 걸린 삶을 살아간다(Woitiz, 1990).

또한 COAs는 학교나 또래 관계에서도 부적응의 문제를 보이기도 한다. 학업 성취도가 낮고 유급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학습장애의 문제나 무단결석 등의 학교문제, 과잉행동, 도벽, 가출, 공격성 등의 행동문제 그리고 이른 음주, 약물 남용 등의 사회적 문제를 나타내기도 한다(Mathew et al., 1993). 때론 COAs 중에는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과 강한 책임감으로 칭찬을 받기도 하는데 이는 집과 자신의 솔직한 감정에 대한 도피일 뿐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도한 책임감으로 학교에서 줄거나 집중력에 문제가 있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경험한다(Woitiz, 1990). 그리고 COAs는 ‘누구도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밖에서 이야기해서는 안된다.’ 등의 암묵적인 가족규칙으로 인해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모의 문제음주때문에 친구를 집에 데리고 오지 못하는 등의 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친구와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Woitiz, 1990).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COAs의 수는 18%~36%<sup>12)</sup>로 추정되고 있는데, 청소년 10명 중 3명이 부모의 음주문제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는 셈이다. 또한 YWCA가 2002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상담실을 방문하는 80-90%의 청소년이 술 문제를 둔 부모를 두었다고 하며 청소년의 갈등과 문제의 대부분이 부모의 음주문제로부터 파생된다고 보고하고 있다(배행자, 2005: 240). 하지만 Black(1984)은 COAs 중 과반수에 가까운 인구가 부모의 음주문제를 부인한다는 점에서 실제보다 더 많은 수의 COAs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김정희(2007)의 연구에 따르면 알코올중독자 성인자녀인 대학생 중 36.4%가 부모의 음주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측정도구인 CAST-K에서는 알코올중독자 성인자녀로 판명되지만 실생활에서는 알코올중독자 성인자녀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는 자녀들의 비율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더 나아가 알코올중독자 자녀가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성장했음에도 이전 발달단계인 아동이나 청소년기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해서 성인이 된 이후에도 충동적이고 미성숙한 정서, 강박적인 사고의 특성, 권위 지향적이고 타인의존적인

---

12)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박현선·이상균(2001)은 34.4%, 양해진(2007)은 18.4%, 현명선·남경아·김명아(2008)는 24.7%, 허지인(2002)의 연구에서는 31.4%, 여대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김혜련·전선영·김정희(2004)의 연구에서는 36%,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윤명숙(2006)의 연구에서는 32.9%, 사회복지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혜선(2013)연구에서는 30.4%였다.

대인관계 특성과 같이 다각적인 측면에서 미성숙한 발달지연 즉, 성인아이 증후군 (adult children of alcoholics)이 나타내는데, 이러한 대상을 알코올중독자 성인아이 (ACOA: Adult Children of Alcoholics)로 부른다(박현선, 2003: 56).

알코올중독자 성인 아이는 사회 적응력이 떨어지고 의존적인 대인관계 성향을 보이며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알코올중독자 성인아이들에게서 보이는 불안과 우울의 직접적인 원인을 공동의존으로 보기도 한다(Beebe, 1990; Beattie, 1996; Whitfield, 2006).

## 2) 공동의존

공동의존(codependency)은 상대방의 행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허락한 사람이자 그 상대방을 통제하고자 고심하며 집착하는 사람의 특성을 일컫는다(Beattie, 1996: 36). 공동의존은 원래 1970년대의 공동 알코올중독(co-alcoholism)에서 시작되어 1980년대에 연구자들에 의해 정의되었고, 1990년대 이후로 대중들 사이에 알려졌다. 그래서 공동의존은 초기에 알코올중독자와 헌신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온 결과로 자신의 삶을 관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사람, 즉 문제음주자 부인의 관계성향을 지칭함에 따라 많은 여성주의 연구자들에 의해 공동의존의 병리성과 낙인을 이유로 배척되기도 했고 학문적으로 퇴보하기도 했다(Martsof, Hughes-Hammer, Estok & Zeller, 1999: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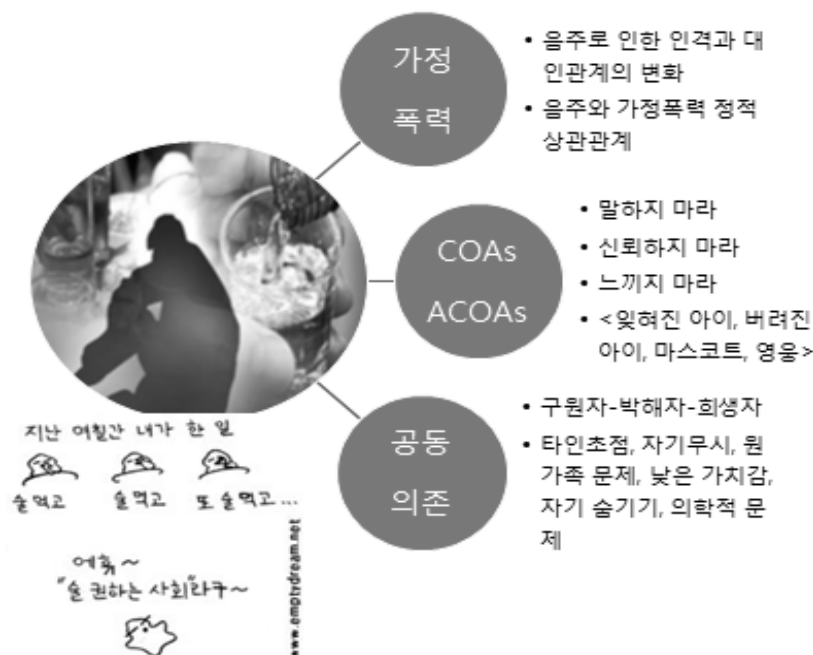
하지만 전문가들이 공동의존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하게 되면서 공동의존의 개념은 알코올중독자 자신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인물들에게서 쉽게 나타나는 관계적 특성이자(Beattie, 1996: 31-39), 오래 동안 스트레스 환경에 노출된 사람들이 보이는 대인관계나 인격특성이라는 개념으로 더욱더 확장되어 통용되어지고 있다(Fuller & Waner, 2000; 배다현, 2008 재인용).

공동의존은 자신의 정체성을 희생하면서까지 어떤 대상이나 타인에게 초점을 맞춘 삶을 살며 자신을 위한 방식으로 행동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 고통, 삶에 좌우되어 행동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Beattie, 1996: 42-54). 그래서 공동의존의 덫에 걸린 사람은 문제를 숨기려는데 급급하며, 타인이 저지른 부정적인 결과를 대신 책임지고, 자신과 타인 모두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정상이라고 믿는 무의식적 은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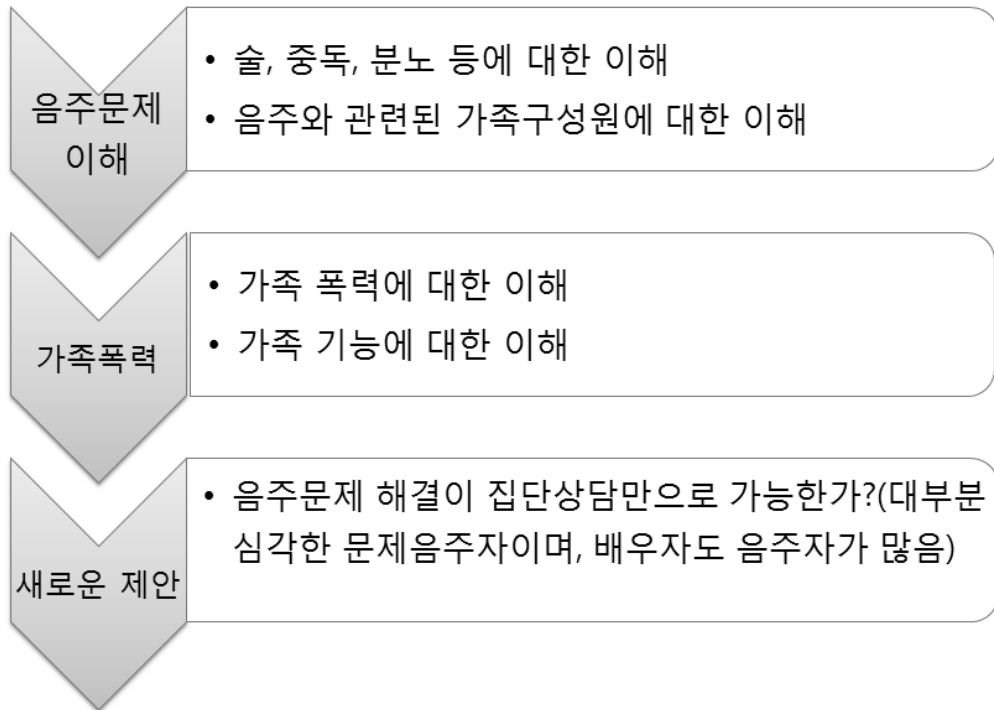
와 억제, 투사, 합리화를 한다(Beebe, 1990: 472). 즉 공동의존의 특성을 가진 사람은 구원자-박해자-희생자로 구성된 삼각형의 꼭지점들을 끊임없이 반복한다. 문제를 가진 사람을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에 “못된 아이를 구원하는 좋은 부모”인 구원자가 되기도 하고, 자신의 뜻대로 상대방이 움직여 주지 않고 고마움을 표현해주지 않으면 “박해자”의 역할을 하다가 결국에는 자신이 문제를 통제할 수 없음을 발견하고 죄책감과 부적절감을 느껴 “희생자”가 되는 역할을 반복한다(Beebe, 1990: 71-73; Beattie, 1996: 84-94). Hughes-Hammer, Martsolf와 Zeller(1998)은 이러한 사람에게서 타인초점과 자기무시, 원가족 문제, 낮은 가치감, 자기 숨기기 그리고 의학적 문제 등의 5가지 핵심문제가 있다고 언급했고, Whitfield(2006)은 공동의존관계를 맺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감추고, 공동의존으로 인한 정서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 강박적 행동을 하고, 강박적 행동에 따른 감정조절의 실패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없고, 만성 불행감을 느끼며, 끊임없이 문제를 조장한다고 설명했다.

## 4. 결론

### 1) 음주문제, 알코올중독자 자녀, 공동의존



## 2) 제언





## 참고문헌

- 김재엽, 이서원(2007).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피해 및 영향. 연세행정논총, 28.
- 김혜선(2013). 사회복지학과 재학생의 문제음주, 부모의 문제음주 영향 그리고 공동의존. 사회복지연구, 44(2).
- 김혜선(2013). 알코올중독 성인자녀(ACOA) 남녀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공동의존과의 관계. 한국위기관리논집, 9(4).
- 김혜선(2014). 알코올중독자 청소년 자녀(COAs)가 지각한 일상생활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 한국 위기관리논집, 10(2).
- 김혜선(2015). 사회복지사의 공동의존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지, 16(5).
- 이재경, 박명숙(2014). 다문화가정의 아동학대 발생 위험요인으로써의 남편의 음주, 아내폭력,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48.
- 장수미(2007).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음주문제와 영향요인.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8.

- 본 논문은 위의 참고문헌의 내용을 재정리했으며, 본문에 기록된 참고문헌은 지면상 생략합니다.

# 부모폭력에 대한 관점과 개입 방안

- 자녀가 통제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

정 윤 경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객원교수

## 들어가기

어떤 폭력이든 폭력을 행사하는 이유는 관계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하거나 상대의 무엇을 통제하기 위해서이다.

자녀는 무엇을 통제하기 위해 부모에게 폭력을 사용하는가.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이 특별법의 제정과 함께 사회적 관심을 받아온 지 20년이 되어간다. 그동안 가정폭력 행위자와 피해자에 대한 개입이 꾸준히 이루어졌고 일반인들의 인식도 상당히 향상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수면 아래에 잠겨있는 영역이 부모폭력이다.

### 1. 부모폭력

부모폭력은 가정 내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가하는 폭력행위로써 “부모를 대상으로 힘을 얻거나 부모를 통제하기 위해 고의로 신체적, 심리적 또는 경제적 손상을 입히는

자녀의 행동“으로 정의된다<sup>13)</sup>.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을 대상별로 분류할 때 부부폭력, 아동학대(자녀학대), 노인학대로 구분한다. 이 구분에서 노인학대가 자녀에 의한 부모폭력에 해당되지만 노년기 부모가 가정 내 권력이 약화되었거나 상실된 상태에서 성인 자녀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것이므로 위의 폭력들은 모두 가정 내 권력구조에서 더 큰 권력을 가진 성인에 의해 행해진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부모의 돌봄 하에 있는 미성년 또는 성인기 미혼자녀의 부모폭력은 권력위계상 역행하는 폭력으로서 노인학대와 구별되는 특성이 있다.

본 발표에서 부모폭력은 미성년 자녀에 의한 부모폭력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다.

부모폭력이 배우자폭력이나 아동학대와는 뚜렷이 구별된다고 처음으로 규정한 Harbin과 Madden(1979)의 연구<sup>14)</sup> 이후 가정폭력 연구자들은 청소년들의 부모폭력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후 부모폭력 발생 원인,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성, 다른 가정폭력과 차별성, 개입 등의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 부모폭력은 여전히 낮은 영역이며, 부모폭력의 다른 이름은 패륜이다. 폭력에 대한 책임이 행위자에게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명제이지만 특히 부모폭력은 원인이 무엇이든, 폭력이 발생한 상황이 어떠했든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고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하는 패륜적 행위’라는 정서가 지배적이다.

이렇게 부모에 대한 폭력을 도덕적인 잣대로만 평가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적 맥락이나 가족체계의 다양한 특성 안에서 폭력을 이해하기보다는 행위자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을 가짐으로써 부모폭력 연구가 부진한 결과를 가져왔다.

---

13) Cottrell, B. 2001. Parent Abuse: The Abuse of Parents by Their Teenage Children. Ottawa: Health Canada.

14) Harbin, H. Y., & Madden, D. J. (1979). Battered parents: A new syndrom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6, 1288-1291.

## 2. 부모폭력의 실태

임상 현장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녀의 폭력적인 언행을 호소하는 부모들이 있었지만 부모폭력의 실태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여타 가정폭력에 비해 발생률이 낮기 때문에 공식적인 관심 밖에 있는 영역인데다가, 조사가 되어도 부모나 자녀 모두 수치심, 죄책감 등으로 은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우리나라의 실태]

2004년부터 여성가족부는 매 3년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4년에는 성인 조사에서 부모폭력을 조사하여서 성인자녀의 노부모폭력을 실태를 파악하였다. 2007년에는 노인 조사에서 자녀로부터의 폭력을 조사하여서 2004년과 마찬가지로 성인자녀에 의한 폭력 실태를 보여주었다. 2010년에는 아동·청소년 부가조사를 통해서 부모폭력을 조사하였고 미성년자녀에 의한 부모폭력을 파악해 볼 수 있다. 가장 최근의 2013년 조사에서는 아동·청소년 부가조사를 하였으나 대표성 때문에 발표하지 않았다.

○ 2004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 성인 대상으로 부모폭력 조사

-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여서 가정내 노인학대의 실태를 볼 수 있음.
- 남성의 부모폭력 33.1%, 여성의 부모폭력 30.8%

단위 : %

| 유형별           | 전체<br>폭력 | 정신적<br>폭력 | 신체적 폭력 |      |               | 경제적<br>폭력 |
|---------------|----------|-----------|--------|------|---------------|-----------|
|               |          |           | 경한폭력   | 심한폭력 | (경한+심한)<br>폭력 |           |
| 남성의 부모<br>폭력률 | 33.1     | 32.8      | 0.6    | 0.4  | 0.7           | 0.7       |
| 여성의 부모<br>폭력률 | 30.8     | 30.8      | 0.4    | 0.0  | 0.4           | 0.1       |

○ 2007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 노인 대상으로 자녀로부터의 폭력 조사

- 조사표에 방임이 추가됨.
- 성인 남성의 부모폭력 3.9%, 성인 여성의 부모폭력 7.3%
- 가해자는 아들, 며느리, 딸·사위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 구분    | 전체 폭력 | 정서적 폭력 | 신체적 폭력 | 경제적 폭력 | 방임  |
|-------|-------|--------|--------|--------|-----|
| 전체    | 6.0   | 5.2    | 0.2    | 0.4    | 2.3 |
| 남성 노인 | 3.9   | 3.4    | -      | 0.1    | 1.5 |
| 여성 노인 | 7.3   | 6.4    | 0.4    | 0.5    | 2.8 |

○ 2010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중 아동·청소년 대상 부가조사로 부모폭력 조사

- 조사시점으로부터 지난 1년간 신체적 폭력 5.1%, 정서적 폭력 13.6%이었음.
- 신체적 폭력을 수준별로 살펴보면, 경한 폭력이 4.4%, 중한 폭력이 2.3%로 나타남.
- 부모의 피해율은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다소 높았음.
- 가해자는 딸이 아들보다 부모폭력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

〈지난 1년간 아동·청소년의 부모폭력 발생률〉

단위 : %(명)

| 구 분             |     | 폭력유형별 발생률 |          |               | 정서적<br>폭력 | 전체폭력      | (분석<br>대상수) |
|-----------------|-----|-----------|----------|---------------|-----------|-----------|-------------|
|                 |     | 신체적 폭력    |          |               |           |           |             |
|                 |     | 경한<br>폭력  | 중한<br>폭력 | (경한+중한)<br>폭력 |           |           |             |
| 자녀의<br>부모<br>폭력 | 전체  | 4.4(45)   | 2.3(23)  | 5.1(52)       | 13.6(138) | 14.5(147) | (1,015)     |
|                 | 남학생 | 3.8(18)   | 1.9(9)   | 4.0(19)       | 12.9(61)  | 13.5(64)  | (473)       |
|                 | 여학생 | 5.0(27)   | 2.6(14)  | 6.1(33)       | 14.3(77)  | 15.5(83)  | (537)       |
| 아버지<br>폭력       | 전체  | 1.9(19)   | 1.2(12)  | 2.4(24)       | 7.4(75)   | 8.0(81)   | (1,015)     |
|                 | 남학생 | 2.3(11)   | 0.8(4)   | 2.3(11)       | 7.2(34)   | 7.6(36)   | (463)       |
|                 | 여학생 | 1.5(8)    | 1.5(8)   | 2.4(13)       | 7.6(41)   | 8.4(45)   | (525)       |
| 어머니<br>폭력       | 전체  | 3.1(31)   | 1.5(15)  | 3.5(36)       | 10.6(108) | 11.4(116) | (1,015)     |
|                 | 남학생 | 1.9(9)    | 1.3(6)   | 2.1(10)       | 9.9(47)   | 10.3(49)  | (463)       |
|                 | 여학생 | 4.1(22)   | 1.7(9)   | 4.8(26)       | 11.4(61)  | 12.5(67)  | (526)       |

○ 연세대학교 가족복지팀(1999년, 2008년, 2015)의 청소년 대상 조사연구<sup>15)</sup>

- 1999년 연구: - 아버지 신체폭력 2.7%, 언어폭력 9.4%
- 어머니 신체폭력 6.5%, 언어폭력 15.4%
-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부모 모두에 대한 폭력이 더 높음.
- 2008년 연구: - 부모에 대한 전체 폭력률 25.3%
- 신체폭력 9.7%, 언어폭력 22.9%
- 2015년 연구: - 부모에 대한 전체 폭력률 12.2%
- 아버지 폭력 6.8%, 어머니 폭력 10.0%
- 정서폭력과 경미한 신체폭력은 어머니, 심각한 신체폭력은 아버지가 높음.
-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부모폭력률이 다소 높음.

○ 2005년~2014년 경찰청 자료 분석(<http://www.news1.co.kr>, 2015. 8. 16)

- 부모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된 건수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총 5,537건
- 이 수치는 모든 연령층 자녀의 부모폭력 건수이며 청소년의 부모폭력 건수만 별도로 파악할 수는 없음.
- 부모폭력 건수는 2013년부터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부부폭력 건수의 증가와 일치하는 경향으로 현 정부의 4대약 체결정책의 영향으로 볼 수 있음.

| 구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계      |
|----------|-------|-------|-------|-------|-------|-------|-------|-------|--------|--------|--------|
| 부모<br>폭력 | 438   | 466   | 553   | 550   | 540   | 486   | 483   | 590   | 712    | 729    | 5,537  |
| 부모<br>살해 | 55    | 40    | 53    | 45    | 58    | 66    | 68    | 50    | 49     | 60     | 544    |
| 부부<br>폭력 | 9,825 | 9,426 | 9,462 | 8,702 | 8,412 | 5,954 | 4,670 | 6,154 | 12,591 | 13,489 | 88,685 |

- 15) - 김재엽, 이서원(1999). 청소년의 부모폭력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3), 1-14.
- 김재엽, 조준범, 정운경(2008).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이 부모폭력에 미치는 영향과 인터넷 중독의 매개효과. 한국사회복지학, 60(2), 29-51.
- 이순호(2015). 청소년의 부모간 폭력노출 경험이 부모폭력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외국의 실태]

미국 전국조사에서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신체적 폭력이 9%로 나타났다.<sup>16)</sup> 외국의 부모폭력률은 문헌에 따라 5%~29%의 범위에서 나타나고 있고, 대체로 7%~13%에 속해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up>17)</sup>

그 밖의 실태와 관련된 수치는 다음과 같다.

### ○ 영국. ‘Family Lives’의 자녀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부모 신고 전화 분석.

- 2008년. 3만통 중 7%가 자녀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였음.
- 2010년. 22,537통 전화 중 7000건이 신체적 폭력을 보고함.<sup>18)</sup>

### ○ 성별에 따른 실태

- 대다수의 연구에서 가해자는 아들이 딸보다 더 많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연구도 있음.
- 피해자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많음.
- 영국. 2009-2010년. 부모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된 1892명 분석 결과<sup>19)</sup>  
가해자의 87% 아들, 피해자의 77% 어머니, 66%가 아들이 어머니에게 폭력.

### ○ 미국 사법부 소년법원과 비행예방 부서의 자료분석 보고서(2008년).

가정폭력범죄자의 9%가 청소년, 그 중 51%가 부모를 폭행함.

---

16) Cornell, C.P., & Gelles, R.J. (1982). Adolescent-to-parent violence. Urban Social Change Review, 15(1), 8-14.

17) -Routt, G. & Anderson, L. (2011). Adolescent violence towards parents.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20, p.2. 재인용.

-Ibabe, I., Jaureguizar, J., & Bentler, P. M. (2013). Risk factors for child-to-parent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28, p.523.

18)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420963/APVA.pdf](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420963/APVA.pdf)

19) Condry, R., & Miles, M. (2014). Adolescent to parent violence: Framing and mapping a hidden problem. Criminology & Criminal Justice. 14(3). p.272.

### 3. 부모폭력의 특성

#### [부모폭력의 발생 원인]

부모폭력의 원인 또는 위험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선행연구들<sup>20)</sup> 및 발표자의 임상 경험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가족 요인

- 가정폭력 경험
- 비효과적이고 부적절한 양육방식
- 갈등이 많은 부부관계
- 부모-자녀간 약한 정서적 유대
- 부모의 요구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무력감.
- 부모-자녀간 소통의 어려움

#### ○ 자녀 개인 요인

우울, 공격성, 낮은 자존감, 높은 폭력 허용태도, 분노조절 어려움, 성격 장애, 술, 인터넷 중독, 학습장애, ADHD 등

#### ○ 발달적 요인

- 청소년은 발달단계에 있어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개별화를 추구하는 시기임.
- 부모의 가치관이나 생활방식과 충돌될 때 부모폭력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짐.

---

20) -Ibabe, I., Jaureguizar, J., & Bentler, P. M. (2013). 전게서.

-Routt, G. & Anderson, L. (2011). 전게서. p.14.

-Paterson, R., Luntz, H., Perlesz, A., & Cotton, S. Adolescent Violence towards Parents: Maintaining Family Connections When The Going Gets Tough. Australian & New Zealand Journal of Family Therapy, 23(2), 90-100.



## [부모폭력의 전반적인 특성]<sup>21)</sup>

### ○ 통제와 지배권

- 폭력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은 부모가 취약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권력이 없다고 인식함
- 청소년들은 부모에게서 권력을 빼앗아 의사결정을 통제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함.

### ○ 부모의 대처

- 부모폭력 피해 부모는 수치심과 사회적 고립이 결합되어 절망적으로 느끼게 됨.
-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폭력을 부정하기도 함.

### ○ 폭력의 양상

- 가정폭력의 행위자들은 도구적 폭력(instrumental violence)과 충동적 폭력(impulsive violence)을 사용하는 것으로 특징 지어짐.
- 도구적 폭력은 부모에 의해서 공격적 행동이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으로서 기능한다는 경험을 이전에 보았거나 습득한 경우에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임.
- 충동적 폭력은 부모가 한 어떠한 행위가 자녀가 느끼기에 개인적 공격으로 느꼈을 때의 충동적 반응인 경우가 많음.

## [피해 부모의 심리적 상황]

- 영국의 18개 온라인 훈육지원 웹사이트에서 자녀에 의해 폭력을 경험한 부모들의 글 33개를 선정하여 분석함<sup>22)</sup>.
- 부모의 부정적 감정은 두려움, 불안, 분노, 수치심, 절망, 상처, 배신, 죄책감 등이었음.

---

21) Routt, G. & Anderson, L. (2011). 전게서. pp.10-11.

22) Holt, A. (2011). 'The terrorist in my home': teenagers' violence towards parents - constructions of parent experiences in public online message board. Child & Family Social Work, 16, 454-463.

○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

“언젠가 자식이 폭발해버리고 말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모든 폭력 하나하나가 점점 심해지고 있었어요”

○ 부모로서의 죄책감, 수치심

“자식을 나쁜 아이로 키운 나는 나쁜 부모예요”

“나는 실패한 부모입니다”

“그러면 안되는 줄 알지만 아이를 미워합니다”

○ 무력감, 절망감

“나는 그저 앉아서 침묵 속에서 고통을 견뎌니다”

“아주 작은 자극에도 분노하는 통제가 불가능한 아이예요”

#### 4. 개입방안

##### 1) 결과보다 과정에, 개인보다 관계에 주목

부모에 대한 폭력행위는 여타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행위자인 자녀의 책임이지만 가정 내 권력구조와 위계로 보았을 때 미성년 자녀의 부모폭력은 다른 메카니즘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와 임상에서 부모폭력의 가장 큰 요인으로 가정폭력 경험과 부모의 양육방식을 꼽고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부모폭력이 특별히 문제가 있는 일부 가정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부모폭력을 유발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부모폭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피해자인 부모들에게 이러한 접근을 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다.

더구나 미성년 자녀의 폭력이 발생한 초기에 도움을 요청하는 부모는 거의 없다. 반항, 버릇없음, 욕구불만, 욕하는 성질, 학업 스트레스, 사춘기 증상 등의 이름을 붙이면서 자녀의 공격적 행동이 부모와는 별개인 자녀만의 것으로 치부하기 쉽다. 부모폭력을 자녀 개인의 문제로 간주할 때 부모는 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고 폭력은 심화된다.

그동안 배우자폭력이나 자녀학대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고 다양한 제도와 치료적 개입이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문제를 은폐하지 않고 가정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

하고 관련 연구가 축적된 덕분이다. 아직까지 부모폭력은 사회적으로 인식도 낮고 연구가 매우 미진한 상태이다. 부모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와 행위자를 돕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을 개인에서 가족으로 확대하고 폭력이 발생하고 유지되어 온 과정에 주목하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 2) 부모폭력 특성에 맞는 개입

부모폭력은 배우자폭력이나 자녀학대와 공통점을 가진 동시에 차별된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부모폭력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부모폭력 행위자나 피해자에 특화된 개입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다. 외국에서도 부모폭력 연구가 최근에 와서 활발해졌기 때문에 개입 프로그램은 찾기 힘들다.

미국의 경우 워싱턴 주에서 1998년에 정부 지원으로 미국 최초로 ‘부모폭력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개입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이 프로그램도 초기에는 성인 가정폭력 프로그램을 기초로 개발되었으나 이후 부모-자녀 관계 특성에 맞게 수정 발전되어 미국 전역에서 활용되고 있고 여러 연구에서 효과성이 입증되었다. 앞으로 우리나라 실정과 문화에 맞는 부모폭력 행위자와 피해자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미국의 부모폭력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개입 프로그램 「Step Up」<sup>23)</sup>을 소개한다.

### ○ 프로그램 구조 및 집단별 주제

- 가해 청소년 집단, 피해 부모 집단, 청소년-부모 집단의 세 집단 운영 프로그램
- 21sessions, 주 1회, 회당 90분~120분

---

23) [www.kingcounty.gov/courts/step-up](http://www.kingcounty.gov/courts/step-up)

| 집단 구분 | 주 제                                                                                                                                                                                                                                                                                                                                                                                                                                                            |
|-------|----------------------------------------------------------------------------------------------------------------------------------------------------------------------------------------------------------------------------------------------------------------------------------------------------------------------------------------------------------------------------------------------------------------------------------------------------------------|
| 자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관계에서 학대 vs 존중 이해하고, 인지하기</li> <li>- 폭력을 예방하는 방법</li> <li>- 생각, 감정, 행동에 대한 인식 높이기</li> <li>- 인지, 감정 및 행동 과정 사이의 연결 관계 이해하기. 폭력적 행동으로 이끄는 불필요한 생각과 관념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이해하기</li> <li>- 생각과 감정 조절하기; 침착해지는 기술; 단계적 완화 기술</li> <li>- 감정 이해와 존중하는 소통하는 법 배우기</li> <li>- 가족들과 공감하기</li> <li>- 상처주는 행동에 대해 책임감 갖기</li> <li>- 자신의 삶에서 권력을 가지기 위한 개인의 힘과 긍정적인 방법 인지하기</li> </ul>                                              |
| 부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의 폭력/학대로부터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li> <li>- 권력 싸움으로부터 나오기</li> <li>- 스스로 침착해지고, 감정 조절 능력 기르기</li> <li>- 불필요한 생각과 믿음 바꾸기</li> <li>- 가정에서 리더십을 다시 세우기 위한 양육 기술</li> <li>- 자녀의 행동 변화를 도울 수 있는 양육 기술</li> <li>- 자녀와의 관계 강화시키기</li> </ul>                                                                                                                                                                                   |
| 부모-자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임감, 공감, 고쳐 나갈 것들을 고치고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 부모-자녀 관계 다시 만들기</li> <li>- 주 별로 행동목표를 정해 행동을 스스로 인식하고, 점검하고, 평가하기</li> <li>-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한 기술; 개인적 '안전 계획' 개발하고 사용하기</li> <li>- '학대와 존중의 바퀴(Abuse and Respect Wheels)'를 사용하여 서로 존중하는 가족 모델 만들어가기</li> <li>- 역할극과 그룹 토론을 통하여 서로 존중하는 소통과 문제해결능력 기르기</li> <li>- 자신의 힘과 관계 속에서의 힘을 확인하고 키우기</li> <li>- 다른 가족들의 필요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듣는 능력 키우기</li> <li>- 서로에게 피드백주고, 격려와 지지하기</li> </ul> |

### 3) 경찰의 적절한 대응

가정폭력에서는 경찰의 초동 수사가 매우 중요하다. 현재 가정폭력이 신고되었을 때 경찰관의 전화 응대 및 가정에 출동했을 때의 대응 요령이 있고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부모폭력이 다른 유형의 가정폭력과는 차별적 특성을 갖고 있음을 인식

하고 그에 적절한 대응 수칙을 만들어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로 영국 정부의 “부모폭력 청소년을 위한 가이드”에 소개된 경찰의 대응과 행동강령을 소개한다.<sup>24)</sup>

○ 부모와 청소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 부모들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꺼려함.
- 부모들은 자녀를 범죄자로 만들고 싶지 않음.
- 부모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함.
- 청소년의 다른 문제(예를 들면, 정신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

○ 경찰의 행동강령(Checklists for officers)

|       |                                                                                                                                                                                                                                                                                               |
|-------|-----------------------------------------------------------------------------------------------------------------------------------------------------------------------------------------------------------------------------------------------------------------------------------------------|
| DO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것이 가정폭력임을 기억하라. (일반적 가정폭력 고려 사항들이 적용된다)</li> <li>- 이해심을 보여라.</li> <li>- 적절한 대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부모와 청소년 모두와 따로 이야기 나누어라. (형제, 자매 혹은 조부모가 있다면 다른 가족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어라)</li> <li>- 건강 및 사회 복지 등 적절한 기관에 연락을 취하라.</li> <li>- 다른 지원 요청이 필요한지 고려하라.</li> </ul> |
| DON'T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것이 양육 문제인 것처럼 단정짓지 말라. (이 상황에서 부모는 피해자이다)</li> <li>- 문제를 가볍게 여기거나 농담을 하지 말라</li> <li>- 신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모에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과소평가하지 말라. (가해 청소년이 책임을 인정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li> <li>- 더욱 심각한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조치를 미루지 말라.</li> </ul>                     |

24) Information guide: adolescent to parent violence and abuse (APVA)

## 나가기

니체는 약자도 권력을 추구한다고 말하였다. 누구나 자신이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싶고 이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 자신이 의미있는 중요한 사람으로 존중받고 싶은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열망이며, 자신의 권리와 자유,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느낀다면 비록 그것이 부모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버텨내기 힘들다. 자녀에게 권력과 통제력을 빼앗긴 부모도 마찬가지이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폭력은 하나의 이유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해결책도 하나가 아닐 것이다. 앞으로 많은 조사와 연구, 임상 결과들이 나와서 부모폭력 예방과 치유에 효과적인 해결책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 가정폭력행위자 수탁사건 상담통계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목 차

|                                          |     |
|------------------------------------------|-----|
| 제 1 장 서 론 .....                          | 117 |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                      | 117 |
| 제 2 절 연구의 목적 .....                       | 119 |
| 제 2 장 연구대상 및 방법 .....                    | 120 |
| 제 1 절 연구대상 .....                         | 120 |
| 제 2 절 연구방법 .....                         | 120 |
| 제 3 장 연구결과 .....                         | 121 |
| 제 1 절 2015년 상담이 종결된 가정폭력행위자 상담통계분석 ..... | 121 |
| 1. 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 121 |
| 2. 행위자의 폭력 유형 및 폭력 수준에 따른 분석 .....       | 126 |
| 3. 행위자의 폭력 행사 원인에 따른 분석 .....            | 128 |
| 4. 행위자의 상담요인에 따른 분석 .....                | 131 |
| 제 2 절 변화하는 가정폭력의 양상 .....                | 136 |
| 1. 여성 행위자의 증가 .....                      | 136 |
| 2. 아내의 맞대응 증가 .....                      | 138 |
| 3. 부부폭력시 동거기간별 폭력 발생률 변화 .....           | 140 |
| 4.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폭력 증가 .....                | 143 |
| 5. 경미한 폭력의 증가 .....                      | 148 |
| 제 4 장 결론 및 제언 .....                      | 155 |
|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                      | 155 |
| 제 2 절 논의 및 제언 .....                      | 158 |
| 참고문헌 .....                               | 160 |

## 제 1 장 서론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가정은 사회의 가장 일차적인 기본단위로서 구성원들 간의 친밀감과 상호 지지가 가장 높은 집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정은 구성원들에게 생물학적인 기본욕구를 충족시키고 안락한 휴식처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갈등과 모순을 공유하기도 한다.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갈등이 가장 극단적인 방법으로 표출될 경우 또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에는 가정 또는 가족이라는 의미가 퇴색한 채 입에 담기조차 힘든 ‘친족 간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자주 접할 수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다행히 현 정부에서 가정폭력을 4대악 중 하나로 규정하게 되면서 가정폭력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라는 사실에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가정폭력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 제기와 노력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가정폭력은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이며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부부간의 폭력, 구체적으로는 남편에 의한 아내 폭력에 국한시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 사회적 문제로 언론에 연일 보도되고 있는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 형제자매간의 폭력, 자녀에 의한 부모폭력 등 그 유형도 다양하게 가정폭력이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가족 간의 신뢰가 바닥까지 실추된 것을 입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며,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개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은 객관적인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다. 2013년 여성가족부의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에 의하면 지난 1년 간 부부폭력 발생률<sup>1)</sup>은 45.5%로, 자녀폭

---

1) 여기에서 ‘부부폭력률’은 통제 행위를 제외한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방임, 통제를 포함한다. 통제 행위까지 포함하였을 경우, 부부폭력 발생률은 63.3%이다.

력 발생률<sup>2)</sup>은 46.1%로 나타났으며, 2가구 중 1가구에서 부부사이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다양한 형태로 폭력이 행사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배우자를 제외한 부모, 형제자매 등으로부터 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sup>3)</sup>은 7%로 나타났고, 65세 이상 노인폭력 발생률<sup>4)</sup>은 10.3%로 나타났는데 노인폭력 행위자로는 자녀(아들)인 경우가 47.1%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다<sup>5)</sup>.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가정폭력이 만연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최근 가정법원에서 상담위탁되거나 검찰청에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된 사례들 중에는 남편의 폭력에 맞대응하는 여성 행위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 행위자들이 사회적 관계 또는 아내와의 관계에서 미해결된 스트레스를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해결하려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아버지로부터 폭력을 당한 어머니의 폭력 피해를 보다 못한 자녀가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행위자)의 폭력에 맞대응하는 과정에서 아버지(행위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도 있다. 아내와의 관계와는 별개로 자녀를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여 체벌로 훈육하는 아동학대의 수도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어떠한 경우든 가정내 폭력이 가족구성원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이며, 본 연구를 위한 논의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이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서울가정법원, 부산가정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서울서부지방법검찰청 및 서울남부지방법검찰청으로부터 상담위탁받아 2015년에 상담이 종결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상담통계를 분석함과 동시에,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가정폭력특별법이 올해로 시행 18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가정폭력의 변화된 양상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정폭력특별법 시행 18년이 지나는 오늘, 가정폭력 관련 상담법제를 개선하기 위한 근거자료 및 가정폭력 관련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를 위한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부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가

2) ‘자녀폭력 발생률’은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방임 행위를 포함한다.

3) ‘가족원폭력 발생률’은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을 포함한다.

4) ‘노인폭력 발생률’은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방임을 포함한다.

5) 여성가족부(2013),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133면, 140면, 175면, 190면.

정폭력 상담이 다양한 가족구성원까지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건강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 확립을 위한 가정폭력 상담의 개입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제 2 절 연구의 목적

가정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1998년 7월부터 시행되면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서울가정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등의 가정보호 수탁기관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지정 가정폭력상담소로 위촉되어 2015년 현재까지 행위자의 폭력적인 성향과 습관을 교정하기 위해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상담위탁된 총 행위자 수는 1,249명에 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5년에 상담이 종결된 가정폭력행위자 상담통계를 분석함과 동시에,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가정폭력특별법이 올해로 시행 18주년을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가정폭력의 변화된 양상 등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가정폭력 관련 정책 및 상담의 개입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주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5년도 가정폭력행위자 상담통계를 통해 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폭력유형 및 폭력수준, 상담요인 등을 살펴본다.

둘째, 지난 18년간 변화하는 가정폭력의 양상을 살펴본다.

셋째,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가정폭력 관련 정책 및 예방적 차원의 가정폭력 상담 프로그램의 개입방향을 모색한다.

## 제 2 장 연구대상 및 방법

### 제 1 절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뉘어진다.

첫째, 2015년 본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상담이 종료된 행위자 126명에 대한 항목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항목별 분석에서는 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폭력 유형 및 폭력 수준, 상담요인 등을 살펴보았다.

둘째, 변화하는 가정폭력의 다양한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가정폭력처벌법이 시행된 1998년부터 2015년까지 본 상담소에 상담위탁되어 상담이 종결된 1,124명에 대한 이슈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슈별 특성 분석에는 폭력유형의 변화, 부부폭력시 동거기간별 폭력 발생률의 변화,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변화, 폭력행위의 정도 변화 등을 살펴보았다<sup>6)</sup>.

### 제 2 절 연구방법

본 연구는 1998년부터 2015년까지 상담종결된 행위자에 대하여 각 가정법원으로부터의 상담위탁 보호처분 결정문 및 검찰로부터의 상담위탁카드에 기재된 내용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

6) 1999년부터 2015년까지 특별한 변화를 보이지 않은 항목은 이슈별 특성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 제 3 장 연구결과

### 제 1 절 2015년 상담이 종결된 가정폭력행위자 상담통계분석

#### 1. 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1) 남녀별

행위자 126명의 성별을 보면 남성이 102명(81%), 여성이 24명(19%)이었다. 여성 행위자 중 17명은 부부가 함께 위탁된 경우였다.

〈 표 3-1-1. 성별 분석 〉

| 구 분<br>성 별 | 행 위 자 |        | 피 해 자 |        |
|------------|-------|--------|-------|--------|
|            | 수(명)  | 백분율(%) | 수(명)  | 백분율(%) |
| 남 성        | 102   | 81.0   | 32    | 25.4   |
| 여 성        | 24    | 19.0   | 94    | 74.6   |
| 합 계        | 126   | 100    | 126   | 100    |

##### (2) 연령별

연령별로 보면 행위자의 경우 40대가 35.7%(45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0대(28.6%), 30대(23%)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경우는 40대가 28.6%(36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0대(27%) 순으로 나타났다.

〈 표 3-1-2. 연령별 분석 〉

| 구 분<br>연 령 | 행 위 자     |             | 피 해 자     |             |
|------------|-----------|-------------|-----------|-------------|
|            | 수(명)      | 백분율(%)      | 수(명)      | 백분율(%)      |
| 10 대       | 1         | 0.8         | 7         | 5.6         |
| 20 대       | 3         | 2.4         | 7         | 5.6         |
| 30 대       | 29        | 23.0        | 34        | 27.0        |
| 40 대       | <b>45</b> | <b>35.7</b> | <b>36</b> | <b>28.6</b> |
| 50 대       | 36        | 28.6        | 33        | 26.1        |
| 60대 이상     | 12        | 9.5         | 9         | 7.1         |
| 합 계        | 126       | 100         | 126       | 100         |

### (3) 교육정도별

교육정도를 살펴보면 행위자는 고등학교 졸업이 35%(44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학교 졸업이 42%(33.3%)로 나타났다. 한편 피해자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이 36.5%(46명)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교 졸업이 32.5%(41명)로 나타났다.

〈 표 3-1-3. 교육정도별 분석 〉

| 구 분<br>교육정도 | 행 위 자     |             | 피 해 자     |             |
|-------------|-----------|-------------|-----------|-------------|
|             | 수(명)      | 백분율(%)      | 수(명)      | 백분율(%)      |
| 초졸이하        | 11        | 8.7         | 16        | 12.7        |
| 중 졸         | 14        | 11.1        | 15        | 11.9        |
| 고 졸         | <b>44</b> | <b>35.0</b> | <b>46</b> | <b>36.5</b> |
| 전문대졸        | 4         | 3.2         | 2         | 1.6         |
| 대 졸         | 42        | 33.3        | 41        | 32.5        |
| 대학원이상       | 11        | 8.7         | 6         | 4.8         |
| 합 계         | 126       | 100         | 126       | 100         |

#### (4) 직업별

행위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회사원이 27.8%(35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영업이 20.6%(26명)을 차지했다. 피해자의 경우에는 주부가 35%(44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회사원과 단순노무가 각 19%(각 24명)를 차지하였다.

〈 표 3-1-4. 직업별 분석 〉

| 구 분<br>직 업 | 행 위 자     |             | 피 해 자     |             |
|------------|-----------|-------------|-----------|-------------|
|            | 수(명)      | 백분율(%)      | 수(명)      | 백분율(%)      |
| 주 부        | 15        | 11.9        | <b>44</b> | <b>35.0</b> |
| 회사원        | <b>35</b> | <b>27.8</b> | 24        | 19.0        |
| 단순노무       | 25        | 19.8        | 24        | 19.0        |
| 자영업        | 26        | 20.6        | 20        | 15.9        |
| 교육직        | 2         | 1.6         | 2         | 1.6         |
| 기술직        | 5         | 4.0         | -         | -           |
| 운전         | 6         | 4.8         | -         | -           |
| 학생         | 2         | 1.6         | 8         | 6.3         |
| 무직         | 10        | 7.9         | 4         | 3.2         |
| 합 계        | 126       | 100         | 126       | 100         |

#### (5) 경제상태별

월수입을 기준으로 경제상태를 살펴보면, 행위자의 경우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경우가 33.3%(42명)로 가장 많았다. 피해자의 경우에는 월수입이 없거나 그 액수를 알 수 없는 경우가 42.2%(53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1-5. 경제상태별 분석 〉

| 구 분<br>월 수 입        | 행 위 자     |             | 피 해 자     |             |
|---------------------|-----------|-------------|-----------|-------------|
|                     | 수(명)      | 백분율(%)      | 수(명)      | 백분율(%)      |
| 100만원 미만            | 9         | 7.1         | 11        | 8.7         |
|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19        | 15.1        | 24        | 19.0        |
|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b>42</b> | <b>33.3</b> | 24        | 19.0        |
|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 19        | 15.1        | 9         | 7.1         |
| 500만원 이상            | 14        | 11.1        | 5         | 4.0         |
| 일정한 수입이 없음          | 23        | 18.3        | <b>53</b> | <b>42.2</b> |
| 합 계                 | 126       | 100         | 126       | 100         |

#### (6)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행위자와 피해자가 법률혼 부부인 경우가 94명으로 74.6%를 차지하였다. 부부관계가 아닌 부모-자녀 관계 또는 남매 관계인 경우가 15.1%(19명)을 차지하였다.

〈 표 3-1-6.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분석 〉

| 구 분<br>관 계 | 수 (명)     | 백분율(%)      |
|------------|-----------|-------------|
| 법률혼 부부     | <b>94</b> | <b>74.6</b> |
| 사실혼 부부     | 11        | 8.7         |
| 남녀 관계      | 2         | 1.6         |
| 부모-자녀 관계   | 18        | 14.3        |
| 남매 관계      | 1         | 0.8         |
| 합 계        | 126       | 100         |

## (7) 혼인형태별

행위자와 피해자의 혼인형태를 보면, 남녀 모두 초혼인 경우가 62.7%(79명)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 어느 한쪽이 재혼이거나 모두 재혼인 경우도 20.6%(26명)을 차지하였다.

〈 표 3-1-7. 혼인형태별 분석 〉

| 구 분<br>혼 인 형 태 | 수(명) | 백분율(%) |
|----------------|------|--------|
| (남)초혼-(여)초혼    | 79   | 62.7   |
| (남)재혼-(여)초혼    | 3    | 2.4    |
| (남)초혼-(여)재혼    | 12   | 9.5    |
| (남)재혼-(여)재혼    | 11   | 8.7    |
| (남)유부남-(여)이혼녀  | 2    | 1.6    |
| 해당사항 없음        | 19   | 15.1   |
| 합 계            | 126  | 100    |

## (8) 동거기간별

행위자와 피해자의 동거기간을 살펴보면, 동거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가 33.3%(42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5년 이상 10년 미만이 17.5%(22명)를 차지하였다. 가족생활주기로 살펴보았을 때,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동거기간은 자녀양육이 주관심사가 되는 시기로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최하점에 도달하는 시점이다. 따라서 부부간 신뢰가 없거나 의사소통 미숙 등으로 부부관계를 재정립하지 못했을 때 갈등이 발생하면 폭력이 행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동거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는 32.5%(41명)로 나타났는데, 혼인기간이 오래된 부부는 부부갈등이 오랜 기간 미해결상태로 축적되었을 때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표 3-1-8. 동거기간별 분석 〉

| 구 분<br>동 거 기 간  | 수(명)      | 백분율(%)      |
|-----------------|-----------|-------------|
| 1년 미만           | 6         | 4.8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5        | 11.9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2        | 17.5        |
| 10년 이상 ~ 20년 미만 | <b>42</b> | <b>33.3</b> |
| 20년 이상 ~ 30년 미만 | 21        | 16.6        |
| 30년 이상          | 20        | 15.9        |
| 합 계             | 126       | 100         |

## 2. 행위자의 폭력 유형 및 폭력 수준에 따른 분석

### (1) 폭력유형별

폭력유형별로 살펴보면,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이 65.8%(83명)로 가장 많아 가정폭력 중에서 부부폭력, 특히 아내폭력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표 3-1-9. 폭력유형별 분석 〉

| 구 분<br>폭력유형              | 수(명)      | 백분율(%)      |
|--------------------------|-----------|-------------|
| 남편에 의한 아내 폭력             | <b>83</b> | <b>65.8</b> |
| 아내에 의한 남편 폭력             | 7         | 5.6         |
| 남편에 의한 아내 폭력에 대한 아내의 맞대응 | 14        | 11.1        |
| 아내 및 자녀 폭력               | 3         | 2.4         |
| 자녀 폭력                    | 13        | 10.3        |
| 부모 폭력                    | 5         | 4.0         |
| 남매 간의 폭력                 | 1         | 0.8         |
| 합 계                      | 126       | 100         |

## (2) 폭력행위의 수준

행위자의 폭력행위 수준을 살펴보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가 98.4%(124명)로 가장 많았다.

〈 표 3-1-10. 폭력행위의 수준에 따른 분석 〉

| 구 분<br>폭 력 수 준 | 수(명) | 백분율(%) |
|----------------|------|--------|
|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    | 124  | 98.4   |
| 1주 이상 ~ 5주 미만  | 2    | 1.6    |
| 합 계            | 126  | 100    |

## (3) 폭력행위의 정도

좀 더 구체적으로 행위자의 폭력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폭력정도에 따라 밀치는 수준에서 뺨을 때리는 정도까지인 경미한 폭력과 발이나 주먹으로 때리거나 흉기를 사용하는 등의 심한 폭력으로 구분하였다.

경미한 폭력이 있는 경우는 80.2%(101명)로, 세계 밀치거나 몸을 잡아 흔드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54%(68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심한 폭력이 있는 경우는 70.6%(89명)로,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56.3%(71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를 사정없이 마구 때린 경우가 35.7%(4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칼이나 도끼와 같은 위험한 흉기로 위협하거나 실제로 다치게 한 경우가 24.6%(31명)로 나타났다.

행위자 126명 모두 신체적 폭력과 함께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욕을 하는 등의 언어적 폭력을 동반하였다. 행위자들은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것만 폭력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높는데, 언어적 폭력을 당하는 피해자는 수치감과 모욕감으로 인해 더욱 무기

력해지고 정신적으로 황폐해지기 쉽다.

〈 표 3-1-11. 폭력행위 정도에 따른 분석 〉

| 항 목                               | 폭력동반 유무   |           |
|-----------------------------------|-----------|-----------|
|                                   | 없음(%)     | 있음(%)     |
| <b>언어 폭력</b>                      | -         | 126(100)  |
| 1. 모욕적인 말이나 욕을 했다.                | -         | 126(100)  |
| <b>경미한 폭력</b>                     | 25(19.8)  | 101(80.2) |
| 2.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때리겠다고 위협했다.         | 87(69.0)  | 39(31.0)  |
| 3. 실제로 물건을 던지거나 부셨다.              | 84(66.7)  | 42(33.3)  |
| 4. 배우자를 겨냥해서 물건을 던졌다.             | 89(70.6)  | 37(29.4)  |
| 5. 배우자를 세게 밀치거나 몸을 잡아 흔들었다.       | 58(46.0)  | 68(54.0)  |
| 6. 손바닥으로 뺨이나 다른 곳을 때렸다.           | 82(65.1)  | 44(34.9)  |
| <b>심한 폭력</b>                      | 37(29.4)  | 89(70.6)  |
| 7. 배우자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 55(43.7)  | 71(56.3)  |
| 8. 배우자를 물건(책대, 몽둥이, 골프채 등)으로 때렸다. | 102(81.0) | 24(19.0)  |
| 9. 배우자를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 81(64.3)  | 45(35.7)  |
| 10. 배우자 목을 졸랐다.                   | 109(86.5) | 17(13.5)  |
| 11. 배우자를 칼이나 흉기로 위협했다.            | 95(75.4)  | 31(24.6)  |
| 12. 배우자를 담뱃불로 지지거나 칼이나 흉기로 휘둘렀다.  | 96(76.2)  | 30(23.8)  |

### 3. 행위자의 폭력행사 원인에 따른 분석

#### (1) 폭력행사 원인

행위자가 가정법원의 상담위탁처분 또는 검찰청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된 사건에서의 폭력 행사 원인을 분석한 결과, 가부장적인 사고방식 등 성격차이(32.9%, 77건), 부부간 불신(21.8%, 51건), 음주(17.5%, 41건) 순으로 나타났다(중복 응답 가능 항목임). 위 세 가지 원인은 순위의 차이는 있더라도 행위자 폭력의 주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폭력행사의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가부장적인 사고방식 등 성격차이(32.9%, 77건)로 나타났다. 나와 배우자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 배우자를 비난하고 무시하면서 폭력적인 대화, 특히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성격이 다르다’는 갈등표현의 이면에는 가부장적 사고에 편향된 남편들과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내와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어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이 바로 가족구성원들 간에 불평등한 관계를 조성하고 가정폭력을 심화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초 순종하고 매사 남편 말에 따르던 아내가 어느 순간부터 남편 말에 순종하지 않고 가정보다는 사회생활이나 자신의 인생을 더 중요시 한다는 불만도 갈등의 요인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변화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남성들은 가정 내에서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권력(힘)을 사용하여 배우자를 통제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았다.

둘째, 폭력행사의 원인 중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부부간 불신(21.8%, 51건)이다. 남편의 외도, 상습적인 거짓말 등이 아내로 하여금 남편을 불신하게 만들어 부부갈등이 증폭되면서 남편이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많았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확대되면서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게 되고 폭력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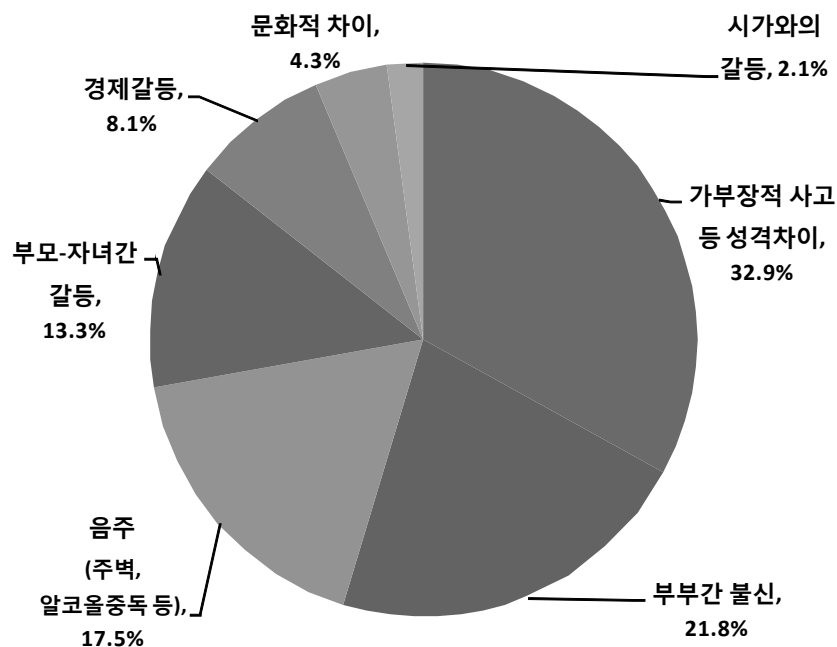
셋째, 폭력행사의 원인 중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음주(17.5%, 41건)로 나타났으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한 경우는 34.4%(32명)에 해당하였다. 술은 인지 능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주변상황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능력을 감소시킴으로써 폭력을 사용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 행위자들은 배우자를 통제하기 위하여 술을 마시고 폭력을 함으로써 폭력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자녀간의 갈등으로 인한 폭력행사는 13.3%(31건)으로 2013년 8.5%(8건), 2014년 12.5%(21건)와 비교했을 때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부모-자녀간의 세부적인 갈등 원인은 제2절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 표 3-1-12. 폭력행사 원인에 따른 분석 〉

| 구 분<br>폭력행사 원인   | 수(건) | 백분율(%) |
|------------------|------|--------|
| 가부장적 사고 등 성격차이   | 77   | 32.9   |
| 부부간 불신           | 51   | 21.8   |
| 음주(주벽, 알코올 중독 등) | 41   | 17.5   |
| 부모-자녀간 갈등        | 31   | 13.3   |
| 경제갈등             | 19   | 8.1    |
| 국가, 언어 등 문화적 차이  | 10   | 4.3    |
| 시가와의 갈등          | 5    | 2.1    |
| 합 계              | 234  | 100    |

※ 중복응답 가능한 항목임.



[ 그림 1. 폭력행사 원인 ]

#### 4. 행위자의 상담요인에 따른 분석

##### (1) 상담대상자별

행위자 본인과 피해자, 그리고 사건 당사자들을 제외한 가족(특히 자녀)이 함께 상담한 경우가 85.7%(108명)을 차지하였으며, 행위자 본인만 상담을 한 경우는 14.3%(18명)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상담을 병행하고 있으며, 이는 상담을 통해 대다수의 피해자인 아내가 행위자인 남편의 폭력이 중단되어 관계가 개선될 것을 기대하며 변화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경향을 입증하는 결과이다.

〈 표 3-1-13. 상담대상자별 분석 〉

| 구 분<br>상담대상자          | 수(명)       | 백분율(%)      |
|-----------------------|------------|-------------|
| 행위자 본인상담              | 18         | 14.3        |
| 행위자 본인 · 배우자 또는 자녀 상담 | <b>108</b> | <b>85.7</b> |
| 합 계                   | 126        | 100         |

##### (2) 상담방법별

2015년 본 상담소의 가정폭력행위자 상담은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 음주문제 상담, 집단상담, 교육강좌, 부부캠프, 최종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 등 총 6단계로 진행되었다. 이와 더불어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자조모임인 라오니 모임과 라오니 캠프를 운영하였다.

**1단계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은 행위자의 현재 개인적인 어려움을 파악하고, 성장배경과 이에 따른 어려움을 사정하며,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부관계에서 핵심적인 문제를 사정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개별상담시에는 기초조사를 통한 행위자에 대한 정보 공유, 원가족관계 파악, 가정폭력처벌법 및 법적응절차 안내, 상담에 대한 행위자의 기대를 확인, MBTI 검사 실시, 부부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모색 등을 통하여 폭력의 중단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행동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한다. 나아가 배우자와의 화해조정이 필요한 경우 배우자 상담 또는 부부상담/가족상담을 통하여 조정을 시도한다. 상담횟수는 상담기간 동안 1주일에 1회를 원칙으로 하되, 행위자의 생업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였다. 2015년도에는 1,6515건의 개별상담, 77건의 부부상담, 13건의 가족상담이 실시되었다.

**2단계 음주문제 상담**은 음주문제가 가정폭력 및 부부갈등의 주요원인이 되는 행위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음주문제 상담에서는 음주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행위자의 음주문제를 진단하고 알코올문제 대처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2015년도에 음주문제 상담은 집단상담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월 2회 총 15회 실시하였으며 151명의 행위자가 참석하였다.

**3단계 집단상담**은 관련분야 전문가의 진행에 따라 집단 구성원들과의 토론 및 상호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집단상담**은 집단역동을 통해 자신의 폭력성과 문제행동을 스스로 인식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집단피드백을 통해 상호지지 및 대인관계 기술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지닌다. 2015년도에는 행위자 및 부부를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 뿐만 아니라, 자녀폭력 행위자(부모) 집단상담, 부모폭력 자녀대상 집단상담 등 부부 외 가족구성원간 폭력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집단상담을 별도로 운영하였다. 행위자 집단상담은 매주 목요일 총 44회 실시되었으며, 총 175명이 참석하였다. 부부 및 여성행위자 집단상담은 총 34회 실시되었으며, 총 93명이 참석하였다. 자녀폭력 행위자(부모) 집단상담은 총 8회 실시되어 총 11명 참석하였고, 부모폭력 자녀 대상 집단상담은 총 9회 실시되어 총 4명 참석하였다.

**4단계 교육강좌인 「둥지교실」**은 개별상담이나 집단상담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교육강좌이다. ‘둥지교실’이라는 이름에는 가정폭력과 같은 가족 내 갈등으로 인해 해체 위기에 놓인 가정을 따뜻한 보금자리, 즉 ‘둥지’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본 상담소의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 「둥지교실」은 행위자 자신에

대한 통찰뿐만 아니라 행위자에게 영향을 미친 가족, 사회, 문화 환경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주제를 다룸으로써 첫째, 가정폭력 행위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둘째, 가정폭력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및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이해하고, 셋째, 바람직한 배우자 역할에 대한 이해를 통해 건강한 결혼생활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탐색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015년도에는 비폭력대화 및 분노조절 기법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주제로 총 10회의 동지교실 교육강좌가 실시되었으며 총 393명이 참석하였다.

**5단계 부부캠프**는 진행되어온 상담을 토대로 부부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여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고 부부 및 가족원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1박2일(주말)에 걸쳐 실시되는 프로그램이다. 2015년에는 4월과 10월에 2차례의 캠프를 개최하였으며 행위자 부부 41쌍과 그 자녀 42명 등 총 124명이 참석하였다. 부부캠프를 통하여 부부갈등에 내재된 원인 및 자신을 이전과 다른 시각으로 돌아보며 분석해보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으며, 상담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사후관리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있다.

**6단계 최종 개별상담/부부상담**은 6개월의 상담위탁기간 동안 일련의 상담 프로그램을 수료한 후, 폭력인식에 대한 재검토를 하고 미래의 계획을 세우며,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변화의 의지를 다지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최종 개별상담은 상담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1회, 1시간 진행되고 있다. 2015년도에는 총 253명의 행위자 및 그 배우자가 최종 개별상담을 통하여 폭력중단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약속하였다.

**가정폭력피해여성 자조모임인 라오니모임**은 지속적인 모임을 통해 가정폭력의 재발가능성을 차단하고 현재 시점에서 겪고 있는 부부갈등문제를 나누고 해결방안을 공유하며, 개인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015년도에는 9회의 자조모임이 실시되었고 총 58명이 참석하였다. 특히 2015년 11월에는 라오니모임이 확장된 제1회 라오니 캠프를 진행하였다. 라오니 캠프를 통해 참석자들은 뮤지컬 관람 및 노래 교실 등 문화적 체험, 서로의 근황을 나누는 시간 등을 통해 억압되어 있던 감정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라오니 캠프에는 총 17명의 가정폭력피해여성이 참석하였다.

2015년에 상담이 종료된 126명의 87.3%(110명)에 달하는 행위자가 개별상담뿐만 아니라 교육프로그램, 집단상담 등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본 상담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종합적 서비스의 제공은 행위자에게 단계에 따라 의미있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폭력행위의 교정과 부부관계 회복에 효과적인 개입방법이 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 표 3-1-14. 상담방법별 분석 〉

| 구 분<br>상 담 방 법       | 수(명) | 백분율(%) |
|----------------------|------|--------|
| 개별상담                 | 16   | 12.7   |
| 개별상담 · 교육프로그램        | 26   | 20.6   |
| 개별상담 · 집단상담          | 13   | 10.3   |
| 개별상담 · 교육프로그램 · 집단상담 | 71   | 56.4   |
| 합 계                  | 126  | 100    |

### (3) 상담 종료 이후의 부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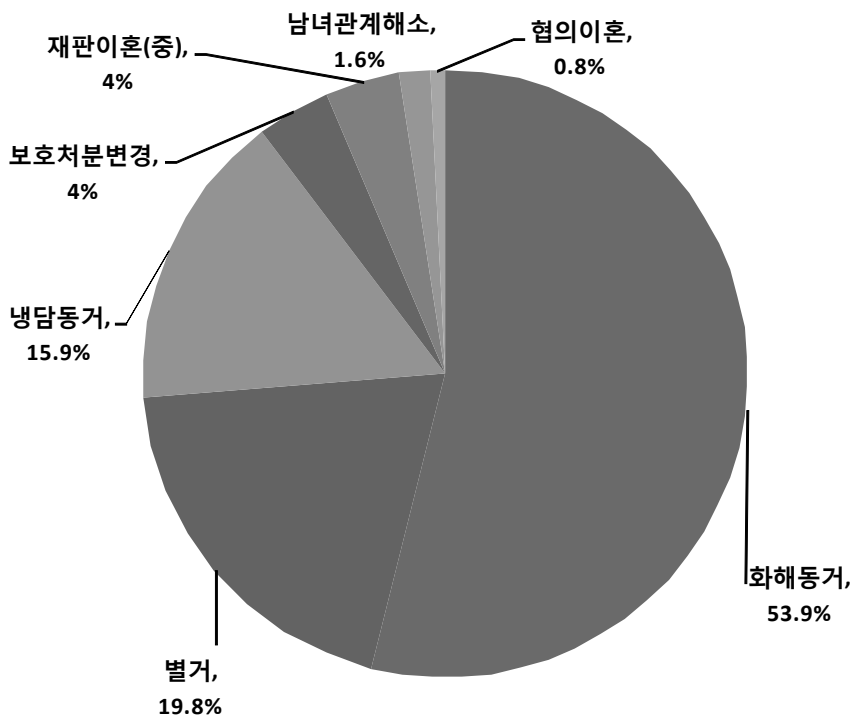
상담 종료 이후의 부부관계를 살펴보면, 부부가 서로 화해하고 동거하는 경우가 53.9%(68명)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별거를 선택한 경우가 19.8%(25명)로 나타났다. 부부가 동거를 결정하였더라도 여전히 냉담한 관계를 유지하는 등 갈등의 여지가 남아있는 부부도 15.9%(20명)로 나타났다. 부부가 냉담한 관계에서 동거를 결정한 경우에는 상담종료 후에도 전화상담 또는 교육 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한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오랜 기간 미해결의 상태로 축적되어온 부부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한 경우도 4.8%(6명)을 차지하였다. 이혼을 통하여 결혼생활을 정리하기로 결정한 경우, 법률정보를 제공하거나 이혼전 교육 프로그램으로 연계함으로써 지금까지의 결혼생활을 점검해보고 특히 배우자와의 갈등이 어떤 문제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혼 외에 대안은 없

는 것인지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표 3-1-15. 상담종료 이후의 부부관계 분석 〉

| 구 분         | 수(명) | 백분율(%) |
|-------------|------|--------|
| 상담종료 후 부부관계 |      |        |
| 화해 · 동거     | 68   | 53.9   |
| 별 거         | 25   | 19.8   |
| 냉담 · 동거     | 20   | 15.9   |
| 보호처분 변경     | 5    | 4.0    |
| 재판이혼(중)     | 5    | 4.0    |
| 남녀관계 해소     | 2    | 1.6    |
| 협의이혼        | 1    | 0.8    |
| 합 계         | 126  | 100    |



[ 그림 2. 상담종료 이후의 부부관계 ]

## 제 2 절 변화하는 가정폭력의 양상<sup>7)</sup>

### 1. 여성 행위자의 증가

여성 행위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여성 행위자 총 수는 128명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2014년과 2015년에는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1999년에는 전체 행위자 중 3.2%(1명)에 불과했던 여성 행위자의 수가 2015년에는 19%(24명)로 5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여성 행위자의 증가를 단순히 남성 피해자의 증가로 단정지어서 판단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가부장적인 사회 문화 속에서 과거 여성들은 폭력을 당해도 ‘참아야지’, ‘내가 잘 하면 남편이 변하겠지’ 등 왜곡된 인식으로 그 상황을 소극적으로 대처하며 견디어 왔다면, 최근 여성들은 공권력에 도움을 구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성 행위자의 대부분은 과거 폭력의 피해자였으며, 남편의 폭력에 대한 방어나 반격, 혹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행위이거나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공격적인 행동인 폭력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진다<sup>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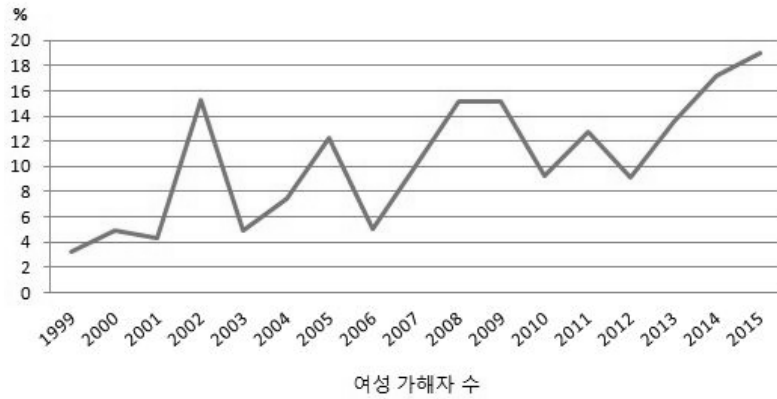
---

7) 1998년부터 2015년까지 상담위탁되어 상담종결된 1,124명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1998년 10월 21일 첫 번째 행위자가 위탁되어 1998년에는 종결된 사건이 없으므로 본 절에 표기되어 있는 모든 표에서는 1998년도를 기재하지 않았다.

8) 여성가족부(2015), 가정폭력 여성 행위자 상담·치료 프로그램 개발 실무자 매뉴얼.

〈 표 3-2-1. 1999-2015년 여성 행위자의 수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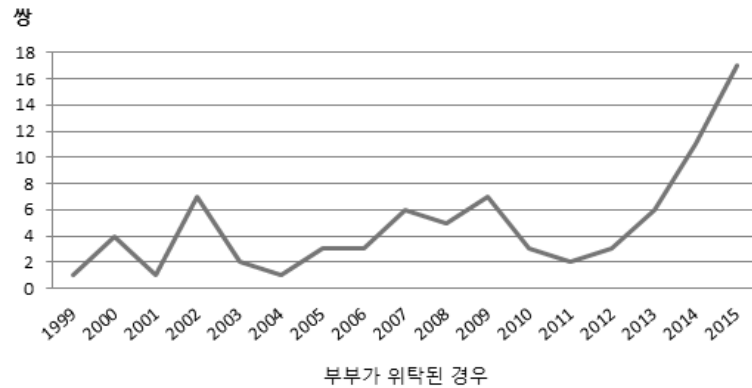
| 연도    | 명(빈도)    |
|-------|----------|
| 1999년 | 1(3.2)   |
| 2000년 | 4(4.9)   |
| 2001년 | 3(4.3)   |
| 2002년 | 9(15.3)  |
| 2003년 | 3(4.9)   |
| 2004년 | 5(7.4)   |
| 2005년 | 7(12.3)  |
| 2006년 | 3(5.0)   |
| 2007년 | 9(10.0)  |
| 2008년 | 8(15.1)  |
| 2009년 | 10(15.2) |
| 2010년 | 7(9.3)   |
| 2011년 | 7(12.7)  |
| 2012년 | 4(9.1)   |
| 2013년 | 8(13.6)  |
| 2014년 | 16(17.2) |
| 2015년 | 24(19.0) |
| 합계    | 128명     |



여성 행위자의 증가는 부부가 함께 위탁된 수의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999년 1쌍의 부부가 위탁되었던 것에 비해 2015년에는 17쌍의 부부가 위탁되어 17배 증가하였다. 이는 아래 〈표 3-2-3〉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남편에 의한 아내 폭력에 대하여 아내가 맞대응한 비율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 표 3-2-2. 1999-2015년 부부가 위탁된 경우 변화 〉

| 연도    | 쌍   |
|-------|-----|
| 1999년 | 1   |
| 2000년 | 4   |
| 2001년 | 1   |
| 2002년 | 7   |
| 2003년 | 2   |
| 2004년 | 1   |
| 2005년 | 3   |
| 2006년 | 3   |
| 2007년 | 6   |
| 2008년 | 5   |
| 2009년 | 7   |
| 2010년 | 3   |
| 2011년 | 2   |
| 2012년 | 3   |
| 2013년 | 6   |
| 2014년 | 11  |
| 2015년 | 17  |
| 합계    | 82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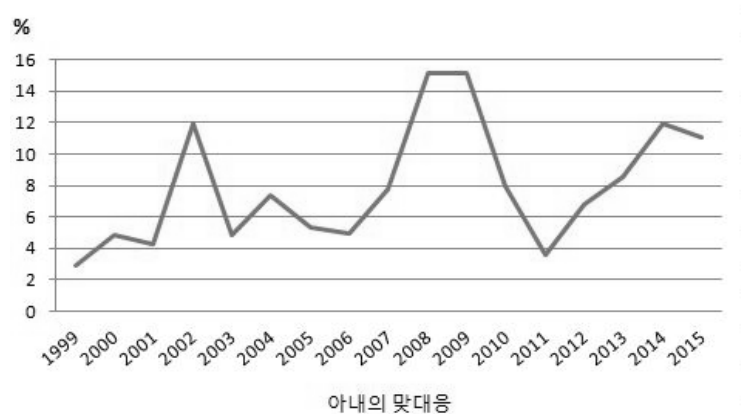


## 2. 아내의 맞대응 증가

남편의 폭력에 아내가 맞대응한 비율이 1999년 2.9%(1명)에서 2015년 11.1%(14명)로 4배 이상 증가하였다. 과거 남편의 폭력에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는 모습과는 달리, 최근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은 방어를 위한 맞대응을 하고 공권력의 개입을 통해 행위자에게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등 폭력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표 3-2-3. 1999-2015년 아내의 맞대응 비율 변화 〉

| 연도    | 명(빈도)             |
|-------|-------------------|
| 1999년 | 1(2.9)            |
| 2000년 | 4(4.9)            |
| 2001년 | 3(4.3)            |
| 2002년 | 7(11.9)           |
| 2003년 | 3(4.9)            |
| 2004년 | 5(7.4)            |
| 2005년 | 3(5.3)            |
| 2006년 | 3(5.0)            |
| 2007년 | 7(7.8)            |
| 2008년 | 8(15.1)           |
| 2009년 | 10(15.1)          |
| 2010년 | 6(8.0)            |
| 2011년 | 2(3.6)            |
| 2012년 | 3(6.8)            |
| 2013년 | 5(8.5)            |
| 2014년 | 11(11.9)          |
| 2015년 | 14(11.1)          |
| 합계    | 95명 <sup>9)</sup> |



## 2-1. 아내의 맞대응 원인

남편의 폭력에 대하여 아내의 맞대응이 있었던 95명의 경우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남편의 외도경험으로 인해 부부간의 신뢰가 무너진 경우이다(44.2%). 현재까지 여자문제가 진행 중이거나, 과거에 있었던 여자문제가 정리되었지만 아내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아서 부부관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 남편의 외도, 이로 인한 상습적인 거짓말은 아내로 하여금 보복적인 심리로 인해 폭력의 동기를 촉진시켜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였을 때 맞대응하게 하였다.

둘째, 남편의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해 아내에 대한 통제가 가해진 경우이다

9) <표 3-2-2>에서 제시하고 있는 1999년부터 2015년까지 부부가 위탁된 총 수(82명)와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부부간 상호 폭력이 있었음에도 남편의 폭력에 맞서 맞대응한 아내만 상담위탁된 경우(13명)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36.2%). 아내를 통제하기 위하여 남편은 아내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일방적으로 폭언을 퍼붓거나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고, 외출시간이나 만나는 사람을 제한하였으며,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경제적인 통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남편의 통제에 대한 반격으로 아내는 자신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남편의 폭력에 맞서 대응하였다.

셋째, 남편의 음주문제로 인해 지속적인 갈등이 있었던 경우이다(12.3%). 술은 주변상황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능력을 감소시킴으로써 폭력을 사용하게 만들고, 공격성 또한 증가시키기 때문에 술을 마신 후 폭력을 행사하기 쉽다. 음주로 인해 지극히 자기중심적이 되고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배려가 없으며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약해진 남편에 대한 분노, 혹은 공격적인 상황에 대한 두려움으로 음주상태에서의 남편의 폭력에 맞대응하였다.

〈 표 3-2-4. 아내의 맞대응 원인 〉

| 구 분<br>아내 맞대응 원인       | 수(건) | 백분율(%) |
|------------------------|------|--------|
| 남편의 외도 등 여자문제          | 61   | 44.2   |
| 남편의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한 통제 | 50   | 36.2   |
| 남편의 음주문제               | 17   | 12.3   |
| 자녀와 관련된 문제             | 6    | 4.4    |
| 시가와의 갈등                | 4    | 2.9    |
| 합 계                    | 138  | 100    |

※ 중복응답 가능한 항목임.

### 3. 부부폭력시 동거기간별 폭력 발생률 변화

행위자와 피해자의 동거기간을 살펴보았을 때 동거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와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점차 그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동거기간이 5년 미만으로 비교적 동거기간이 짧은 경우와

30년 이상으로 동거기간이 오래된 경우는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 표 3-2-5. 1999-2015년 동거기간 연도별 비교 〉

| 구 분             | 명(%)         |                            |              |                            |              |                            |              |              |
|-----------------|--------------|----------------------------|--------------|----------------------------|--------------|----------------------------|--------------|--------------|
|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 1년 미만           | 0            | -                          | 1<br>(1.5)   | -                          | 1<br>(1.6)   | -                          | 4<br>(7.8)   | 3<br>(5.0)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br>(3.6)   | 8<br>(10.0)                | 8<br>(11.9)  | 4<br>(7.4)                 | 5<br>(8.2)   | 8<br>(11.8)                | 8<br>(15.7)  | 15<br>(25.0)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br>(3.6)   | 16<br>(20.0)               | 15<br>(22.4) | 10<br>(18.5)               | 10<br>(16.4) | 21<br>(30.9)               | 5<br>(9.8)   | 9<br>(15.0)  |
| 10년 이상 ~ 20년 미만 | 12<br>(42.9) | 32<br>(40.0)               | 26<br>(38.8) | 28<br>(51.8)               | 20<br>(32.8) | 19<br>(27.9)               | 22<br>(43.1) | 18<br>(30.0) |
| 20년 이상 ~ 30년 미만 | 13<br>(46.3) | 19<br>(23.8)               | 15<br>(22.4) | 8<br>(14.8)                | 18<br>(29.5) | 13<br>(19.1)               | 7<br>(13.7)  | 11<br>(18.3) |
| 30년 이상          | 1<br>(3.6)   | 5<br>(5.0)                 | 2<br>(3.0)   | 1<br>(1.9)                 | 7<br>(11.5)  | 6<br>(8.8)                 | 5<br>(9.8)   | 4<br>(6.7)   |
| 합계              | 28<br>(100)  | 80 <sup>10)</sup><br>(100) | 67<br>(100)  | 54 <sup>11)</sup><br>(100) | 61<br>(100)  | 68 <sup>12)</sup><br>(100) | 51<br>(100)  | 60<br>(100)  |

| 구 분             | 명(%)         |              |              |              |              |              |              |              |              |
|-----------------|--------------|--------------|--------------|--------------|--------------|--------------|--------------|--------------|--------------|
|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 1년 미만           | 1<br>(1.1)   | -            | 3<br>(4.5)   | 1<br>(1.3)   | 2<br>(3.6)   | 1<br>(2.3)   | -            | 1<br>(1.1)   | 6<br>(4.8)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2<br>(13.3) | 8<br>(15.1)  | 13<br>(19.7) | 9<br>(12.0)  | 7<br>(12.7)  | 6<br>(13.6)  | 17<br>(28.8) | 16<br>(17.2) | 15<br>(11.9)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br>(23.3) | 3<br>(5.7)   | 7<br>(10.6)  | 8<br>(10.7)  | 9<br>(16.4)  | 7<br>(15.9)  | 4<br>(6.8)   | 17<br>(18.3) | 22<br>(17.5) |
| 10년 이상 ~ 20년 미만 | 27<br>(30.0) | 20<br>(37.7) | 23<br>(34.8) | 21<br>(28.0) | 17<br>(30.9) | 19<br>(43.2) | 10<br>(16.9) | 29<br>(31.2) | 42<br>(33.3) |
| 20년 이상 ~ 30년 미만 | 24<br>(26.7) | 18<br>(34.0) | 14<br>(21.3) | 23<br>(30.7) | 15<br>(27.3) | 5<br>(11.4)  | 19<br>(32.2) | 18<br>(19.3) | 21<br>(16.6) |
| 30년 이상          | 5<br>(5.6)   | 4<br>(7.5)   | 6<br>(9.1)   | 13<br>(17.3) | 5<br>(9.1)   | 6<br>(13.6)  | 9<br>(15.3)  | 12<br>(12.9) | 20<br>(15.9) |
| 합계              | 90<br>(100)  | 53<br>(100)  | 66<br>(100)  | 75<br>(100)  | 55<br>(100)  | 44<br>(100)  | 59<br>(100)  | 93<br>(100)  | 126<br>(100) |

1년 미만 동거기간의 경우 1999년에는 전혀 없었으나 2015년에는 4.8%(6명)로 5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1년 이상 5년 미만의 동거기간의 경우 1999년 3.6%(1명)에

10) 무응답 1명(1.2%)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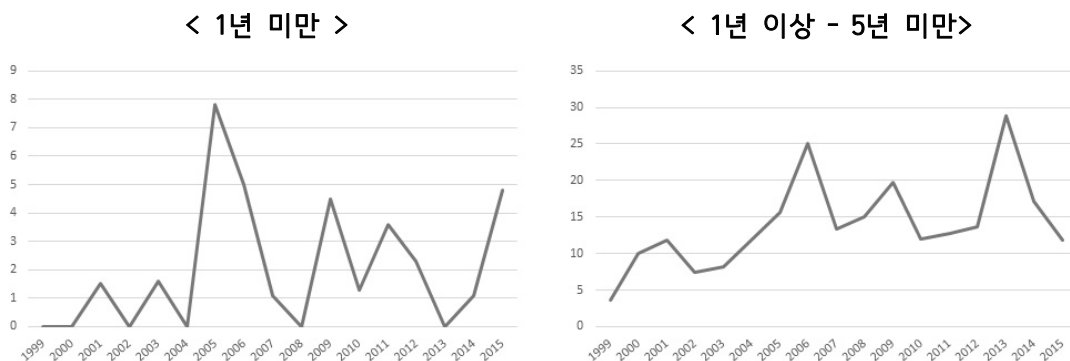
11) 무응답 3명(5.6%) 포함.

12) 무응답 1명(1.5%)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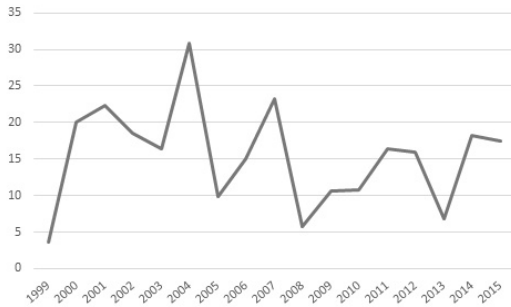
비해 2013년 28.8%(17명)로 8배 증가하여 공권력의 개입을 요청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년 미만의 동거기간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공권력의 개입을 비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행위자의 측면에서는 결혼 초기에 갈등이 생겼을 때 배우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갈등을 극복하는 노력보다는 극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피해자의 측면에서는 막연히 참고 배우자가 변화하기를 기대하는 모습에서 벗어나 폭력초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자신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받고자 하는 경향이 증가한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30년 이상 동거기간의 경우 1999년 3.6%(1명)에 비해 2015년 15.9%(20명)로 4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노년이혼이 해마다 증가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과거 30년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한 노년세대는 자신들의 행복과 안녕보다는 자식의 미래와 가족 공동체의 안정에 초점을 두었다면, 점차 자신의 안전한 노후와 행복을 중요시하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양육에만 주관심을 기울이다가 부부관계를 재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생활이 지속될 경우, 오랜기간 미해결상태로 축적되어 온 부부갈등이 폭력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증가하는데, 여성 노인이 자신의 생존과 안전을 위하여 공권력의 개입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영되었다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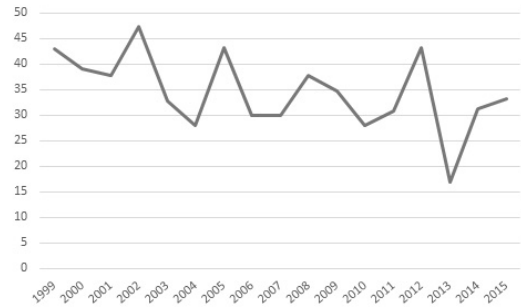
〈 표 3-2-6. 1999-2015년 동거기간 항목별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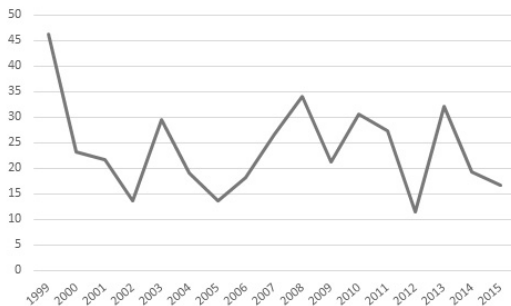
< 5년 이상 - 10년 미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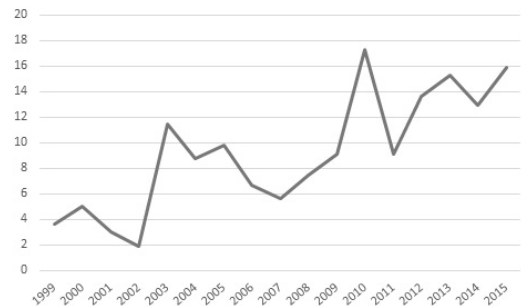
< 10년 이상 - 20년 미만 >



< 20년 이상 - 30년 미만 >



< 30년 이상 >



#### 4.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폭력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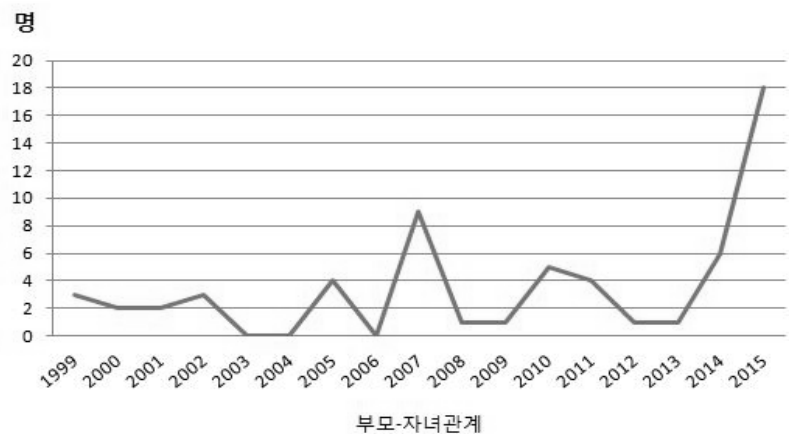
부부관계가 아닌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폭력 또한 증가하는 추세로,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부부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가족구성원 전체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위탁된 행위자 중 부모자녀 관계에서 폭력이 발생한 경우는 총 60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에는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1999년에는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중 부모자녀 관계가 8.8%(3명)이었는데 2015년에는 14.3%(18명)로 1.5배 이상 증가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부모는 자식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부모자녀 관계는 다른 서구 사회보다 더욱 친밀하고 결속력이 강하다. 특히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이 강한 우리

사회에서 부모는 자식을 독립된 개체 또는 인격체로 인정하기 보다는 동일체<sup>13)</sup>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서 자신의 틀에서 벗어난 말과 행동을 하게 될 경우 폭력으로 다스리고자 한다. 아동 청소년기에는 이러한 수직적인 부모자녀 관계에 순응하였다 하더라도 성년이 되면서 이에 대한 분노는 공격성으로 이어져 무의식적으로 가정 내에서 학습되어진 폭력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표 3-2-7. 1999-2015년 부모자녀 관계의 수 변화 〉

| 연도    | 명(빈도)    |
|-------|----------|
| 1999년 | 3(8.8)   |
| 2000년 | 2(2.4)   |
| 2001년 | 2(2.9)   |
| 2002년 | 3(5.1)   |
| 2003년 | -        |
| 2004년 | -        |
| 2005년 | 4(7.0)   |
| 2006년 | -        |
| 2007년 | 9(10.0)  |
| 2008년 | 1(1.9)   |
| 2009년 | 1(1.5)   |
| 2010년 | 5(6.7)   |
| 2011년 | 4(7.3)   |
| 2012년 | 1(2.3)   |
| 2013년 | 1(1.7)   |
| 2014년 | 6(6.5)   |
| 2015년 | 18(14.3) |
| 총 계   | 60명      |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폭력은 4가지 관계 유형 즉 ① 부모의 미성년 자녀 폭력(아동학대), ② 부모의 성년 자녀 폭력, ③ 성인 자녀의 부모폭력, ④ 미성년 자녀의 부모 폭력으로 나눌 수 있었으며, 각 관계 유형에서 폭력의 발생 원인은 다음과 같다.

13) 최상진 (2011년). 한국인의 심리학. 학지사.

#### 4-1. 부모의 자녀폭력

##### ① 부모의 미성년 자녀 폭력(아동학대)

부모자녀 관계에서 폭력이 발생한 60건 중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는 28건(46.7%)으로 나타났다. 이중 24건(85.7%)은 아버지가 행위자였고, 4건(14.3%)<sup>14)</sup>은 어머니가 행위자였다.

이들 부모는 경찰 및 법원에서의 조사과정, 상담과정에서 자녀를 학대한 것이 아니라 훈육 차원에서 체벌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공통점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의 문제행동(잘은 거짓말, 게임중독, 잦은 가출과 외박 등 비행행동 등)을 이유로 훈육 차원에서 과도한 체벌을 한 점이다(34.9%). 위험한 가위로 자녀의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야구 방망이를 사용해 수회 때리는 등 훈육 차원에서 체벌을 했다고 볼 수 없는 과한 행동이 대부분이었다. 둘째, 부모 자신의 술 문제로 인해 음주 후 자녀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부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많았는데(27.9%), 이 경우 아내의 폭력도 동반하였다. 셋째, 부부가 불화한 가운데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쌓이고 해결되지 못한 스트레스를 배우자에게 직접 표현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적 약자인 자녀의 학습이나 생활 태도 등을 지적하면서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이다(23.3%). 한편 이혼한 후 자녀를 양육하면서 과도한 책임감이 자녀에 대한 폭력으로 나타난 경우도 있었다(13.9%).

---

14) 계모 1건 포함시킴.

〈 표 3-2-8. 부모의 미성년 자녀 폭력행사 원인 〉

| 구 분<br>폭력 행사 원인    | 수(건) | 백분율(%) |
|--------------------|------|--------|
| 자녀의 비행행동을 이유로 한 훈육 | 15   | 34.9   |
| 부모의 음주문제           | 12   | 27.9   |
| 부부불화로 인한 스트레스      | 10   | 23.3   |
| 이혼후 자녀에 대한 과도한 책임감 | 6    | 13.9   |
| 합 계                | 43   | 100    |

## ② 부모의 성인 자녀 폭력

부모자녀 관계에서 폭력이 발생한 60건 중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는 16건(26.7%)으로 나타났다. 이중 15건(93.8%)은 아버지가 행위자였고, 1건(6.3%)은 어머니가 행위자였다.

부모가 성인 자녀의 문제행동(음주, 잦은 외박, 아버지에 대한 불손한 태도, 동성애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39.3%), 부모 자신의 술 문제로 인해 음주 후 자녀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부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경우도 있었다(32.1%). 그리고 부모에게 의존하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 불만이 쌓이면서 부모와 성인 자녀간 갈등이 증폭되면서 발생한 폭력의 문제도 있었다(28.6%).

〈 표 3-2-9. 부모의 성인 자녀 폭력행사 원인 〉

| 구 분<br>폭력 행사 원인 | 수(건) | 백분율(%) |
|-----------------|------|--------|
| 성인 자녀의 문제 행동 지적 | 11   | 39.3   |
| 부모의 음주문제로 인해    | 9    | 32.1   |
| 성인 자녀의 부모의존 불만  | 8    | 28.6   |
| 합 계             | 28   | 100    |

※ 중복응답 가능한 항목임.

## 4-2. 자녀의 부모폭력

### ① 성인 자녀의 부모폭력

부모자녀 관계에서 폭력이 발생한 60건 중 성인자녀가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는 15건(25%)으로 나타났다. 이중 9건(60%)은 아들이 행위자였고, 6건(40%)은 딸이 행위자였다.

대부분의 성인자녀는 어린 시절 지속적인 부모의 폭력을 경험하였고, 현재까지 지속되는 폭력에 불만을 품고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53.1%). 성인이 된 후에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며 부모에게 물질적인 부분을 의존하면서, 음주와 담배 등 중독의 문제로 끊임없이 부모와 갈등상태에 놓여있다가 폭력의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였다(28.1%). 이들의 부모 역시 배우자에 대한 폭력, 음주, 의처증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상호간 복합적인 문제의 마찰로 폭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 표 3-2-10. 성인 자녀의 부모폭력 행사 원인 〉

| 구 분<br>폭력 행사 원인 | 수(건) | 백분율(%) |
|-----------------|------|--------|
| 부모의 지속적인 폭력에 불만 | 17   | 53.1   |
| 부모의 음주문제        | 6    | 18.8   |
| 돈 문제            | 5    | 15.6   |
| 성인자녀의 음주문제      | 4    | 12.5   |
| 합 계             | 32   | 100    |

※ 중복응답 가능한 항목임.

### ② 미성년 자녀의 부모폭력

미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담위탁된 경우는 1건이었고, 아버지와 상호간 폭력으로 함께 위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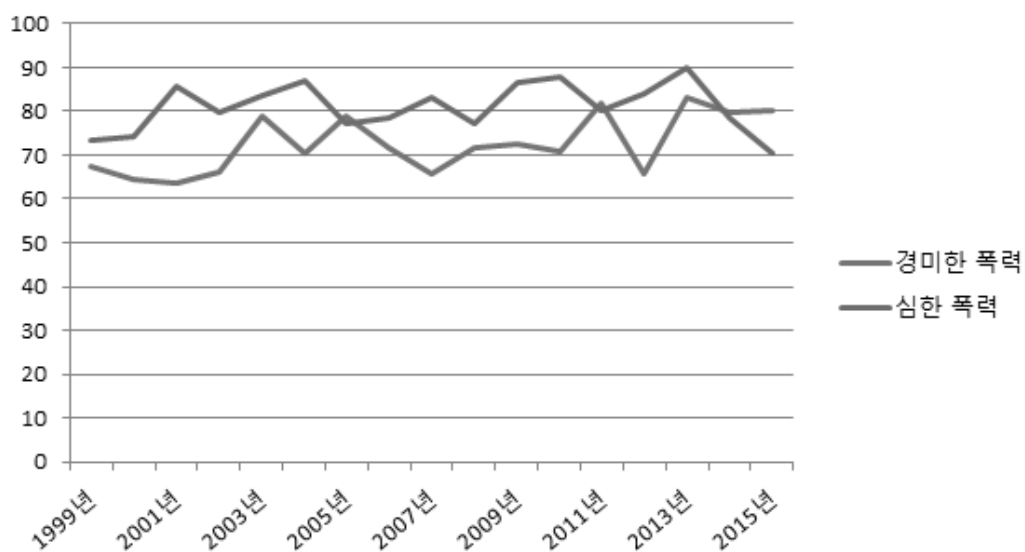


아버지의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성격은 부부간의 불화를 야기하였고, 내성적인 성격의 아들은 불안정한 부부관계로 인한 많은 영향을 받았다. 결혼가정의 친구와 친하게 지내며 컴퓨터 게임에 몰입한다는 이유로 중학교 진학시기 주거지를 이전하여 알고 지낸 친구들이 없는 학교로 진학하게끔 하면서 학교부적응과 등교거부가 시작되었고, 이는 부모와의 적대적인 관계, 게임중독으로의 회피 등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게임을 지속하는 문제로 아버지의 체벌이 이어졌으며, 본건에서는 아버지가 처분이라도 받고 나아졌으면 하는 마음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 5. 경미한 폭력의 증가

행위자의 심한 신체적 폭력에 비해 경미한 신체적 폭력의 비율이 다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피해자가 경미한 신체적 폭력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사회에서 폭력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표 3-2-11. 1999-2015년 경미한 폭력과 심한 폭력 비율 변화 〉



〈 표 3-2-12. 1999-2015년 경미한 폭력과 심한 폭력 연도별 비교 〉

| 구 분                          | 폭력있음 (%)     |              |              |              |              |              |
|------------------------------|--------------|--------------|--------------|--------------|--------------|--------------|
|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 경미한 폭력                       | 23<br>(67.6) | 53<br>(64.6) | 44<br>(63.8) | 39<br>(66.1) | 48<br>(78.7) | 48<br>(70.6) |
| 2.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때리겠다고 위협했다.    | 6<br>(17.6)  | 10<br>(12.2) | 2<br>(2.9)   | 4<br>(6.8)   | 2<br>(3.3)   | 8<br>(11.8)  |
| 3. 실제로 물건을 던지거나 부렸다.         | 5<br>(14.7)  | 7<br>(8.5)   | 2<br>(2.9)   | 6<br>(10.2)  | 1<br>(1.6)   | 8<br>(11.8)  |
| 4. 피해자를 향해 물건을 던졌다.          | 6<br>(17.6)  | 11<br>(13.4) | 7<br>(10.1)  | 8<br>(13.6)  | 12<br>(19.7) | 8<br>(11.8)  |
| 5. 세계 밀치거나 몸을 잡아 흔들었다.       | 13<br>(38.2) | 26<br>(31.7) | 18<br>(26.1) | 19<br>(32.2) | 27<br>(44.3) | 41<br>(60.3) |
| 6. 손바닥으로 뺨이나 다른 곳을 때렸다.      | 5<br>(14.7)  | 17<br>(20.7) | 17<br>(24.6) | 14<br>(23.7) | 15<br>(24.6) | 35<br>(51.5) |
| 심한 폭력                        | 25<br>(73.5) | 61<br>(74.4) | 59<br>(85.5) | 47<br>(79.7) | 51<br>(83.6) | 59<br>(86.8) |
| 7.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 21<br>(61.8) | 51<br>(62.2) | 48<br>(69.6) | 35<br>(59.3) | 46<br>(75.4) | 50<br>(73.5) |
| 8. 물건(책대, 몽둥이, 골프채 등)으로 때렸다. | 10<br>(29.4) | 13<br>(15.9) | 12<br>(17.4) | 6<br>(10.2)  | 3<br>(4.9)   | 14<br>(20.6) |
| 9.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 13<br>(38.2) | 31<br>(37.8) | 33<br>(47.8) | 25<br>(42.4) | 27<br>(44.3) | 33<br>(48.5) |
| 10. 목을 졸랐다.                  | 2<br>(5.9)   | 7<br>(8.5)   | 7<br>(10.1)  | 7<br>(11.9)  | 9<br>(14.8)  | 9<br>(13.2)  |
| 11. 칼이나 흉기로 위협했다.            | 10<br>(29.4) | 19<br>(23.2) | 9<br>(13.0)  | 8<br>(13.6)  | 7<br>(11.5)  | 14<br>(20.6) |
| 12. 담뱃불로 지지거나 칼이나 흉기로 휘둘렀다.  | 10<br>(29.4) | 19<br>(23.2) | 9<br>(13.0)  | 8<br>(13.6)  | 7<br>(11.5)  | 14<br>(20.6) |

| 구 분                          | 폭력있음 (%)                   |                            |                            |                            |                            |                            |
|------------------------------|----------------------------|----------------------------|----------------------------|----------------------------|----------------------------|----------------------------|
|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 <b>경미한 폭력</b>                | <b>45</b><br><b>(78.9)</b> | <b>43</b><br><b>(71.7)</b> | <b>59</b><br><b>(65.6)</b> | <b>38</b><br><b>(71.7)</b> | <b>48</b><br><b>(72.7)</b> | <b>53</b><br><b>(70.7)</b> |
| 2.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때리겠다고 위협했다.    | 4<br>(7.0)                 | 1<br>(1.7)                 | 4<br>(4.4)                 | 5<br>(9.4)                 | 10<br>(15.2)               | 2<br>(2.7)                 |
| 3. 실제로 물건을 던지거나 부셨다.         | 3<br>(5.3)                 | 4<br>(6.7)                 | 3<br>(3.3)                 | 4<br>(7.5)                 | 11<br>(16.7)               | 7<br>(9.3)                 |
| 4. 피해자를 향해 물건을 던졌다.          | 12<br>(21.1)               | 11<br>(18.3)               | 9<br>(8.9)                 | 9<br>(17.0)                | 17<br>(25.8)               | 11<br>(14.7)               |
| 5. 세게 밀치거나 몸을 잡아 흔들었다.       | 29<br>(50.9)               | 32<br>(53.3)               | 36<br>(40.0)               | 26<br>(49.1)               | 29<br>(43.9)               | 33<br>(44.0)               |
| 6. 손바닥으로 뺨이나 다른 곳을 때렸다.      | 11<br>(19.3)               | 8<br>(13.3)                | 21<br>(23.3)               | 18<br>(34.0)               | 11<br>(16.7)               | 15<br>(20.0)               |
| <b>심한 폭력</b>                 | <b>44</b><br><b>(77.2)</b> | <b>47</b><br><b>(78.3)</b> | <b>75</b><br><b>(83.3)</b> | <b>41</b><br><b>(77.4)</b> | <b>57</b><br><b>(86.4)</b> | <b>66</b><br><b>(88.0)</b> |
| 7.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 36<br>(63.2)               | 40<br>(66.7)               | 59<br>(65.6)               | 29<br>(54.7)               | 48<br>(72.7)               | 55<br>(73.3)               |
| 8. 물건(책대, 몽둥이, 골프채 등)으로 때렸다. | 6<br>(10.5)                | 10<br>(16.7)               | 9<br>(10.0)                | 8<br>(15.1)                | 14<br>(21.2)               | 17<br>(22.7)               |
| 9.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 21<br>(36.8)               | 11<br>(18.3)               | 32<br>(35.6)               | 10<br>(18.9)               | 34<br>(51.5)               | 25<br>(33.3)               |
| 10. 목을 졸랐다.                  | 10<br>(17.5)               | 2<br>(3.3)                 | 7<br>(7.8)                 | 4<br>(7.5)                 | 12<br>(18.2)               | 13<br>(17.3)               |
| 11. 칼이나 흉기로 위협했다.            | 9<br>(14.0)                | 5<br>(8.3)                 | 17<br>(18.9)               | 6<br>(11.3)                | 11<br>(16.7)               | 6<br>(8.0)                 |
| 12. 담뱃불로 지지거나 칼이나 흉기로 휘둘렀다.  | 9<br>(14.0)                | 5<br>(8.3)                 | 17<br>(18.9)               | 6<br>(11.3)                | 11<br>(16.7)               | 10<br>(13.3)               |

| 구 분                          | 폭력있음 (%)             |                      |                      |                      |                       |
|------------------------------|----------------------|----------------------|----------------------|----------------------|-----------------------|
|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 <b>경미한 폭력</b>                | <b>45<br/>(81.8)</b> | <b>29<br/>(65.9)</b> | <b>49<br/>(83.1)</b> | <b>74<br/>(79.6)</b> | <b>101<br/>(80.2)</b> |
| 2.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때리겠다고 위협했다.    | 21<br>(38.2)         | 4<br>(9.1)           | 5<br>(8.5)           | 21<br>(22.6)         | 39<br>(31.0)          |
| 3. 실제로 물건을 던지거나 부셨다.         | 17<br>(30.9)         | 10<br>(22.7)         | 6<br>(10.2)          | 21<br>(22.6)         | 42<br>(33.3)          |
| 4. 피해자를 향해 물건을 던졌다.          | 17<br>(30.9)         | 7<br>(15.9)          | 21<br>(35.6)         | 20<br>(21.5)         | 37<br>(29.4)          |
| 5. 세계 밀치거나 몸을 잡아 흔들었다.       | 31<br>(56.4)         | 19<br>(43.2)         | 39<br>(66.1)         | 64<br>(68.8)         | 68<br>(54.0)          |
| 6. 손바닥으로 뺨이나 다른 곳을 때렸다.      | 23<br>(41.8)         | 12<br>(27.3)         | 19<br>(32.2)         | 53<br>(57.0)         | 44<br>(34.9)          |
| <b>심한 폭력</b>                 | <b>44<br/>(80.0)</b> | <b>37<br/>(84.1)</b> | <b>53<br/>(89.8)</b> | <b>73<br/>(78.5)</b> | <b>89<br/>(70.6)</b>  |
| 7.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 29<br>(52.7)         | 34<br>(77.3)         | 46<br>(78.0)         | 55<br>(59.1)         | 71<br>(56.3)          |
| 8. 물건(책대, 몽둥이, 골프채 등)으로 때렸다. | 9<br>(16.4)          | 6<br>(13.6)          | 5<br>(8.5)           | 11<br>(11.8)         | 24<br>(19.0)          |
| 9.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 13<br>(23.6)         | 23<br>(54.5)         | 14<br>(23.7)         | 34<br>(36.6)         | 45<br>(35.7)          |
| 10. 목을 졸랐다.                  | 11<br>(20.0)         | 7<br>(15.9)          | 11<br>(18.6)         | 19<br>(20.4)         | 17<br>(13.5)          |
| 11. 칼이나 흉기로 위협했다.            | 13<br>(23.6)         | 9<br>(20.5)          | 10<br>(16.9)         | 16<br>(17.2)         | 31<br>(24.6)          |
| 12. 담뱃불로 지지거나 칼이나 흉기로 휘둘렀다.  | 14<br>(25.5)         | 7<br>(15.9)          | 8<br>(13.6)          | 15<br>(16.1)         | 30<br>(23.8)          |

경미한 신체적 폭력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본 내용은 아래 <표 3-2-13>에서 제시하고 있다.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때리겠다고 위협했다’, ‘실제로 물건을 던지거나 부셨다’는 항목은 정서적 폭력으로도 분류되어질 수 있다<sup>15)</sup>.

15) 여성가족부(2013)에서 발간한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는 ‘모욕적인 이야기를 해서 기분을 상하게 했다’, 때리려고 위협했다. ‘물건을 파손하였다’는 세 가지 항목을 정서적인 폭력에 포함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모욕적인 이야기를 해서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항목을 언어폭력으로 구분하였다. 행위자의 100%가 언어폭력이 있었음을 밝혀둔다.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때리겠다고 위협했다’는 항목은 2011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였고 2001년 2.9%에 비해 2015년에 31%로 나타나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행위자는 피해자에게 가정 내 위험한 물건이나 피해자에게 중요한 물건을 던지겠다고 위협함으로써 피해자를 통제하려 들었다.

‘실제로 물건을 던지거나 부셨다’는 항목은 2009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였고 2001년 2.9%에 비해 2015년에 33.3%로 나타나 11배 이상 증가하였다. 행위자는 피해자에게 가정 내 위험한 물건이나 피해자가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을 실제로 집어던지거나 부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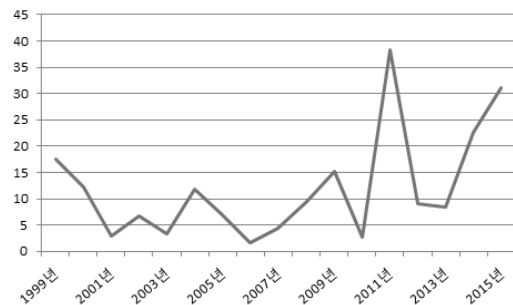
‘피해자를 향해 물건을 던졌다’는 항목 역시 2008년부터 증가하였고 2007년 8.9%에 비해 2015년에 29.4%로 나타나 3배 이상 증가하였다. 행위자는 피해자를 향해 물건을 던짐으로써 피해자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히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표 3-2-13. 1999-2015년 경미한 신체적 폭력의 항목별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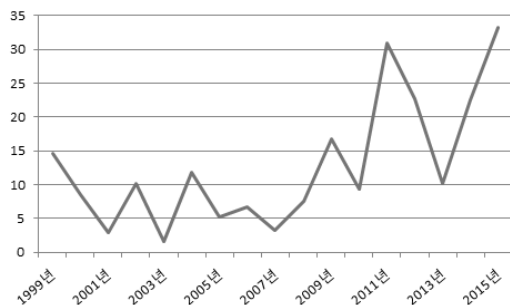
< 경미한 신체적 폭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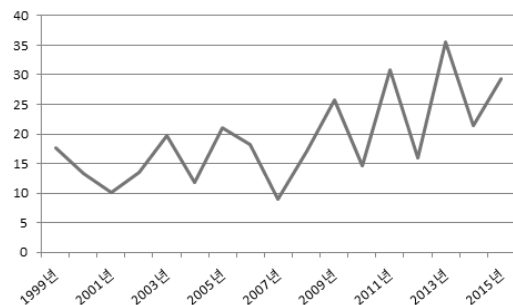
< 2.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때리겠다고 위협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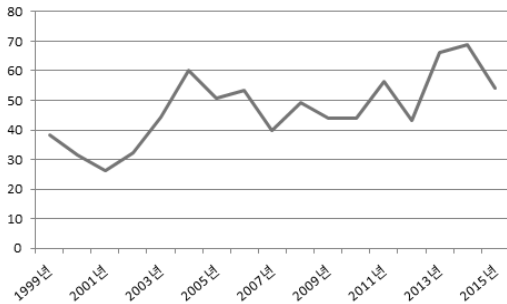
< 3. 실제로 물건을 던지거나 부셨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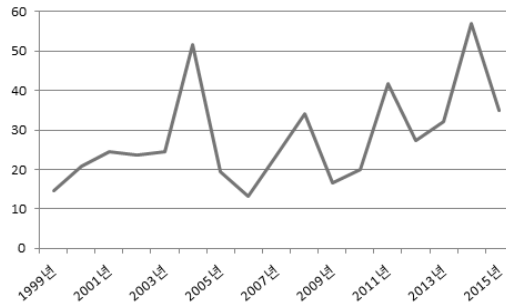
< 4. 물건을 던졌다 >



< 5. 세계 밀치거나 몸을 잡아 흔들었다 >



< 6. 손바닥으로 뺨이나 다른 곳을 때렸다 >



한편 심한 신체적 폭력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본 내용은 아래 <표 3-2-14>에서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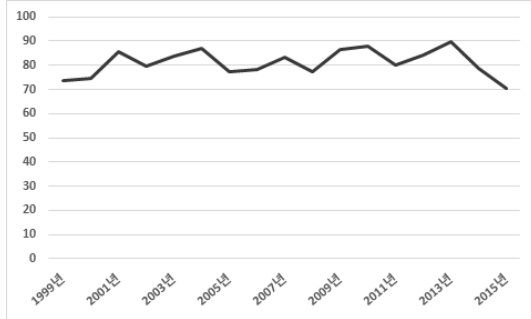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다’는 항목은 심한 신체적 폭력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항목이었는데 2003년 75.4%에 비해 2015년에 56.3%로 나타나 약 1.3배 감소하였다. ‘혁명, 몽둥이, 골프채 등 물건으로 때렸다’는 항목은 2007년에 급격히 감소하였고 1999년 29.4%에 비해 2013년에 8.5%로 나타나 3.5배 가까이 감소하였다. ‘칼이나 흉기로 위협했다’, ‘담뱃불로 지지거나 칼이나 흉기를 휘둘렀다’와 같이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심한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경우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실제로 칼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경우는 1999년 29.4%에 2013년 13.6%로 2배 이상 감소하였다.

행위자의 심한 신체적 폭력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행위자의 입장에서 처벌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로 폭력을 축소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한편, 폭력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개선 및 가정폭력처벌법 시행 결과가 맞물려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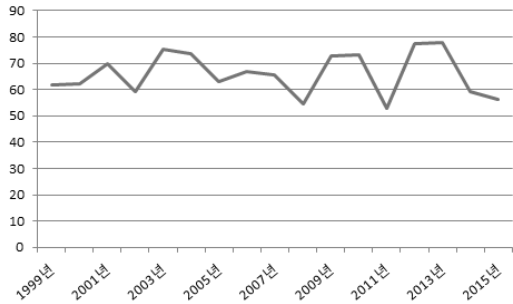
여전히 부부간에 갈등축발시 폭력이 개입되고 있는 점은 문제이고, 경미한 폭력이 점차 심한 폭력으로 변화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개선이 요구된다.

〈 표 3-2-14. 1999-2015년 심한 신체적 폭력의 항목별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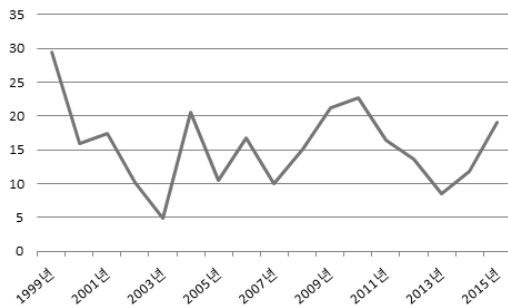
〈 심한 신체적 폭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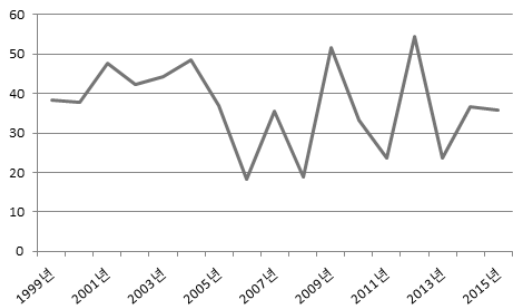
〈 7.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



〈 8. 물건으로 때렸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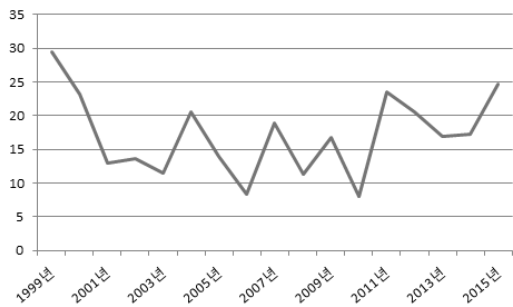
〈 9.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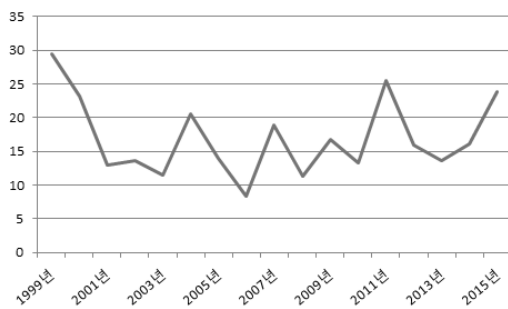
〈 10. 목을 졸랐다 〉



〈 11. 칼이나 흉기로 위협했다 〉



〈 12. 담뱃불로 지지거나  
칼이나 흉기로 휘둘렀다 〉



## 제 5 장 결론 및 제언

###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본소에 상담위탁되어 2015년에 상담이 종결된 가정폭력행위자 상담통계를 분석함과 동시에,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가정폭력특별법이 올해로 시행 18주년을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가정폭력의 변화된 양상 등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가정폭력 관련 정책 및 상담의 개입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위해 1998년부터 2015년까지 상담종결된 행위자에 대하여 각 가정법원으로부터의 상담위탁 보호처분 결정문 및 검찰로부터의 상담위탁카드에 기재된 내용을 분석하였다. 수집되어진 자료를 분석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행위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1999년에는 전체 행위자 중 3.2%에 불과했던 여성 행위자의 수가 2015년에는 19%로 5배 이상 증가하였다. 여성 행위자의 증가는 부부가 함께 위탁된 수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1999년 1쌍의 부부가 위탁되었던 것에 비해 2015년에는 17쌍의 부부가 위탁되어 17배 증가하였다. 여성 행위자의 증가를 단순히 남성 피해자의 증가로 단정짓기 보다는, 여성들의 인식 개선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같은 구조기관 등에서의 교육을 통한 의식의 변화가 자신의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선택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한편 아내의 맞대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남편의 폭력에 대항하여 아내가 맞대응한 비율은 1999년 2.9%에서 2015년 11.1%로 4배 이상 증가하였다. 과거 남편의 폭력에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는 모습과는 달리, 최근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은 방어를 위한 맞대응을 하고 공권력의 개입을 통해 행위자에게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등 폭력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남편의 폭력에 대해 아내의 맞대응이 있었던 경우 그 갈등요인은 남편의 외도, 이로 인한 상습적인 거짓말 등으로 인해 부부간의 신뢰가 무너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44.2%).

둘째, 부부폭력시 행위자와 피해자의 동거기간을 살펴보았을 때 동거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와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의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동거기간이 5년 미만으로 비교적 동거기간이 짧은 경우와 30년 이상으로 동거기간이 오래된 경우는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1년 이상 5년 미만의 동거기간의 경우 1999년 3.6%에 비해 2013년 28.8%로 8배 증가하였다. 5년 미만의 동거기간에서 폭력 발생 비율이 증가하여 이 시기 공권력의 개입을 요청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년 미만의 동거기간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행위자의 측면에서는 결혼 초기에 갈등이 생겼을 때 배우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갈등을 극복하는 노력보다는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고, 또한 피해자의 측면에서는 막연히 참고 배우자가 변화하기를 기대하는 모습에서 벗어나 폭력초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자신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받고자 하는 경향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30년 이상 동거기간의 경우 1999년 3.6%에 비해 2015년 15.9%로 4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노년이혼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과거 30년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한 노년세대는 자신들의 행복과 안녕보다는 자식의 미래와 가족 공동체의 안정에 초점을 두었다면, 점차 자신의 안전한 노후와 행복을 중요시하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양육에만 주관심을 기울이다가 부부관계를 재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 생활이 지속될 경우, 오랜기간 미해결상태로 축적되어 온 부부갈등이 폭력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증가하는데, 여성 노인이 자신의 생존과 안전을 위하여 공권력의 개입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영되었다 할 것이다.

셋째,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부부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가족구성원 전체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위탁된 행위자 중 부모자녀 관계에서 폭력이 발생한 경우는 총 60명으로 나타났는데, 1999년에는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중 부모자녀 관계가 8.8%(3명)인데 반해 2015년에는 14.3%(18명)로 1.5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를 관계 유형으로 살펴보면, ①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는 28건(46.7%)로 아버지가 행위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85.7%). ②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는 16건(26.7%)로 아버지가 행위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93.8%). ③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는 15건(25%)로 아들이 행위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60%). ④ 미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도 1건 존재하였다.

각 관계 유형별로 폭력의 원인을 살펴보면, ①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 자녀의 문제행동(잘못된 거짓말, 게임중독, 잘못된 가출과 외박 등 비행행동 등)을 이유로 훈육의 명분으로 과도한 체벌을 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34.9%). ②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 성인 자녀의 문제행동(음주, 잘못된 외박, 아버지 등에 대한 불손한 태도, 동성애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39.3%). ③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 어린 시절부터 지속되어 온 부모의 폭력에 불만을 품고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53.1%). ④ 미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부부간 불화 가운데 노출되어 부모에 대한 심한 적대감과 폭력의 학습화로 인해 폭력을 행사하였다.

넷째, 행위자의 심한 신체적 폭력에 비해 경미한 신체적 폭력의 비율이 다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때리겠다고 위협했다’는 항목은 2011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였고 2001년 2.9%에 비해 2015년에 31%로 나타나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행위자는 피해자에게 가정 내 위험한 물건이나 피해자에게 중요한 물건을 던지겠다고 위협함으로써 피해자를 통제하려 들었다. ‘실제로 물건을 던지거나 부숴다’는 항목은 2009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였고 2001년 2.9%에 비해 2015년에 33.3%로 나타나 11배 이상 증가하였다. 행위자는 피해자에게 가정 내 위험한 물건이나 피해자가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을 실제로 집어던지거나 부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혔다. ‘피해자를 향해 물건을 던졌다’는 항목 역시 2008년부터 증가하였고 2007년 8.9%에 비해 2015년에 29.4%로 나타나 3배 이상 증가하였다.

행위자의 심한 신체적 폭력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행위자의 입장에서 처벌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로 폭력을 축소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한편, 폭력에 대한 피해자의 의식 개선 및 가정폭력처벌법 시행 결과가 맞물려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여진다.

## 제 2 절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서울가정법원, 부산가정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서울서부지방법검찰청, 및 서울남부지방법검찰청으로부터 상담위탁받아 2015년에 상담이 종결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상담통계를 분석함과 동시에,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가정폭력특별법이 올해로 시행 18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가정폭력의 변화된 양상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여성 행위자와 아내의 맞대응이 증가하고 있으며, 부부폭력시 동거기간이 5년 미만으로 비교적 짧거나 30년 이상으로 비교적 긴 경우에 발생하는 폭력의 비율이 증가하여 이 시기 공권력의 개입을 요청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었으며, 부모자녀 관계에서 폭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행위자의 경미한 신체적 폭력이 증가하여 행위자의 처벌 회피 의도와 피해자 의식 개선 및 법 시행 결과가 맞물려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 가정폭력 상담의 개입방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 근거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현장에서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과 부부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기존의 남성 행위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행위자의 사회문화적 환경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개별화할 뿐만 아니라 여성 행위자에게 적합한 상담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 행위자의 경우 남편의 폭력에 대한 방어나 반격, 혹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행위, 또는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선택한다는 점을 면밀히 고려하여 상담 프로그램을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부부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가정폭력 상담 프로그램을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방적 차원의 상담 프로그램으로 점차 확대해나가고, 더 나아가 건강한 부모-자녀관계 확립을 위해 교육을 통한 의식 변화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개입이 필요하다.

셋째, 폭력의 직접적인 행위자와 피해자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대상자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함으로써 가정폭력에 대한 재인식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폭력의 범주에 신체적 폭력만 포함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언어 폭력과 정서적 폭력을 포함시키고 처벌기준 또한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결혼 전 부부 교육 내지 부모 교육이 의무화되어야 할 것이다. 부부는 평등한 관계로서 폭력을 수단으로 하여 누가 누구를 통제할 수 있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부부 교육을 통해 부부간 갈등이 발생할 때 폭력이 아닌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부모의 폭력을 경험한 자녀들이 폭력을 학습함으로써 폭력이 내면화되고 다시 폭력을 재생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부부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님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부모 교육을 통하여 자녀를 체벌이 아닌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부모자녀간 폭력이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여성가족부(2013),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133면, 140면, 175면, 190면.

여성가족부(2015), 가정폭력 여성 행위자 상담·치료 프로그램 개발 실무자 매뉴얼.

최상진 (2011년). 한국인의 심리학. 학지사.